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1.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조 정 찬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조 정 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연구원

정 태 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남 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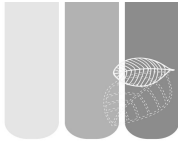
김 동 윤 (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

권 오 빈 (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이 희 정 (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정 주 영 (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



#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식의 결정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9
I. 행정자료 이용에 관련한 법령 규정 .....	9
II. 「통계법」의 현황과 문제점 .....	31
1. 「통계법」의 현황 .....	31
2. 「통계법」의 문제점 .....	81
III.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	9
1. 정부 3.0 시대에 따른 행정자료의 공동 활용 구현 .....	9
2.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	2
3. 국가통계서비스의 전반적 개선 도모 .....	28
4.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	30
5. 국민의 수요에 맞춘 통계의 구현 및 국제적 추세 부응 .....	3
6.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보안 강화 .....	33
7.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의 조화 .....	35
8. 표준화와 품질관리의 획기적 강화 .....	37
제2절 입법방식의 결정 .....	73
I. 입법의 방식 :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	73
1. 「통계법」 개정방식과 법률 제정방식의 비교 .....	73
2. 법률 제정의 불가피성 .....	40
II. 입법의 형식과 내용 .....	34
1. 입법의 형식 .....	43
2. 입법의 기본방향 .....	44

III.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분법 필요성	6	4
1. 개별 법률의 분법화 현황	46	
2. 분법의 기준	52	
3. 「통계법」의 분법 필요성	35	

### 제3장 국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외국의 입법례	95
I. 독일	9
II. 스웨덴	7
III. 노르웨이	96
IV. 덴마크	7
V. 그 밖의 국가	8
1. 스위스	81
2. 핀란드	82
3. 네덜란드	83
4. 포르투갈	84
5. 캐나다	85
6. 불가리아	86
제2절 국내 입법례	99
I. 「통계법」	99
1. 「통계법」 내용 분석	99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92
II. 「전자정부법」	39
1. 「전자정부법」 내용 분석	39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96
III. 「개인정보 보호법」	91
1.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분석	91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117
IV.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21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61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131
V.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31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 분석	11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141

VI. 주요 조문 비교 검토 .....	3
1. 신법과 관련 법률의 주요 조문 비교 .....	143
2. 적용 범위 .....	145
3. 행정자료 표준화 .....	148
4. 행정자료 품질관리 .....	152
5. 행정자료 이용의 고지 .....	155
6. 행정자료 제공요청 .....	158
7. 행정자료 제공범위 .....	161
8. 행정자료 제공방법 .....	165
9. 목적 외 사용 금지 .....	172
10. 행정자료 제공 중지 .....	175
11. 행정자료 보유·관리 .....	177
12. 정보 보호 .....	178
13. 식별정보의 암호화 .....	181
14.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	185

## 제4장 입법을 위한 쟁점검토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9
I.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문제 .....	9
2. 신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93
II.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	4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내용 .....	41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51
III.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 .....	791
1.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 .....	197
2. 외국 입법례 검토 .....	199
3. 신법상 규정방식 검토 .....	200
제2절 표준화 .....	23
I. 현황 및 문제점 .....	23
1. 행정자료 입수 현황 및 문제점 .....	223
2.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	224
3. 용어 정의 및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31
4.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문제 .....	238
II. 행정자료 표준화 방안 .....	24
1. 통계청 내 항목 표준화 추진 .....	240

2. 범정부적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추진 .....	242
III. 행정자료 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 .....	152
1. 통계청 내의 기대효과 .....	251
2. 국가적 기대효과 .....	253
제3절 품질관리 .....	28
I. 품질관리의 문제 .....	8
II. 행정자료를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 행정체계 정비 필요 .....	162
제4절 등록센서스 .....	28
I. 등록센서스의 의의 및 필요성 .....	28
1. 의의 .....	262
2. 필요성 .....	262
II. 센서스 관련 국내 법령 .....	38
1.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	32
2.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	32
3. 검토 .....	264
III. 등록센서스 관련 해외법령 정리 .....	42
1. 핀란드 .....	264
2. 덴마크 .....	264
3. 싱가포르 .....	265
4. 대만 .....	266
5. 이스라엘 .....	266
6. 터키 .....	268
7. 네덜란드 .....	269
8. 벨기에 .....	269
9. 폴란드 .....	270
10. 슬로베니아 .....	271
11.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	273
12. 미국 .....	273
13. 독일 .....	274
14. 노르웨이 .....	274
15. 스위스 .....	275
16. 검토 .....	277
IV. 등록센서스의 도입 및 법적근거의 마련 .....	872
1. 등록센서스의 법적근거 마련 방식 .....	278
2. 신법과의 관계 .....	279



## 제5장 입법제안 및 해설

제1절 서설 .....	283
I. 제명 결정 .....	283
II. 구성 체계 .....	285
제2절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안) 및 조문별 설명 8 2	
I. 제1장 총칙 .....	288
1. 제1조 목적 .....	288
2. 제2조 정의 .....	289
3. 제3조 적용대상 .....	311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13
5. 제5조 통계청장 등의 책무 .....	317
6. 제6조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 .....	318
7. 제7조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322
8. 제8조 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	326
II. 제2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협력 .....	327
1. 제9조 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 .....	327
2. 제10조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	330
3. 제11조 행정자료의 제공 .....	335
4. 제12조 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	338
5. 제13조 행정자료의 긴급제공 .....	341
6. 제14조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 .....	342
7. 제15조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 .....	344
8. 제16조 표준분류 사용 .....	351
9. 제17조 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353
10. 제18조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 .....	356
11. 제19조 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 .....	357
12. 제20조 행정자료의 품질관리 .....	359
13. 제21조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	364
14. 제22조 기관간 협조 .....	366
III. 제3장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 .....	369
1. 제23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	369
2. 제24조 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 .....	372
3. 제25조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 .....	374
4. 제26조 식별번호의 암호화 .....	375
5. 제27조 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 .....	377
6. 제28조 행정자료의 파기 .....	377
7. 제29조 비밀보호 .....	379

8. 제30조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	380
9. 제31조 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	382
10. 제32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	383
IV. 제4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483
1. 제33조 행정자료의 용도	384
2. 제34조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386
3. 제35조 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	387
4. 제36조 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389
5. 제37조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	391
6. 제38조 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	393
7. 제39조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394
8. 제40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396
9. 제41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398
10. 제42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404
11. 제43조 등록센서스의 대상	406
12. 제44조 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409
13. 제45조 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	422
V. 제5장 보칙	423
1. 제46조 비밀준수	423
2. 제47조 금지행위	424
3. 제48조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	425
4.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26
VI. 제6장 벌칙	427
1. 제50조 벌칙	427
2. 제51조 벌칙	427
3. 제52조 양벌규정	428

[별첨 1]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534
[별첨 2]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354
[별첨 3]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64
[별첨 4] 3단 비교표	42
[별첨 5]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
[별첨 6]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055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가 통계라는 단어이다. 특히 물가나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는 통계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실생활의 바로미터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통계는 고대국가에서부터 국력을 평가하여 국가경영의 기초로 삼아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통계작성은 경제정책은 물론 사회·문화·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수립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통계는 국가경영 외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어 통계는 국가의 운영이나 개인의 삶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는 과거 신규창업 시 유동인구 파악이나 업계동향 파악 정도로 이용되던 통계자료가 최근에는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결합되어 무한한 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정보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통계의 중요성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비해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서는 '13년 4월 기준 58종<sup>1)</sup>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통계제도하에서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통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의 확산, 1인 가구의 증가 및 조사 확대에 따른 응답부담 및 불응 증가 등 조사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생산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통계생산기법의 선진화로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통계생산에 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각 행정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성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미 독일,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를 구

1) 조사통계 43종(전수조사 13종, 표본조사 30종), 가공통계 13종 및 보고통계 2종

축하는 등 우리보다 한발 빠르게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방식(면접조사)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방식(등록센서스)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일부 통계의 경우에는 이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sup>2)</sup>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필요한 통계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에도 행정자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면접조사를 이용한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자료의 부정확성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면접조사는 오히려 응답거부 등의 요인으로 정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자료 속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자료는 원래 각각의 행정목적에 의하여 작성 수집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조사항목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생겨나 이용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바에는 자료의 범용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통계법」 제24조 하나에 불과하여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선언적인 규정으로 작용하여 관계기관에서는 행정자료 요청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행정자료의 제공에 소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제대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서는 「통계법」 제24조의 조문 하나를 보완하는 데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행정자료의 수집·보관, 표준화,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행정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율할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상당 부분에서 대대적인 보완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

2) 임금근로일자리통계, 귀농인 통계, 영리법인기업체통계 등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생산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실용성이 강한 연구이다. 따라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마련된 입법안을 입법절차에 부쳐 최종적인 공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활동은 현실에 바탕을 둔 입법수요의 파악에서 시작되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널리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찾아 반영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입법내용에 담긴 이해관계 집단 등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여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과 관련된 기존의 법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어 국내외 관련 문헌의 탐색은 물론 외국의 입법사례를 널리 참조하게 될 것이며 입법안이 안고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집단 및 쟁점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반대의견을 설득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면서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입법안의 내용을 잠정적으로 성안한 후 이를 가지고 관련 부처 등과 여러 차례의 면접을 통하여 의견의 접점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마련된 법령안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조율 과정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관련부처 기관 등과의 면접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결과물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결과 위주로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물인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내용은 조문별로 외국의 사례와 국내 기존 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런 법제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법령의 입법절차에서 이 입법의 필요성과 각 조문별 타당성에 대한 논거로 사용되도록 배려하였다.



---

## 제2장

#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식의 결정

제1절 입법의 필요성

제2절 입법방식의 결정



## 제2장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식의 결정

###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I. 행정자료 이용에 관련한 법령 규정

- 행정자료 이용 관련법령에는 「통계법」, 「국세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통계법」 상에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통계법」 상의 직접 조항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 「국세기본법」 상의 관련 조항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81조의13 제1항제5호, 2009.2.6.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관련 조항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이하생략

\* 제3장~제7장 : 개인정보의 처리(개인정보수집, 인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단체 소송

□ 「주민등록법」 상의 관련 조항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 조항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

- 통계청은 행정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료 관련 시스템을 외부인터넷과 분리한 업무전용망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통계청예규 제70호, 2011.7.22, 일부개정)을 제정하여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 단체 등의 식별자료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료관리책임자, 자료접근권자, 접속기록 관리, 보관 및 통제 등 보안에 관해 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와의 차이

-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상에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도록 규정(「전자정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하고 있음
- 이는 ‘민원처리 목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에 이용하는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행정정보 : 「전자정부법」 제2조에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이용과의 차이점>

구 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신법)
목 적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에 이용하는 제도
주 관	안전행정부	통계청

이용자	국민, 민원담당공무원	통계청, 통계작성지정기관(민간기관 포함)
구축현황	23개 기관 92종 행정정보 구비('11.6월)	통계청은 113개 행정자료입수, 26개 통계작성에 이용 중('11.7월)
자료예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자료,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 4대 보험 자료 등

## II. 「통계법」의 현황과 문제점

### 1. 「통계법」의 현황

#### □ 「통계법」의 제정

- 1962년 1월 15일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책 수립 및 집행결과의 판단을 위한 정확한 통계와 효율적인 통계제도 마련을 위해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통계법」을 제정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지정통계로 하고, 그 이외의 통계를 일반통계로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은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통계조사의 결과는 통계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자료제출에 관한 「통계법」 규정의 연혁

- 1962년 제정 이후 1975년, 1996년 및 2007년 전부개정 되는 등 「통계법」은 11회 개정되었음
-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통계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기 시작했음

<p>「통계법」 (법률 제980호, 1962.1.15, 제정, 1962.1.15., 시행)</p>	<p><b>제15조(자료집의 제출과 설명의 요구)</b> 경제기획원장은 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와 보고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통계법」 (법률 제2799호, 1975.12.31, 전부개정, 1975.12.31, 시행)</p>	<p><b>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b>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통계법」 (법률 제5043호, 1995.12.29, 전부개정, 시행 1996.4.1, 시행)</p>	<p><b>제7조(자료제출의 요구)</b> ① 통계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통계법」 (법률 제8387호, 2007.4.27, 전부개정, 2007.10.28, 시행)</p>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p>



	<p>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3.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li> <li>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통계법」</b> (법률 제9557호, 2009.4.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p>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p>

	<p>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통계법」</b> (법률 제11553호, 2012.12.18, 일부개정, 2012.12.18., 시행)</p>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 현행 「통계법」의 규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통계법」은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함
-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통계작성기관 상호간의 행정자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제4항),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2. 「통계법」의 문제점

### □ 「통계법」 제24조의 법문상 한계

- 행정자료 제공의무의 주체에서 헌법기관인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누락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음
- 행정자료 이용주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국한됨(다른 통계작성기관은 누락)
- 행정자료 이용은 현지조사의 보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센서스 등 광범위한 이용은 구상단계임

### □ 「통계법」 제24조의 현실적 한계

- 통계청이 생산하는 58종 통계 중 34.5%(20종)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너무 미흡함
  - 국가승인통계 916종 중 보고통계(443종, 48.4%)가 조사통계(402종, 43.8%)보다 많음
- 행정자료 제공기관은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법」 등 행정자료 생산 관련 법률들에서 별도의 제한조치를 규정된 점에서 보듯이 필수적 제공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행정자료는 지속적 주기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유출사고 등 돌발사유로 인하여 한번이라도 제공이 중단되면 통계작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

- 현재 통계작성의 중요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동법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함
- 「통계법」 제24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 정보보호조치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 통계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행정자료 이용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음
-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통계작성기관에게 행정자료를 각각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업무가 증가하여 통계청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자료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음
- ⇒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모집단 등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통계작성에 이용하는데 위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금지에 저촉되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가공 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

고 있음

-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각 통계작성기관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통계청에만 제공하고 다른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이 가공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원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통계청 관리 가공자료의 이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행정자료 이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중심의 행정자료 수집관리 체계의 구축과 가공정보의 범용성 강화 및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자료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대책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이 저조하다는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정부3.0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자료의 개방·공유·협력 등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III.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필요성

#### 1. 정부 3.0 시대에 따른 행정자료의 공동 활용 구현

##### □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시대 적극 지원

-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확대 및 정보 기반 창조산업 창출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부응하여 통계분야에서도 통계청 외에 민간통계작성기관까지도 각 부처가 보유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
  - 실업, 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통계지표 사이 괴리가 있는 분야를 찾아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지수에 맞는 통계지표 구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부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는 정부 3.0 허브가 되어 공유가 가능한 각 부처의 행정자료를 완벽한 보안대책 아래 민간기관까지를 포함한 통계작성기관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맞춤형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통계청이 정부 3.0의 허브가 되도록 함
  - 정부 3.0시대 시책에 부응하여 375개 통계작성기관도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이용하여 국민 맞춤형 통계생산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많은 민간통계작성기관도 간접적으로 행정자료 이용의 이점을 누리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민간통계작성기관의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통계법」 제24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보안문제 등으로 통계청 외에는 이용실적 저조 ⇒ 통계청이 통계작성기관과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중개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 2.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 □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협조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기관은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소관업무를 법적 근거에 따라 행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니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훈령이나 행정기관간의 MOU 등으로는 지속적인 협조 불가 : 훈령발령권자의 교체나 보안사고 등 민감한 사건이 생기면 행정자료 제공을 거부할 소지가 많은데 통계작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이러한 거부사태가 생기면 통계작성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참 고 조 문 >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종전에 대통령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던 감사업무, 행정재산 관리, 전자정부, 정부업무 평가 등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가 대부분인 업무에 대하여서도 지금은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의 심화에 따라 법치주의의 핵심원칙인 법률유보에서도 종전의 침해유보설 대신 중요사항



유보설이 통설이 되는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간섭이나 강제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 안전행정부 등에서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혼인·출생·사망 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인등기관 관련 행정자료를 행정부 소속인 통계청 등에 제공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과세자료, 수사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경찰청의 변사자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소관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음

#### □ 행정응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7조가 있으나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임
-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조는 행정응원에 해당하는데, 행정응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8조이며 동 규정에는 폭넓은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은 1회적인 업무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통계작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현재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7조, 제8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등이 있으며, 개별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5호나 관련 부처와의 MOU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근거로서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요구됨
  - 「전자정부법」 제36조는 주로 민원관련 행정정보의 공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규정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도한 통제

등 이용에 큰 제약요인이 남아 있음

< 참 고 조 문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 소득자료 같은 행정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참 고 조 문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통계법」 제24조는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상의 제공 제한 규정과 상충되어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참 고 조 문 >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처럼 행정자료 제공근거를 생산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4500여개 법령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참 고 조 문 >**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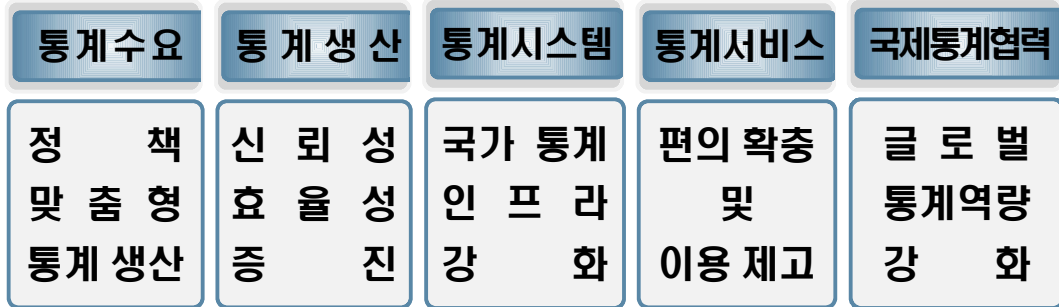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규모 총조사를 행정자료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2015년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민감하고 다양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3. 국가통계서비스의 전반적 개선 도모



#### □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개선 필요

-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경제통계 확충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체감물가와의 괴리 해소 등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가중치 개편주기 5년을 단축하는 등 통계 작성의 주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집세 물가지수의 주택유형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제품공급의 단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기존의 통계를 개선할 수 있음
- 정책 대상별로 보다 다양한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기존의 지표 등을 다변화하고 정책의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생성함
- 이러한 통계개발 등에는 종전과 같은 현장조사방식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자료의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방식의 선진화

-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방식의 선진화

- 대규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통해 전수조사 등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 또는 부분별 개선방안을 마련함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 생산 환경을 마련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를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음
- 통계조사자료와 용어, 분류 등에 대한 행정자료 표준화, 인구·사업체·부동산·고용을 연계한 종합모집단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통계생산 기반을 마련함
-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귀농인통계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에 신규항목을 추가 생산하거나 작성범위를 확대 생산하는 등 기존의 통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음

□ 국가통계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개선, 통계품질 교육 확대 등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역통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확대하여 국가통계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통계인프라를 강화함
- 이러한 활동은 통계작성기관에 정확한 통계작성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관련 행정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행정자료의 정확성 등 품질향상으로 행정의 질적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체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계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함
- 통계정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강화함

#### □ 창의와 실용적인 통계연구 및 교육기능 활성화

- 행정자료의 이용 및 기타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생애주기별 통계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신규 통계를 개발 및 연구함
- 행정자료의 이용을 위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야별 통계전문가를 육성함

### 4.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 □ 응답부담 경감

- 국민들은 행정자료 관련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통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다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사생활 개입에 대한 불안과 이중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유럽에서는 통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시민저항운동이 발생한 경우도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와 사생활보호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조사방식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임
  - 1인 가구 비율(%) : ('95) 12.7 ⇒ ('00) 15.5 ⇒ ('05) 20.0 ⇒ ('10) 23.9
  - 공동주택 비율(%) : ('95) 49.2 ⇒ ('00) 59.3 ⇒ ('05) 66.5 ⇒ ('10) 71.6
- 통계조사의 증가와 조사항목의 확대로 개인 및 기업체의 응답부담은 점차 가중되는 추세임
  - 기업대상 통계종수(종) : ('00) 334 ⇒ ('03) 395 ⇒ ('06) 454 ⇒ ('12) 649



- 기업 연간응답 횟수(회) : ('00) 20.9 ⇒ ('03) 25.1 ⇒ ('06) 32.2 ⇒ ('09) 33.3

□ 통계생산비용 절감

- 행정자료의 이용이 미흡함에 따라 고용통계, 물가통계 등 국가통계생산이 곤란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면 통계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산절감을 통한 다른 분야로의 활용이 곤란
- 인건비 상승 등으로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억원) : ('00) 834 ⇒ ('05)1,290 ⇒ ('10) 1,808 ⇒ ('15) 2,712(추정)
- 조사원 1인 1일 인건비(원) : ('00) 28,270 ⇒ ('05) 36,750 ⇒ ('10) 42,660 ⇒ ('13) 46,000

□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국가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우선 이용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하여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도모함
-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는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필수적임
- 분류기준(산업분류 등), 용어(상용종사자 등) 등이 서로 상이한 내용을 표준화할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또한 업무량 증가로 추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되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적임
- 행정목적으로 수집된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어와 분류에 대한 표준화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가통계작성에 신속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강화함
-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한곳에 모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하도록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화, 품질관리 등 통계적 처리기준에 따라 자료처리를 하고 통계작성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통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5. 국민의 수요에 맞춘 통계의 구현 및 국제적 추세 부응

### □ 국민의 수요에 맞춘 통계의 구현

-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유통계, 기업체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필요하나 현재의 통계생산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자료를 이용한 정보자원의 공유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효율적 통계생산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맞춤형 통계생산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 통계분야의 국제적 추세 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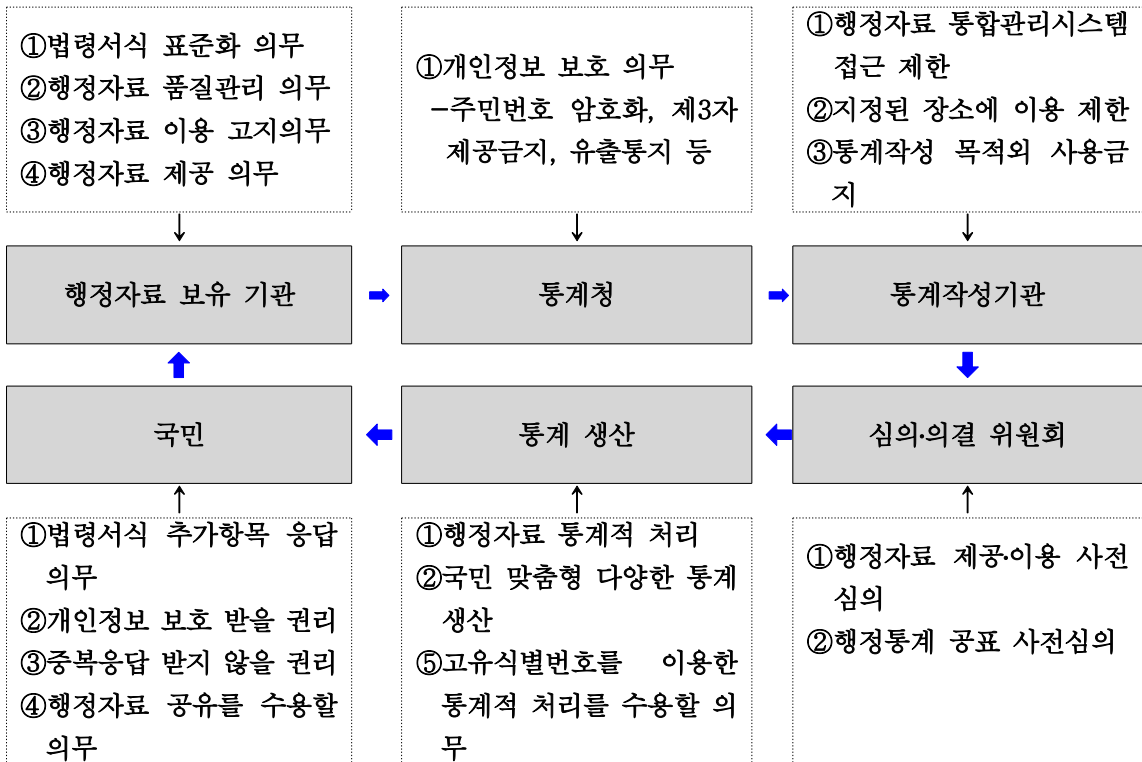
- UN,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통계작성 시 행정자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등 행정자료의 이용은 통계작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음
- UN이 1994년에 제정한 정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Official Statistics) 제5조에서도 응답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직접적인 통계조사보다는 행정자료를 최대한 이용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6.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보안 강화

###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자료 이용

- 국가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와도 관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행정자료의 내용이 되는 주민등록신고, 소득신고 등 자체가 의무사항으로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르는데, 이러한 행정자료를 본래의 행정목적 외에 통계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 얻어지는 산출물을 행정부가 임의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함
  - 프라이버시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령서식에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한다는 고지를 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자 함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의무>



##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계법」 제24조에 근거한 행정자료 이용에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행정자료 이용을 주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함

## □ 자료보안의 강화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국민들의 행정자료 유출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보안 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
- 행정자료의 연계이용에 필요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환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비암호화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도록 함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한 후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되 통계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함
- 행정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터넷망과 분리된 업무용 전용망을 설치하고 인증된 사람이 개인PC가 아닌 별도 서버에서만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7.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의 조화

###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존 법제의 미비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 이 조문은 연혁적으로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규정한 「통계법」 제24조의 신설 이후에 제정된 조문으로서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도 적용됨은 분명함
  - 그러나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는 구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둔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보호조치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료 제공기관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의 소지가 잔존함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통계작성기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에게 행정자료를 각각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통계청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자료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음

- \* 통계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행정자료 이용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고 그 결과 행정자료 이용실적이 축적되고 있는 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었음

□ 통계청을 매개로 한 행정자료 가공 및 범용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자료 이용범위 확대를 통해 정부 3.0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자료의 개방·공유·확대 등을 적극 지원

-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모집단 등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후 통계작성에 이용하는데 이러한 가공자료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게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통계법」 제24조제4항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금지에 저촉되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가공 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각 통계작성기관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통계청에만 제공하고 다른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이 가공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원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통계청 관리 가공자료의 이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행정자료 이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서는 통계청 중심의 행정자료 수집관리 체계의 구축과 가공정보의 범용성 강화 및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자료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대책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이 저조하다는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정부3.0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자료의 개방·공유·협력 등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8. 표준화와 품질관리의 획기적 강화

- 행정자료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여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표준화가 긴급

※ 「전자정부법」 등의 표준화는 전자시스템의 표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통계법」 상의 표준분류, 「도로명주소법」 상의 도로명주소 등 필요적 표준화 사항의 이행확보

- 행정자료의 품질관리는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는 물론 행정자료 생산기관의 입장에서도 시급한 과제

## 제2절 입법방식의 결정

### I. 입법의 방식 :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 1. 「통계법」 개정방식과 법률 제정방식의 비교

##### □ 입법방식의 선택

-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내용을 입법을 할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방식
  - 필요한 내용을 기존의 법률에 추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는 방식
-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정할 것인지는 신법 제정 목적을 검토하여 기존의 법률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새롭게 규정할 내용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이 이미 충분히 잘 되어 있어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신법 제정 목적 외에도 법체계의 정합성, 입법경제 및 국민의 법 이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결정해야 함

### □ 「통계법」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통계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규정 : 기본법적 성격(12개 조문)
- 조직 및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법적 성격(15개 조문)
-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 : 일반법적 성격(20개 조문)
- 현장방문조사방식에 의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 신법의 내용과 병립적 관계 (2~3개 조문)

### □ 기존 「통계법」의 개정방식을 택할 경우

-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이용의 내용은 현장방문조사방식에 관한 규정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문수가 매우 적고 그나마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통계법」에 넣을 경우 「통계법」의 대대적인 장절 재편성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에도 신법의 내용은 무려 52개 조문에 달하여 장·절 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조문수를 줄이고자 하여도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 있어 조문수를 통폐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입법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법률체계의 불균형

- 「통계법」을 개정할 경우 많은 조문이 변경되고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고 장별 구분을 보면 하나의 장에 평균 조문수인 8개보다 훨씬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체계의 균형이 깨어짐
- 통계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통계법」 속에 행정자료 이용이라는 통계청의 구체적인 업무를 같이 규정하게 되면 법률체계가 불균형해짐

< 「통계법」 개정과 신법 제정 비교 >

법제처 분법 기준	「통계법」 개정	신법 제정
법적 안정성	부족	안정
수범자 친화성	부족	친화
법체계의 정당성	부당	정당
법적 명확성	불명확	명확
국민 법 이해 용이성	곤란	용이

- 따라서 「통계법」의 개정만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신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므로 「통계법」 제24조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법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행정자료의 제출에 관한 「통계법」 제24조의 존치 필요성 검토
<p>－ 「통계법」 제24조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존치실익은 적고 또한 정책적으로 행정자료제공기관이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업무상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신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불편보다는 오히려 통계청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통계작성기관도 유리하고 공공기관도 통계청만을 상대하면 되므로 편리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p>

## 2. 법률 제정의 불가피성

### □ 법률 제정 방식 선택의 필요성

- 정부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국민 맞춤형 통계생산을 통해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정보자원 공유의 기본틀을 마련함
- 국가통계의 적시성·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작성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통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음
- 현장조사 방식의 한계 극복과 선진각국의 통계작성 동향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여건을 마련함
- 통계작성에 관한 일반법인 「통계법」 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등록센서스 및 모집단 구축 등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함
  - 응답부담과 예산절감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이면서, 행정기관 사이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며,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표준화 품질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즉, 「통계법」 전면 개정에 의할 경우 법률체계가 너무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별도 법률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52개 조문의 제정 법률을 41개 조문의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 법체계 불균형과 조문의 이질성으로 국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협의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 조문수를 줄이기 위해 입법사항을 「통계법」과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통계법」과 타 법률 사이의 법체계 불균형으로 부처 간 이견 등이 발생하여 법 집행 곤란으로 통계작성이 곤란함
- 통계작성의 기본법인 「통계법」에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법 정체성 및 체계상의 혼란 초래할 수 있음

-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 「통계법」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여 신법 제정과 큰 차이가 없음(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장의 신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총칙이나 벌칙 등 여러 규정도 손질하여야 하며 법률 내의 조문 사이 체계와 조화 도모를 위한 정비 필요 조문도 상당수에 이를 것임)
- 현장조사에 대한 응답부담과 예산절감 및 행정기관 간 안정적이고 확실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함
-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375개의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공유를 통한 정부 3.0 시대 부응을 위해서는 다수의 입법사항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북유럽 등 통계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법률은 없어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됨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료에 대한 이용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맞춤형 통계 생산을 확대·제공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세분화된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함
- 그러나 기존 「통계법」에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모집단 구축,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행정자료의 관리, 행정자료의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통계작성기관 전체로 이용주체를 확대(민간기관까지 포함) : 통계정보 이용 민간창조산업 기반 조성 ⇒ 일방적 통계제공에서 맞춤형 제공으로 전환할 필요

- 통계작성지정기관에는 시장경영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협회 등의 협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회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은 기관이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통계작성지정기관까지 행정자료를 보유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우려로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반대가 심할 것이므로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자료로 직접 통계작성 또는 통계청에 대행을 요청하는 방안이 관해 검토함
- 장기적으로 행정자료와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기업, 민간에서 필요한 고부가가치 통계정보 생산가능성을 검토함

□ 기존 「통계법」을 보완할 별도의 입법을 통한 통계정책의 대전환 모색

-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을 기존의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 「통계법」의 체제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됨
- 또한, 정부 3.0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에서 관련입법을 진행할 텐데 「통계법」에 그 내용을 반영할 경우 업무갈등 등의 영향이 기존의 「통계법」 조문에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엇보다도 개인별 맞춤형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새정부 공약사항 이행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별도입법이 가장 효과적임

□ 신규 입법할 내용은 「통계법」의 기존 조문수보다 많고 장별 구분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통계법」에 포함시켜 규정하기 어려우며, 역지로 포함시킬 경우 「통계법」은 기존 조문과 장별 편성에 있어 균형이 상실되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별개의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II. 입법의 형식과 내용

### 1. 입법의 형식

#### □ 특별법적 지위

##### ○ 입법목적

- 종전의 현장방문조사방식의 통계작성은 한계에 봉착함
  - 현행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규정은 현장조사를 보완하는 수준임
  - 법원 등 다수 기관의 비협조 사유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함
  -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강하여 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함
  - 통계작성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응답부담과 통계작성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함
- 「통계법」 이 일반법 내지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신법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을 하는 경우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행정자료 이용에 관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과 「통계법」 이 다를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함
  - 또한, 신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이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 법률에서 각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통계법」 제24조의 제공의무조항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문제를 신법은 개별법상의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일괄 해결을 꾀함

## □ 「통계법」 규정 수용

- 신법은 통계작성에 있어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통계 관련 일반사항은 「통계법」에 의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통계법」이 일반법이라는 지위를 갖게 됨
- 따라서 신법에서 「통계법」의 규정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며 신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2. 입법의 기본방향

### □ 별도 입법 추진

- 기존 「통계법」은
  - 현장조사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장조사방식도 당분간 병행이 필요함
  - 통계업무 수행체계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 망라되어 있어 새로운 내용 추가 시 체계 혼란을 초래함
  - 행정자료 이용방식 채택국가들도 대부분 별도입법으로 운영 중임
  - 새 정부의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시대” 공약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함
  - 법제처의 분법 기준에도 부합함

### □ 기존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관련 조항(제24조 및 제3조의 정의 규정 일부)은 삭제

- 「통계법」 제24조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존치실익이 적음

- 통계작성기관은 신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불편보다는 오히려 통계청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유리하고 행정자료 제공기관인 공공기관도 통계청만 상대하면 되므로 편리하다는 점에서 「통계법」 제24조를 삭제함

□ 적용범위는 통계청장과 통계작성기관으로 함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계청과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을 명시하여 대상을 확정함
-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통계작성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실적은 미미하였고 통계청의 경우에도 법원 등의 법적 근거 요구가 이어지고 안정적·지속적 행정자료 제공이 확실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신법에서는 통계청의 경우에는 등록센서스 등의 필요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강화하고 누락된 기관들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청장이 구축하고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기관이 그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자료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행정자료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조치에 역점

- 통계청장은 표준화의 방향 제시,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하며 각 행정자료 보유기관에 대한 표준화 지원을 다양하게 설정함
- 안전행정부의 서식이 표준화의 근간을 이루므로 일정한 행정자료와 관련이 있는 서식을 정한 법률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계청장과의 사전 협의 등을 추진함
- 표준화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등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행정목적 정보 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한 곳에 집중된 정보의 누출 등을 대비하여 보안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취함
- 행정자료 수집 보관 및 이용과정에서 대두되는 제반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함

#### □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협조 확보를 위한 장치

- 자료의 의무적 제공대상 기관을 열거함
- 식별번호의 부여의무를 규정함
- 자체 품질관리의무를 부여함
-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함

#### □ 등록센서스 관련 조항 신설

- 등록센서스의 대상, 실시시기 및 주기 등을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의 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함

### III.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분법 필요성

#### 1. 개별 법률의 분법화 현황

- 하나의 분야에 대한 단일 법령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분업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법령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체계상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분법하는 것이 필요함
-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법」은 하나의 단일 법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소방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소방 시설 등의 의무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재편하였음

**※ 소방 관련 분법 현황**

- 「소방기본법」 :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규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율
- 「소방시설공사법」 :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율

- 이외에도 「항공법」, 「환경보전법」, 「기상업무법」 등에서 분법화를 통해 법체계를 간명하게 하여 관련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분법화 사례가 있음
- 유럽 국가들 또한 통계법 이외에 행정자료 이용법, 센서스법, 센서스 준비법, 통계 등록부법, 표준화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구통계, 경제통계 작성에 이용하고 있음
- 독일은 통계법, 행정자료 이용법, 통계 등록부법, 센서스법, 센서스 준비법이 있고 스위스는 통계법, 센서스법, 표준화법을 제정함

□ 분법사례

- 조달청 기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 산림청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보호법」 (단일법)을 전면개정하면서 2개의 신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례 1**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기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를 삭제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신설

<기존 법과 신법 비교>

	(기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신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수	14개조	7개장(31개조)
담당부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조달청(정보기획과)
최초제정	1994.1.5	2013.3.22
기타	시행령 24개조, 시행규칙 15개조	시행령 17개조, 시행규칙 7개조

○ 신법의 제정이유

-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

-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이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
-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법의 주요내용

- 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제12조)
- 나.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이용(제15조)
- 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제16조 및 제18조)
- 라.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등의 금지(제19조 및 제20조)
- 마.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제23조)

**사례 2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1개 조항을 삭제하면서 신법을 제정

<기존 법과 신법 비교>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수	6개장(79개조)	6개장(47개조)
담당부서	산림청(산림자원과)	산림청(목재생산과)
최초제정	2005.8.4	2012.5.23
기타	시행령 5개장(73개조), 시행규칙 5개장(71개조)	시행령 34개조, 시행규칙 31개조

○ 신법의 제정이유

-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요구
-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 부각
-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 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 신법의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6조 및 제7조)
-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8조)
- 다.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 라.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제16조)
- 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바. 산림청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사례 3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 기존 「문화재보호법」 (단일법)을 전면개정하면서 2개의 신법을 제정
  - 매장문화재 관련 1개장(12개 조항)을 삭제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문화재 수리관련(기술자 및 업체의 자격·요건·지정취소 등) 14개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존 법과 신법 비교>

	(기존) 문화재보호법	(신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신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수	12개장(104개조)	7개장(38개조)	7개장(62개조)
담당부서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청(발굴제도과)	문화재청(수리기술과)
최초제정	1962.1.10 (2010.2.4 전부개정)	2010.2.4	2010.2.4
기타	시행령 48개조, 시행규칙 62개조	시행령 6개장(33개조), 시행규칙 14개조	시행령 31개조, 시행규칙 28개조

-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 이유
  -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
  -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
  -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
  -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

## 2. 분법의 기준

- 서로 다른 사안 또는 규범적 접근 방법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법률 속에 구성하게 되면 단일 법률 내부에서 상호 모순 또는 비체계성이 발생하여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음
- 분법은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법을 통해 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법률의 규범내용이 간결해짐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보장·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법률의 준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법률의 집행이 원활하게 됨
- 법령을 분법하는 경우에는 분법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분법 수와 분법 시 내용의 관련성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내용, 분야, 기능 등으로 분법이 되도록 하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분법 시에 지나치게 세분하여 분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분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일반법이나 기본법에 골격만 남게 되는 이법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의 분법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체계, 분법 법령의 조문 수, 분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 3. 「통계법」의 분법 필요성

- 국가통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변화는 국가 정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 바탕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용과 직결되어 있음
- 물론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과 관련 조문 수를 대폭 줄이는 경우에는 「통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면 개정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통계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
-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정책은 새 정부의 “정부 3.0” 시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통계법」의 개정에 의할 경우 행정자료의 공유라는 점이 부각되지 않아 입법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 3.0”은 개방 참여 공유를 이념으로 하여 공공데이터의 대민 개방을 통하여 미래창조적 에너지원으로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공공정보의 대민 개방을 논의하기에 앞서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법 등에서 공유의 취지를 규정하였음에도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작성에서조차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은 “정부 3.0” 실천의 핵심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분법을 할 것인지 전부개정을 할 것인지는 법률 효력 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 상의 문제로서 법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의 형태를 정할 때에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법령안 입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형태(제정, 일부·전부 개정 등)를 결정해야 함

-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법령 통합·분법 기준상 문제가 없다면 국민과 해당 법령 수범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로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통계법」은 50개 조문이고 행정자료 이용 신법은 53개 조문으로서 「통계법」 개정 시 전문개정이 불가피하여 신법제정과 비슷한 노력이 소요되며, 「통계법」의 기본법적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신법은 「통계법」 제24조제3항의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통계청의 중개기지 역할과 등록센서스 등으로 최소한 50개 조문 이상이 필요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를 보완하거나 「통계법」에 별도의 장을 구분하여 「통계법」을 개정하는 경우 상호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통계법」 속에 구성하게 되어 「통계법」 내부에서 상호 모순 또는 비체계성이 발생하여 규범력이 떨어지게 됨

※ 국세청의 사례

- 국세청의 경우에도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 수많은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선례가 있음
- 동법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간 행정자료의 공유체제 확립과 관련된 법률임

□ 또한, 기존의 「통계법」 조항과 비교하여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들이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통계법」에 신규입법의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행정기관간의 문제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제약요인이 됨



□ 따라서 「통계법」을 개정하는 방법보다는 법률의 체계정당성, 이해의 용이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입법 목적과 실효적 집행, 수월한 준수를 위해서 분법이 되어야 함

○ 제정법률(안)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특별법으로서 「통계법」에서 분법함이 선례에 부합할 것임

⇒ 이들 국가에서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입법체계에서 볼 때 이 법률의 체계가 오히려 우수함

< 「통계법」과 신법(안) 비교표 >

구분	주요내용	「통계법」 제24조	신법(안)
① 적용대상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통계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통계작성기관(확대적용)
② 공공기관의 정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제공기관	헌법기관 제외	헌법기관 포함
③ 행정자료 제공	제공할 행정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여부	불명시(선언적 규정)	구체적 행정자료 명시
④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체제	근거 규정 없음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및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이용 근거 규정
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및 개체번호 부여	근거 규정 없음	명시적 규정 신설
⑥ 행정서식에 행정자료이용 문구기재	행정자료의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안내 문구기재	근거 규정 없음	명시적 규정 신설
⑦ 표준화·품질	행정자료 서식 표준화 및 품질관리	근거 규정 없음	근거 규정 신설

관리			
⑧ 등록센서스 실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 실시	근거 규정 없음	근거 규정 신설
⑨ 행정자료 우선 이용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우선 이용방안 검토	근거 규정 없음	근거 규정 신설

□ 신법 제정을 통한 통계청의 위상 강화

- 통계자료 작성 업무의 중요성과 행정자료 제공협조의 긴요함에 비추어 통계청의 기관 위상이 낮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청이지만 1급청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산하 여러 청 가운데 통계청의 기관 위상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나 기관, 특히 법원 등을 상대로 행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통계 관련 법령의 분법으로 다수 법령을 보유하는 것이 기관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통계청은 현재 법률로는 「통계법」 하나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령 3건(그 중 2건은 조직관련), 부령 8건 총 12건의 법령만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청 단위 기관의 업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분법화가 널리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 환경부도 「환경보호법」의 단일법을 가지고 있다가 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유해물질 등 분야별로 분법을 단행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사례가 있음
- 최근 각 부처 기관별로 법령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외견상 통계청 소관법령의 수가 적을 경우 이는 기관 위상과도 관계된다고 볼 수 있음

---

## 제3장

# 국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외국의 입법례

제2절 국내 입법례

---



## 제3장 국내외 입법례 검토

### 제1절 외국의 입법례

#### < 유럽 등 입법내용 >

- ◇ 센서스법, 센서스 준비법, 표준화법, 등록법, 행정자료 이용법 등 안정적으로 **행정자료 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
  -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면서 **제공 항목, 식별번호, 불일치 내용 보완조사** 등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정
- ◇ 행정자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식별인자, 단위, 항목 및 분류** 등에 대해 **표준화 법률**을 제정(독일, 스위스 등)

#### I. 독일

##### □ 법적 근거

- ‘연방통계법’
  - 제8조(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연방 행정기관들이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연방통계청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보고 자료로부터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의뢰기관의 승인 하에 연방통계청은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이 가능하다.
  - 제15조(정보제공 의무) ①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가 응답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응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는 경우, 모든 가구, 사업체, 협회,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조사내용에 응답을 해야 한다.

□ ‘헌법’ 및 상위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 ‘헌법’ 및 유럽연합기본권리(리스본 조약)상에 개인정보 보호 보장 명시함
  - 상기 개인정보 보호 보장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 거주등록 관련법
    - 연방목적의 통계 생산
    - 노동법, 사회보장법
    - 세금

□ 현재의(Status Quo) 통계관련 법적체계

- 기본적으로 개별 행정법에서 통계제공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 목적의 통계생산과 관련된 특정(specific)법이 있고 일반 목적의(Non-specific) 통계생산관련법으로 구분함
- 노르웨이와 비교해서 행정자료 사용과 관련된 일반목적의 통계생산관련법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일의 상위법(‘헌법’, 유럽연합기본권리조약)상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조항들과 일반목적의 포괄적인 행정자료사용이 충돌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일반목적보다는 특정분야별 형태의 행정자료이용 통계생산 법들이 존재함
  - Specific : 2011 ‘센서스준비법’, 2011 ‘센서스법’
  - Non-specific : ‘행정자료 사용법’(Act on Using Administrative Data), ‘통계 등록법’(Statistical Register Act)

□ ‘2011 센서스준비법’상 행정자료 제공 관련 조항

- 제4조 : 각 주정부(Lander) 토지조사사무소가 연방지리정보청에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다시 독일통계청으로 자료를 전송함

- 제5조 : 각 주정부(Lander)의 인구등록사무소(Population registration office)가 각 주정부의 주통계청에 인구관련자료를 송부하고 다시 독일통계청으로 자료를 전송함
- 제6조 : 연방고용청에서 센서스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독일통계청으로 전송함

□ ‘2011 센서스법’상 행정자료 제공 관련 조항

- 제3조 : 인구등록사무소, 연방내무부, 연방국방부, 연방외교부 자료를 이용함
- 제4조 : 연방고용청 자료를 이용함
- 제5조 : 재정 및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행정자료 사용법’상 행정자료 제공 관련 조항

- 제1조제1항 : 데이터 전송기관에서 통계청한테 데이터 변경내용을 고지할 의무 있음
- 제2조 : 국세청에서 주통계청 및 연방통계청에 세금관련 데이터를 전송함
- 제3조 : 연방고용청에서 통계청에 데이터를 전송함
- 제4조 : 통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 기관에 문의할 권리를 명시함

□ ‘행정등록법’상 행정자료 제공 관련 조항

- 제2조 및 2a : 주국세청 및 연방중앙국세청 세금관련 데이터를 전송함
- 제3조 : 연방고용청에서 통계청에 데이터를 전송함
- 제4조 : 통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 기관에 문의할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권리를 명시함

- 제4조(a) : 주정부의 법기관
- 제4조, 제5조, 제6조 : 상공회의소, 기술 및 전문인협회에서 행정자료를 전송함
- 제9조 : 주통계청에 명시된 데이터 전송

□ ‘통계목록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법률’ - ‘통계목록법’(StatRegG)

- 조문 : 9개 조항
- 제정 : 1998.6.16.
- 주요내용 : 기업체 통계목록 구축에 필요한 자료(재무관청, 국세청, 노동청, 상공회의소, 지방사법기관, 수공업협회, 직업협회 등의 행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계목록법’ 및 관련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규정함
- ※ 직업협회 등 다른 기관에서 통계목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통계업무 실무자가 통계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통계 목록에서 추출한 관할지역의 지방의 단위들(영업장, 공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근거법령
  - 통계적인 사용을 위한 목적(ABI EG 번호 196 1쪽)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목록의 구축을 위한 공동체 내부의 조정에 대한 법률 2186/93(EWG)에 근거함
- 관련법령
  - ‘세금통계법’ 제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5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사용 가능함



- ‘소득세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열사(법적으로 독립적인 자회사)와 계열기관에 대한 정보를 연방통계청에 제공함
-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중 임시규정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관할구역의 관계자로부터 받은 사항을 통계청에 제공함
- 수공업협회는 자기 관할구역의 협회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세금통계에 관한 법률’(StatRegG)

- 조문 : 10개 조항
- 제정 : 1995.10.11., 개정 12차례
- 주요내용 : 세금의 구조와 효과에 대한 방식 그리고 세금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매출세, 근로소득과 수입세, 법인세, 재산세, 감정가, 영업세,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연방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집되는 항목과 통계작성 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과세, 법인과 영업세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세금통계에 관한 목적과 학문적인 분석을 위하여 개별적인 정보를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의 자료와 통합할 수 있음
  - 국세청은 과세의무가 있는 양육보조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게 또는 공적인 고용주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육보조금 수급권자와 그들의 자녀들에 관한 사업통계를 작성함
  - 독일연방의 통계청과 주정부의 통계청은 세무서번호와 납세번호 그리고 과세규정에 의거한 신분의 특징을 보관할 수 있음
  - 이 법률에 의해 작성된 통계에 대해서는 공지의 의무가 있으며, 재무관청 등에 관련자료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별정보를 통합하고 최상위 관청으로부터 위임 받아 연구기관에 분석을 위해 제공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세법’ 실행에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실시하고 세법에 관한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음

□ 개별 통계조사를 위한 근거법 목록

○ 관련 법률 : 307개

- 개별 통계조사에 대한 관련 법률분야

- 노동 시장(31개 법률)
- 무역 분야(15개 법률)
- 건축과 주거분야(3개 법률)
- 국내 상업
- 요식 및 숙박업
- 관광업 분야(5개 법률)
- 금융
- 세금
- 보험(20개 법률)
- 연구 및 정보 분야(20개 법률)
- 서비스업 분야(1개 법률)
- 보건제도 분야(9개 법률)
- 정보 열람분야(4개 법률)
- 농수산 삼림업 분야(35개 법률)
- 가격(Preise)분야(21개 법률)
- 제조업 및 수공업(16개 법률)
- 법집행(1개 법률)
- 사회보장 관련 법률(15개 법률)
- 환경 분야(2개 법률)
- 환경통계조사(4개 법률)
- 환경경제 총계정(3개 법률)
- 기업과 작업장에 관한 법률(7개 법률)
- 소득 및 인건비 영역(9개 법률)
- 교통분야(19개 법률)

- 국민경제 계정(19개 법률)
- 선거(1개 법률)
- 경제조사 분야(16개 법률)

※ 노동 시장, 무역, 국민계정 등 많은 분야의 개별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31개 법률)는 유럽 공동체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통계작성과 관련된 조항이 개별법(300여개)에 포함

- 특정목적의 통계생산(ex. ‘센서스법’, ‘행정자료이용법’, ‘통계등록법’)과 관련된 법과 일반목적 통계생산 관련법 ‘연방통계법’으로 구분됨

□ ‘경제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사용에 관한 법률’(2010)

- 세무관청 및 연방노동중개청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유한 자료를 연방(각 연방주) 통계청에 최신자료로 제출함
  - 세무관청이 제출하는 자료 : 기업명, 소재지, 우편번호, 매출, 매출세, 부가세, 매출세고유번호, 경제고유번호 등
  - 연방노동중개청이 제출하는 자료 : 고용인의 성명, 기업명, 지자체 고유번호, 고용자수, 사용자 근무형태, 기업번호 등

□ ‘건축물, 주택 센서스를 포함, 등록부를 토대로 하는 2011 센서스에 관한 법률’(2007)

- 등록사무소는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 작성을 위한 정보를 지방통계청에 전달함
- 연방측량청은 지도제작, 측량을 위하여 각 주 측량청 자료를 검토, 보완하여 연방통계청에 최근자료를 전달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연방노동청은 사회보험 적용대상 노동자, 실업자 등의 정보를 전달함

#### □ ‘독일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연방통계청과 주 통계청의 경제통계를 작성함
- 주요내용 : 경제통계작성을 위해 국세청, 노동청 행정자료를 제공함

#### □ 행정자료 이용

- 인구동태통계
  -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망, 혼인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음
    - 신고서를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청 직원이 작성함
    - 혼인의 경우 지방관청에서 먼저 혼인선포식을 하고난 후 혼인서약해 준 관리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함
    - 사망신고와 사망원인신고 분리 운영함
    - 사망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진단서(사망원인)는 의사가 기재발부해서 보건청을 통해 연방주통계청에서 통계 작성함
  -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담당함
- 사업체명부(BR)에 통합되는 자료
  - 국세청 파일(부가세 파일, 소득세 및 법인세 파일)
  - 연방고용기관파일
  - 상공회의소파일
  - 기술회의소파일
  - 연방재무부 파일

#### □ 통계생산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

- 기본원칙

- 신뢰성 확보 : 통계생산목적으로 입수된 행정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고 반대로 다시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one way street)
-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에서 발췌되어 통계생산목적으로 전송함
- 통계생산목적으로 전송되는 행정데이터의 정확한 서술이 필요함
-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함

#### □ 시사점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행정자료와 통계조사자료일치, 주소명부정리 등을 규정함
- 안정적으로 적기에 경제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업체명, 주소, 우편번호, 지자체 고유번호, 과세형태, 매출세 고유번호, 행정자료 보안을 위해 재방문 등

## II. 스웨덴

#### □ 법적 근거

- ‘통계법’
  - 제7조(사업체 운영자)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업체 운영자(business operators)는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체 운영자의 성명과 개인식별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상품생산과 서비스제공
    3. 상품소비와 서비스지원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4. 고용자의 수와 업무, 임금 또는 급여와 전문직, 결원에 대한 정보
5. 재고조사
6. 투자
7.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구매, 판매, 보급 등의 상태
8.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9. 수입과 비용
10. 에너지 소비
11. 수입과 수출
12. 자산과 부채
13. 저축 및 자본, 신용, 외환 등의 상황
14. 임대차와 사용권의 정도
15. 환경보전비용

- 제8조 농업, 임업, 원예업, 축산업 관련 사업체 운영자는 제7조에 명시된 정보에 다음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체가 운영되는 전체 또는 일부의 재산과 관련하여, 토지등기 지정, 지역, 토지이용, 소유권, 임대차 상황
2.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의 업무와 계약연도
4. 가축사육

- 제9조 제8조에 언급된 사업체에서 타인이 관리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해당인의 성명과 그 사업체에 사용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재단 등) 재단(foundations), 비영리단체, 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록종교단체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7조 (1)-(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초자치체 평의회) 기초자치체 평의회(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7조 (1)항에 언급된 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기초자치체는 연차세출입계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공통규정) 제7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언급된 정보는 자료에 관련된 사실

이 3년 전의 것이라면, 그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제13조 제7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언급된 정보는 통계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법 시행령’ (2007년 12월 31일)

- 제4조(자료수집) 국가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간단한 방식으로 자료제공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제5조 통계기관은 국가통계법(2001년 법률 제99호)의 제7조에서 제11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행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제6조 정부기관은 통계기관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관련 기관들에 의하여 합의된 시점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 시사점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특정 개인 등록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폐지함

### III. 노르웨이

#### □ 법적 근거

○ ‘통계법’

- 제5조 (정보제공 의무) 국왕은 다른 비밀보호에 관한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국가통계의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누구에게든 부과할 수 있다.

□ ‘통계법’ - 데이터 제공 요청 권한

- 모든 법인(legal person) 또는 사인(private person)은 정부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시 노르웨이 통계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노르웨이 통계청이 제공될 자료의 형식 및 제공날짜 시한을 결정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청에 관한 법’

2-2. 정보제공의 의무

(1) 국왕은 다른 비밀보호에 관한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국가통계의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누구에게든 부과할 수 있다.

(2) 정보의 공급에는 정보제공의 기한이 설정되고 정보가 제공될 양식에 관한 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를 기한만료 이전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공의무 위반이 된다.

□ ‘통계법’ - 행정등록부의 자료 이용에 대한 권한

- 행정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의 사용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의 접근성을 부여함

- 공공부문의 자료이용 비용 축소

- 시민 그리고 사업체의 데이터 제공부담 축소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법 보충 법률’(통계법 시행령)

1-2.

통계청은 정부가 이용할 목적의 자료수집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행정자료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 새로운 행정자료 처리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행정자료 처리시스템에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 노르웨이 통계청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되어야 함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법 보충 법률’(통계법 시행령)**

1-3.  
 국가기관이나 전국적인 자치조직은 중요한 새로운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을 계획 중이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을 때 통계청에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보다 자세한 보고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통계생산이 필요성을 감안하여, 노르웨이 통계청은 행정자료 처리시스템 구축 시에 어떻게 동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할 권리가 있음
  - 행정등록부가 담고 있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
  - 단위, 변수, 분류
  - 데이터통제
  - 노르웨이 통계청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및 제공 시한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법 보충 법률’(통계법 시행령)**

1-3.  
 국가기관이나 ~ 규정할 수 있다. 통계청은 행정자료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안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 단위, 변수, 분류 등의 정의와 시스템의 구조
- 데이터 컨트롤
- 통계청으로 전송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시기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이 설계될 때에는 비용측면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통계법’ - 벌금 부여 권한

- 정보제공 시한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 노르웨이 통계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법인에만 해당하고 사인(private person)에는 해당 하지 않음
- 기본벌금 (300/400 유로)
- 2차/3차 위반 시 상기 기본벌금의 2배
- 통계정보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청에 관한 법’**

2-2. 정보제공의 의무

(1) 생략

(2) 정보의 공급에는 정보제공의 기한이 설정되고 정보가 제공될 양식에 관한 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를 기한만료 이전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공의무 위반이 된다.

□ 비밀보장

- 노르웨이 통계청은 613개의 통계등록부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건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
- 모든 사업체의 매출액, 생산방법, 폐기물량 등
- 모든 사람의 출생, 사망, 교육, 직업, 임금, 범죄기록, 복지혜택정보 등

□ 비밀보장 유지의 의무

- 모든 노르웨이 통계청 직원은 인가되지 않은 직원이 통계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하는 평생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모든 직원은 비밀보장준수 서약서를 서명하여야 함
- 어떤 직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됨
- 비밀보장준수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밀보장준수 의무의 중단

- 사인(private person)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준수 의무 기간은 100년 이고,
- 경영 및 사업 그리고 기술적용 및 방법에 관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준수 의무 기간은 60년임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청에 관한 법’**

2-7. 비밀보호의무의 중지

이 법에 따른 개인에 관한 비밀보호의 의무는 100년 후에 중지된다. 경영과 사업,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에 관한 비밀보호의 의무는 60년 후에 정지된다.

□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Act)’

- 개인정보 처리 시에 자연인(natural person)의 프라이버시 권리침해 방지가 주된 목적임
  - 동법은 개인정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음
- 법에 규정된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는 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할 수 없음
  - 데이터 보관기간
  - 데이터 처리
  -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
  - 개인(연구포함) 목적의 데이터 접근
  - 데이터 공표

□ 데이터 조사단(Data Inspectorate)

- 1980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개인정보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조직 (직원 30여명으로 구성 : 변호사, 데이터공학자)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노르웨이)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통계청에 행정등록부 자료이용에 관한 권한 부여

- 행정등록부를 소유, 관리하는 행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모든 법인, 사인은 정부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요청 시 통계청 제공의무

※ 1964년부터 개인식별번호를 생성하고, 2011년에 IT 기반 인구등록부를 구축하여 행정자료를 100% 이용한 등록센서스 실시

□ 행정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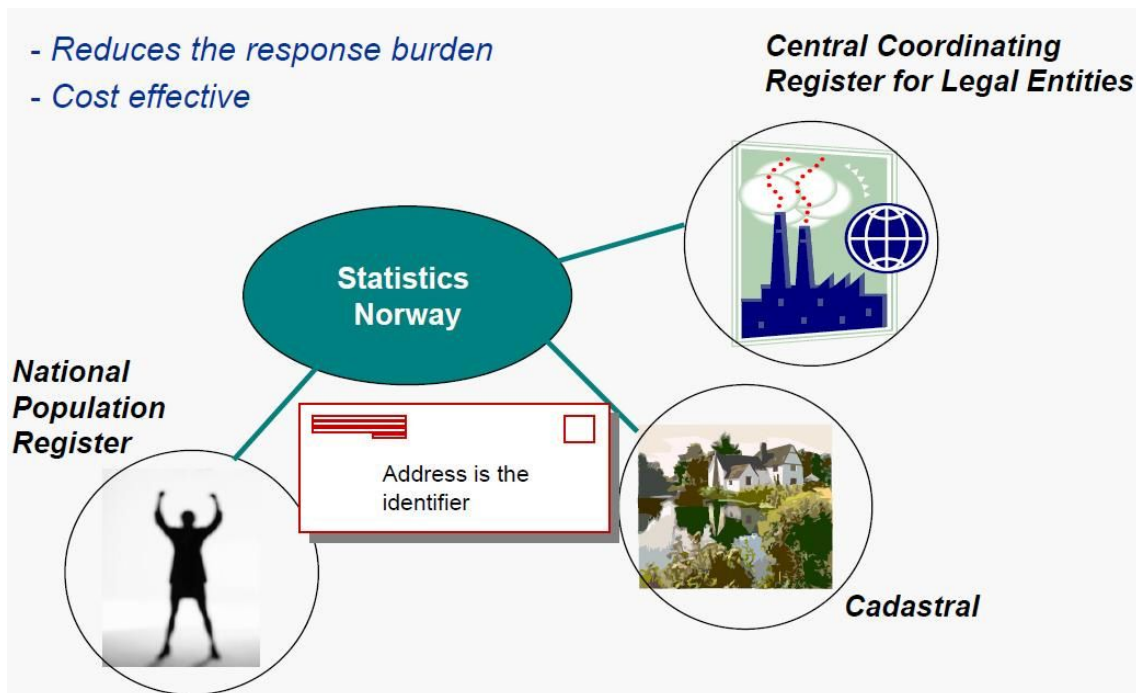
○ 인구센서스

- 인구등록자료
- 교육등록자료
- 토지재산, 주소 및 건물 등록자료
- 노동시장관련 자료
  - 취업자관련 자료
  - 임금관련 자료
  - 미취업관련 자료
  - 사업체관련 자료
- 소득등록자료
  - 세금환급통계(소득), 개인납세자 자료(소득), 총임금 자료(소득)
  - 국가보험 담당기관
  - 사회보장자료
  - 국가 교육대부 기금
  - 국립주택은행
  - 상속 및 증여세 자료
- 사회보장등록자료 : 연금수혜자료, 사회적 보조자료

□ 행정자료 사용을 위한 행정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 통계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 행정등록부와 다른 행정등록부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 행정등록부를 소유 및 관리하는 행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

\* 인구등록부인구등록부(National Population Register), 사업체 중앙조정등록부(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 주택대장(Cadastral))



□ 시사점

- ‘통계법’은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할 권리를 노르웨이 통계청에 부여함
- 이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조사표의 수취에 관한 업무가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 조항은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체 조사에 적용됨
- 만일 요구한 정보가 기한까지 제공되지 못하면 노르웨이 통계청은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체 조사는 정보제공 의무를 수반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적 과태료 부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

#### IV. 덴마크

##### □ 법적 근거

- ‘덴마크 통계법’(Act on Statistics Denmark, 1966)
  - 제1조제3호 :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이용
  - 정보제공의무 : 제8조 ~ 제12조

##### ‘덴마크 통계법’:

2002년 6월 22일 통합, 법안 제599호

참조: 1992년 12월 21일자 법안 제1189호 및 2000년 5월 2일자 법안 제295호 제1조 수정안 통합.

##### · 행정자료 통계목적 이용 근거 조문

제1조 덴마크 통계 총책임 기관으로 가칭 덴마크 통계청(Statistic Denmark)을 설립한다. 이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3) 중앙 공중등록소(central public register)의 설립 및 이용을 감독 또는 지원한다. 공중등록소는 공공부문, 기업 및 산업을 위해 행정적 직무를 수행하며 통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 정보제공 의무 관련 조문

**제8조 ①** 모든 사업자는 덴마크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 기업의 성격, 위치 및 소유권, 차지권(借地權), 공장 및 장비, 인력, 근무조건 및 임금, 생산(운송 명세서 포함) 및 기타 제공하는 서비스, 주문 수량 및 내부거래, 총매출액 및 가격, 피용자 보수, 상품 구매, 기타 운영비, 자본 지출 및 주식.
- 2) 또한 농업, 원예업 및 임업의 경우 곡물 생산량, 가축 및 모피 동물에 대한 정보
- 3) 또한 금융 기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 a) 지급 또는 지급 예정 여신 및 수신 예금의 특성, 한도 및 기한
  - b) 채무단 여신 한도 정보 및 채권단의 채무 회수 관련 정보
  - c) 금융 및 채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지(收支) 및 비용 기입, 수단 및 특성 별로 분류된 기입, 각 고객 그룹별 사업 규모 및 기한, 채권 발행 및 보존 관련 정보 포함.
- 4) 또한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 대출을 위해 저장된 담보증권의 명목 가치에 대한 정보.

② 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협회, 단체 등은 덴마크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 활동의 성격, 위치 및 소유권, 차지권, 인력, 근무 조건 및 임금, 피용자 보수, 자본 지출, 자산 및 부채, 내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제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덴마크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 개별 학생의 교육, 학생의 학업 분야 및 수준, 실시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청소년, 노인, 환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덴마크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소속 인원 및 공간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전국 단위의 기업인 단체가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통계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경제부 장관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덴마크 통계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a** 해외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외국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의 가치, 그 특성 및 서비스를 전달 또는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 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외국 국제 수지와 해외 자산 및 부채 통계 작성을 위해 외국과 금융 거래를 하는 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 외국에 지출 또는 그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대외 채무 및 채권 정보와 함께 덴마크 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①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요청을 받는 경우 모든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대, 임차인의 보증금, 위치, 규모, 시설 및 용도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 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거주자의 수도 명시되어야 한다.

② 건물의 및 임차인은 요청을 받는 경우 순물가지수 산정에 필요한 덴마크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① 소득 통계 작성을 위해 기업주는 요청을 받는 경우 총매출액, 상품 구매, 이윤 산출, 감가상각, 공급 및 운송, 배당금, 입금 및 지출된 이자, 보충 활동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 지불 또는 산정된 세금 및 관세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 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② 투자 및 자본 분석을 위해 기업주는 요청을 받는 경우 자산 및 부채, 내부 자본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지정된 시간 내에 제3a 8~12항 또는 유럽 공동체의 자료수집 및 처리에 대한 법규에 따라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 자, 또는 의도적으로 혹은 태만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 ‘덴마크 공중등록소법’(Danish Public Authorities’ Register Act 1978)
  - 자료의 보호를 위해 반출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함
  - 비밀보호 되는 원시자료는 자료 보호기관(Data Protection Agency)의 승인에 따라 통계목적용을 위해 사용됨
- ‘인구등록법’(1958)
- ‘사업체등록법’(1975)
- ‘건물 및 거처 등록법’(1977)

#### □ 식별번호

- 덴마크는 개인식별번호, 부동산 식별번호, 사업체 식별번호의 부여와 연계를 통



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구축함

○ 구축 배경

- 1960년대 전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려던 덴마크 정부 시도는 시행초기 국민들 사이에 강한 논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5개 지방자치정부가 덴마크 통계청을 상대로 행정자료 이용의 위법성 소송을 제기(1978-81)하는 사태를 불러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거쳐 개인식별번호를 포함한 행정등록부의 구축에 따른 국민적 동의와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는 통계작성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됨

- 이를 통해 덴마크 통계청은 응답부담 경감, 조사비용 감소, 고품질의 통계생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됨

○ 이러한 환경을 통해 해당 식별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연관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조사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의 자료 입수에 대한 부담 또한 덜게 함

○ 국가차원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부터 입법을 통해 등록부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은 행정자료의 질적인 향상과 동시에 행정자료 이용 및 유용성을 높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eIR(e-Income Register)의 구축

○ 덴마크의 통계청은 소득통계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과세 당국으로부터 ‘과세소득등록부’ 행정자료를 입수, 자료정제 및 보관을 거쳐 ‘eIR(e-Income Register)’을 구축하고 있음

○ eIR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홈텍스(국세) 및 위택스(지방세)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덴마크 통계청은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부터 자료 이용단계까지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덴마크 통계청 과세당국으로부터 매달 약 9백만 건의 자료를 보고받고 있으며, 이 중 약 40%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며 나머지는 60%는 이전소득(각종 수당 및 연금)에 관한 것임
- 덴마크 통계청은 eIR을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정제 DB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음. 자료정제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점검하고 누락이 있을 경우 Imputation을 실시함. 또한 행정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함
- eIR은 다음과 같은 다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함
  - 직업분류 및 산업분류 코드
  - 덴마크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는 사회통계DB
  - 사업체등록부로부터 확보한 지역별 사업체 정보

### □ 덴마크 통계청의 자료보안 정책

- 개인 및 사업체에 관한 민감한 자료에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 승인된 사람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함
  - 자료보안 규칙은 공개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비상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함
  -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관한 모든 로그기록은 저장되어야 함
- 덴마크 통계청의 모든 직원은 다음과 같은 비밀보호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자료 처리자에 대한 보안 서약 및 서명을 하고,
  - 공개되는 통계에서 개인 및 기업정보는 익명화하고,
  - 통계당국은 행정목적으로 개인 및 기업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덴마크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행정자료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지방정부, 기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통계정보 수립, 처리)을 부여함

- 통계청에 『중앙공중등록소』(공공부문, 기업 및 산업을 위한 행정업무 및 통계자료 수집, 처리기관) 설립 및 이용 감독 역할을 부여함
- 행정자료 구축 관련법으로는 ‘인구등록법’(중앙인구등록부), ‘사업체등록법’, ‘건물 및 거처 등록법’(건물 및 주거등록부), ‘공중등록소법’ 등이 있음

#### □ 덴마크 통계청 조직

- 덴마크 통계청은 조직형태로 볼 때 경제부처 소속이지만 법적으로 자율기관이고 통계와 연구 결과물의 판매를 통해 재정적으로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음

#### □ 덴마크에서의 행정자료 이용

- 법적 기반과 행정등록부 확대 노력으로 덴마크 통계청이 모든 등록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행정등록부의 통계적 이용이 통계청의 권한 내에 있게 됨
- 결과적으로 덴마크 통계청은 조사 대신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기업 및 가구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절감 및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

## V. 그 밖의 국가

### 1. 스위스

#### □ 연방통계법과 별도로 ‘연방센서스법’,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법률’ 제정함

#### □ ‘연방센서스법’(2007)

- 통계작성에 있어 행정자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자료 이외에 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에 따른 자료수집 인정, 행정자료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지침을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계청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함

□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법률’

□ ‘거주 및 기타 등록부의 표준화에 관한 연방법’(2006)

## 2. 핀란드

□ 법적 근거

○ ‘통계법’(280/2004)

－ 통계목적 행정자료 이용

- 제4조 :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일반 행정업무 수행 중에 구축된 자료와 고용인, 자영업자, 기업 및 재단의 일반적인 활동의 결과로 작성된 자료를 일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 정보제공의무

- 제14조, 제15조 : 행정기관, 법인체, 비영리단체 및 재단 등의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해야 할 의무

□ 행정자료 이용

○ 인구센서스 : 주민정보시스템(주민등록센터), 조세 등록부, 고용연금시스템의 등록부, 구직자 등록부, 학생 등록부, 사회보험기관의 등록부 등

○ 지역별 고용 통계 : 주민정보시스템(주민등록센터), 구직자 등록부(노동부), 중앙연금보장기구 및 사회보험기관(연금등록부), 학자금 등록부(사회보장기구), 공동선택 등록부(국가교육위원회), 민간부문 고용 등록부(중앙연금보장기구), 중앙정부부문 고용 등록부(재무국), 지역정부부문 고용 등록부(지역정부연금기구), 사회

보험기관의 고용 등록부(사회보험기관)

- 소득분포통계 :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의 90%는 등록부에서 얻어짐
  - 주민등록센터의 중앙 주민등록부, 세무기관의 세금 데이터베이스, 사회보장기구의 수혜자 등록부, 연금센터의 연금 등록부, 통계청의 교육 및 학위 등록부 등
- 기업구조통계 : 조사표자료와 기업조세 등록부 및 기업 등록부
- 단기기업통계: 조사표자료(모든 기업의 1% 미만으로부터 수집)와 VAT, 고용주의 지불 등록부, 기업 등록부

#### □ 시사점

- 핀란드 ‘통계법’처럼 통계작성 목적으로 모집단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3. 네덜란드

#### □ 법적 근거

- ‘통계법’
  - 제33조 ① 통계청장은 통계목적으로, 법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되고 있는 등록부 (register)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기관 및 부처
      - 1. 중앙정부
      - 2. 지방정부
      - 3. 기초자치체
      - 4. 수자원 관리기구
      - 5. 공동규제법률(Joint Regulation Act)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 b. 네덜란드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 c. 중앙정부 수준의 독립기관
  - ② 통계청장은 법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가자금이나 법정 요금을 징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법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회의의 자문을 얻어서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자료를 얻는 방법이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통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기업, 독립적인 전문직 종사자, 기관,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명령에 지정된 법인 등으로부터 국무회의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 ① 통계청장은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나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회사, 독립적인 전문직 종사자, 기관, 그리고 법인에 대하여, 규정에 적시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자료를 완전한 형태로 또는 정해진 시점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목적의 과태료를 최고 5,00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 □ 시사점

- ‘통계법’ 규정에 적시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완전한 형태로 또는 정해진 시점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 의무를 강제하고 하고 있음

### 4. 포르투갈

#### □ 포르투갈에서의 행정자료 이용

- 포르투갈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자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그 결과 탄생한 것이 IES 시스템임
- IES로 인해 기존의 표본조사는 폐지되었고, 기업들은 각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과 서식으로 제출하였던 회계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한번에 제출하도록 함
- 따라서 IES를 통해서 사업체 통계 생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 통계청은 표본조사에 기초했던 방식 대신 포르투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

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IES의 탄생은 정치적인 지원의 핵심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료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무부, 재정부, 대통령실, 통계청, 중앙은행 등이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
- 또한 공인된 회계시스템을 통해 개념과 정의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많은 회계사들이 동원되었고, 전자적 기법으로 한 번에 자료를 제출하는 전송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계의 참여가 이루어짐
- 통계작성에 IES 시스템을 기초로 한 혁신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음. 사업체 통계작성을 위해 모든 통계적 생산의 기초로 이용하고자 IBAS가 통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IES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생산을 통해 정책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결과적으로 통합된 정보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됨

## 5. 캐나다

□ 법적 근거 ‘통계법’(Statistics Act) : R.S.C. 1985, c. S19

-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 제3조제2항 : 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포괄적 접근 권한을 부여
  - 통계정보(해당 정부부처 활동으로부터 도출되는 통계를 포함)를 수집, 축적 및 발간 시 여타 정부부처와 협력
  - 제13조 : 기록에 대한 접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부처, 자치단체, 공공단체, 법인 또는 조직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중 본 법률 목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획득 또는 그 완성 또는 수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통계청장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해당정보의 접근을 허가하거나 그 완성 또는 수정을 보조해야 함

□ 행정자료 이용

- 소규모사업체(small business) 조사
  - 고용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월간조사 : Payroll deduction data
  - 제조업 월간조사 : Goods and Service Tax(GST)자료
- 노동과 소득변화 패널조사(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 SLID)
  - 소득세(Income Tax)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관련 자료 대체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생성된 행정파일을 캐나다 통계청이 이용
  - 국세청 : 개인소득세 신고서, 과세 납세자 마스터 파일, 급여 공제 등
  - 이민국 : 해외이민사례 파일, 이민자사례 파일 등
  - 법무부 : 중앙 이혼소송 등록

6. 불가리아

□ 통계활동(불가리아 통계법 제2조 및 보충규정 제1조)

- 통계 활동은 방법론의 개발 및 통계 조사 계획, 개별 자료 및 통계 정보의 수신, 수집, 처리, 저장 및 통계 정보의 분석, 제공, 보급 등을 포함한다.
- 통계 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 전문적 독립성 : 통계정보가 어떤 정치적 및 이해관계의 압력에 상관없이 개발,



제작 및 보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공정성 : 통계정보가 모든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개발, 제작 및 보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객관성 : 통계정보가 체계적으로 신뢰가능하며 편견 없는 방식으로 개발, 제작 및 보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용자나 조사응답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이용 및 윤리적 기준 및 정책이나 관습 등을 따르는 것 등의 방법이 수반된다.
  - 신뢰성 : 통계가 현실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가능한 거짓없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과학적 기준이 수반된다.
  - 통계 비밀 준수 : 독립적 대상들과, 통계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간접적으로 획득한 데이터 및 그 외 자료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용 효율성 : 통계정보의 산출 비용이 결과 및 추구하는 이익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료는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책임 부담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라면 요청된 정보는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추출하여야 한다.
- 통계 정보는 품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며 산출되어야 한다.
- 타당성 : 통계정보가 현재 및 잠재적 장래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정확성 : 알려지지 않은 실제 가치의 평가 근사치를 말한다.
  - 시의 적절성 : 조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과 이용자에게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날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시간엄수 : 통계정보의 공표를 위한 예고일의 엄격한 준수를 말한다.
- 이용가능성 및 명확성 : 통계 정보는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명확한 해석이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가능성 : 통계 정보는 시간상 및 공간상 한계가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논리적 일관성 : 다른 자료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구현된 현실의 완성된 그림을 맞추기 위해 통계 정보의 결합 가능성을 말한다.

### □ 국가통계시스템 및 행정자료의 공동이용

- 국가 통계 시스템에는 국립 통계 기관, 통계 부처 및 불가리아 국립 은행을 포함한다(제3조제1항).
- 국가 통계 기관은 최신 통계부처들의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5년 단위로 또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유럽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제3조제5항)
- 국가 또는 유럽 통계 정보의 공식적인 개발 및 산출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설정하고 유지하는 행정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종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제4조제4항).

### □ 통계조사 자료제공의무

- 불가리아 통계법 제20조
- (1) 법인의 관리자 및 대표자는 필수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통계 프로그램에 포함된 설문 조사를 위한 양식 및 질문서의 완성을 위하여 거짓 는 자료를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에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법인의 지점, 자회사 및 기타 조직 관련 자료도 제공되어야 한다.

- (2) 국방부에 관련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리아 육군과 그 조직은 국방부 장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3) 농업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도 제(1)항에 따르는 의무가 적용된다.
-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언급된 사람은 국가 통계 기관에 통계 요약 및 회계 서류를 포함하는 연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제(1)항에서 제(3)항에 언급된 자료 제출 절차와 마감 기간은 국가 통계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한 견본 통계 형태로 정의되어야 하며, 제(4)항에 언급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가 통계 기관의 기관장과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의 집행 임원의 공동 명령으로 해당 명령들을 관보에 공포한다.
- (6) 법률에 규정된 기록 및 정보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 기타 중앙 정부 기관, 불가리아 국립 은행 및 기타 기관은,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에 국가 통계 프로그램에 포함된 통계 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별 자료 및 통계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 (7) 국가 통계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통계 조사는 제(1)항에서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실행할 수 있다.

## □ 비밀 보호

### ○ 불가리아 통계법 제27조

- (1)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는 적절한 조직적 및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고 통계 비밀 보호를 위한 선서에 서명한 사람만 해당 자료를 취급하도록 하여 개별 자료의 보호 및 그의 남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2) 통계 비밀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의 접수, 처리, 사용 및 보관은 국가 통계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한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 (3) 통계 부처는 통계 비밀을 구성하는 자료를 운영할 내부 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 (4) 통계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료의 수집, 접수, 처리 또는 저장을 담당하는 사람은 5년 동안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러한 비밀을 보호를 위한 선서에 서명한다.
- (5) 해당 자료와 관련된 대상이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는 통계 목적으로만 제 25 조에 따르는 개별 자료를 사용한다.
- (6) 통계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은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 모든 설문 조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 제2절 국내 입법례

### I. 「통계법」

#### 1. 「통계법」 내용 분석

##### □ 통계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규정 : 기본법적 성격

- 통계에 관한 기본이념(제2조)
- 통계정책에 관한 국가 및 관련기관의 책무(제4조)
- 통계의 날(제4조의2)
- 통계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의무(제7조)
- 통계에 관한 교육(제8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의2)
- 통계관련 예산 인력 및 기술지원(제13조)
- 통계관련 국제협력(제14조)
- 표준분류(제22조)

□ 통계작성 조직 및 통계청장의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법적 성격

-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제5조의2)
- 통계책임관의 지정 운영(제6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사무개선요구(제12조)
-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5조 및 제16조)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취소(제17조)
- 통계작성의 승인 및 취소(제18조 및 제19조)
- 통계작성의 협의(제20조)
- 통계작성의 권고(제21조)
- 통계작성에 대한 협조요청(제23조)
- 자료제출 요구(제35조)
-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제36조)
- 위임 위탁 및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제37조 및 제38조)

□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 : 현장방문조사방식과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통계작성방식 모두에 적용 가능(일반법적 성격)

-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의4 및 제5조의5)
-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제7조의2)
- 통계품질진단 등 품질제고(제9조~제12조)
-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 현장방문조사방식을 보완하는 수단을 염두에 두고 신설되었으나 행정자료 이용 위주의 방식에 의한 통계작성도 가능
- 자료제출명령(제25조)
- 통계의 공표 보급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제27조~제29조)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자료제공요청(제29조의2 및 제30조)
- 통계자료의 이용(제31조)
- 비밀의 보호(제33조)
- 통계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제34조)
- 벌칙(제39조~제41조)

□ 현장방문조사방식에 의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 신법과 병립적 관계

- 실지조사(제26조)
- 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의무(제32조)
- 총조사(제5조의3)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 신법은 통계작성방식 중의 하나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 위 네 번째 사항인 현장방문조사방식에 의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과 병립관계에 있음
- 그러나 현장방문조사방식에 의한 통계작성에 특유의 규정은 위에서 보듯이 2~3개 조문 밖에 안 되고 그나마 각 장에 흩어져 있어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 독립적인 장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장방문조사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흩어져 있어 체계정립이 어려움

□ 기본법에 관한 사항과 일반법에 관한 사항

- 이 둘은 서로 유사하지만 기본법은 신법에도 그냥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반법에 관한 사항들은 신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항임

□ 조직법에 관한 사항

- 국가통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신법에서 추가적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들로 보아야 할 것임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청장의 지도 감독권은 신법에서도 적용은 되지만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통계작성방식은 통계청장에게만 허용할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됨

□ 일반법에 관한 사항

-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현장방문조사방식과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방식 양쪽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 신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통계법」에서 규정한 사항 간에 저촉이 생길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 적용됨
- 두 개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서로 저촉됨이 없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음

## II. 「전자정부법」

### 1. 「전자정부법」 내용 분석

□ 입법목적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함(제6조 참조)

□ 장절 편성

(1) 총칙(제1장)

- 정의(제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정보, 정보통신망,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등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일반법적 성격)
- 기타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제2장)

- 전자적인 민원처리(제1절/제7조~제15조) : 민원처리신청,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 민원처리,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민원인 확인, 전자적 고지 및 통지, 행정정보의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세 및 급부제공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제2절/제16조~제24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이용, 인터넷 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이용자의 참여 확대, 보편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이용실태 조사 분석, 효율적 관리 및 보안대책,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이용

(3) 전자적 행정관리(제3장)

- 전자문서(제25조~제27조) : 작성, 성립 및 효력, 송수신
- 행정전자서명 인증(제29조)
- 기타(제30조~제35조) :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수렴, 원격영상회의 원격근무 원격교육 등, 종이문서 감축, 업무담당자 신원 및 접근 권한 관리, 행정정보 취급 이용시 금지행위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4장)

- 기본방침(제36조) : 공동이용 및 중복수집 금지, 공동이용기관의 범위, 수요조사, 제도개선, 기준 절차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제37조~제44조) : 설치,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



청 및 승인(신청절차, 승인금지대상, 원보유기관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간편승인, 이용자 지정), 승인의 효과로서 타법상의 심사 승인 협의의 의제,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권, 공동이용 비용청구

(5)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제5장)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이용(제1절/제45조~제48조)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의 조성(제2절/제49조~제55조)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표준화, 공유서비스의 지정 이용,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화 인력 개발,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 운영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제고(제3절/제56조~제63조) :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정보시스템 감리

(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제6장)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제64조~제66조)
- 안전행정부의 총괄 기능(제67조~제69조) : 각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자료제출 협조
- 기타(제70조~제75조) : 국제협력, 전문기관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위임 위탁, 비밀누설 등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7) 벌칙(제7장/제76조~제78조)

##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 □ 전반적 검토

- 「전자정부법」은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일반법임
  - 행정자료 중 전자화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을 통계작성 목적에 사용할 경우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 전자정부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기관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 특히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독립적 장을 두어 상세히 규정함
  -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 신법 제정에 따른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설정이 수월함
  - 「전자정부법」에서 이미 정한 원칙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업무 수행주도권을 둘러싼 안전행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실익도 적음
  - ※ 다만 「전자정부법」과 달리 정하려고 할 경우 안전행정부의 반대가 나올 수 있으나 양법의 착안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임
-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목표로 삼고 있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의 최대 걸림돌인 자료보유기관의 자료제공거부 분위기를 타파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신법이 제정되어 실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전자정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양 법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
  - 이처럼 「전자정부법」은 신법의 시행여건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 3.0”과 관련하여 향후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되며 이 때 통계작성목적

의 행정자료 이용을 추진하는 통계청과의 역할 분담이 긴요함(안전행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계작성을 위한 공동이용도 「전자정부법」에 규정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정한 것은 다수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까지 공동이용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대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신법에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다른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는 것과는 기본 개념이 다름(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통계청장의 통계작성에만 국한시킬 경우 「전자정부법」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제도를 전면 적용배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보호규정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법은 큰 차이가 있음)
- 그 밖에 대민(對民) 전자정부서비스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은 최근 “정부 3.0”과 관련하여 대폭 보강이 예상되며, 통계업무에서의 정부 3.0 실현을 위한 「통계법」 등 개정 시 이에 관한 규정들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신법과 직접 관련된 검토대상

##### (1) 행정정보 공동이용(제4장)

##### ① 적용대상(제2조 및 제36조 등)

- 행정기관(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특수법인, 학교, 기타 등 포함)

##### ② 총칙적 규정(제36조)

- 공동이용 의무(제1항 전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통계작성 목적의 공동이용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의존하려 든다면 안전행정부의 통계업무 개입이 우려됨
- 정보의 중복수집 금지(제1항 후단)
  - 신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만 현장방문조사와 행정자료 이용을 병행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공동이용대상의 확대 (제2항)
  - 정보보유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실효성이 미약함(향후 개정 시 보강 예상)
- 안전행정부장관의 공동이용정보 수요조사(제3항)
  - 통계작성 목적의 공동이용에는 도움이 되는 규정이지만 제도운영에서 통계청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는 근거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안전행정부의 업무개입의 우려가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 등의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의무(제4항)
  - 「전자정부법」상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함
- 안전행정부장관의 공동이용 기준 및 절차 마련 고시(제5항) ⇒ 위와 같음
-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37조)
  - 안전행정부장관이 설치, 공동이용은 원칙적으로 센터를 이용함
    - 통계작성 목적 행정자료도 해당하지만 센터로의 자료집중이 아직 미미한 단계이고 집중된 자료를 통계작성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이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과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승인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자정부법」과 달리 행정자료 이용이라는 특유한 목적을 반영한 특칙을 두

어야 함

- 신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자료들을 센터를 통하게 함으로써 센터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 안전행정부는 현재 센터이용실적이 미미하기에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계업무도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공동이용을 하게 하려 들 것으로 예상됨
- 안전행정부는 정부 3.0과 관련하여 향후 이 부분을 대폭 개정하고 이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신법의 의도와는 반대로 민간에까지 이용을 하게하고 그 대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라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등 규제를 병행하려 할 것이 예상되므로 통계작성 목적의 센터이용에 관하여서는 특칙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논거로서 통계청장만이 통계작성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과 그 특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임

④ 공동이용행정정보의 범위(제38조)

- 민원관련 행정정보,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법령수행 필요 행정정보(제1항)
- 비밀지정정보는 제외(제2항)
- 정보보유기관의 최신성 정확성 확보의무(제3항)
- 이용목적 범위 내 이용의무(제4항)
- 구체적 내용은 대령에 위임(제5항)
- 신법에서는 정보의 범위는 물론 다르고 비밀지정 정보의 범위도 달리 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비밀 부분과 그 밖의 사항은 별도 규정 없이 그대로 적용받게 하여도 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⑤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절차(제39조~제41조)

- 이용기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제39조제1항)
-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조건부 승인 가능) 및 승인금지사유(제2항)
  - 비밀 비공개정보(위 내용과 상충 소지), 국익저해, 업무영역 외 이용, 기타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승인 전에 보유기관의 동의(제3항)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필요하며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제외(제4항)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둠으로써 보유기관 동의나 정보주체의 동의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법에 의한 제공의무에 근거하여 제공한 경우이므로) 공동 이용을 위하여 수집된 행정자료를 표준화 및 자료 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별도 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오히려 간명할 것으로 봄
- 간편 승인 및 승인 생략(제5항)
- 여러 기관의 공동사무에 대한 직권승인(제6항)
- 승인받은 기관의 관리자 등 지정의무(제7항) : 총괄관리자, 접근권 부여권자 및 접근권자
- 공동이용 승인의 효과로서 개별법에서 정한 제공 심사 승인 협의 등 의제(제40조) : 세법상의 이용승인, 부동산 등기자료 심사 승인, 가족관계등록자료 심사 승인 협의, 주민등록자료 심사 승인 협의, 자동차 관리자료 심의 승인, 건축물관련 심사 승인, 상업등기자료 심사 승인 협의

- 개별법상의 공동이용제한규정과 충돌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에 따른 의제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데 신법에서 위 자료들을 이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률조항들의 적용제외를 명시하여야 법률간 충돌을 이유로 하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음

○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제41조) : 공동이용 승인 철회 및 정지 사유로 이용조건 위반, 금지사유 발생, 행정정보 이용에 따른 일반적 금지행위 위반, 비밀누설, 기타 사유를 규정하며, 보유기관의 철회 등 요청권 및 철회 및 정지사실 통보의무를 규정함

⑥ 정보주체의 권한(제42조 및 제43조)

○ 사전 동의(제42조) : 개인정보 포함 행정정보 이용 시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이 경우 추가적인 이용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됨), 긴급 이용 등의 경우 선 이용 후 이용사실 주지, 선이용 업무 및 정보 범위 대령으로 구체적 명시

○ 열람청구권(제44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서는 신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타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이들 조항은 불필요

⑦ 기타(제45조)

○ 공동이용비용청구

(2) 표준화 및 공유서비스 관련 규정(제5장 제2절)

① 표준화 (제50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표준화 대상(시행령 제59조제1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의 성능 및 이용기술
  -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의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 : 제2항)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3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의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4항) ⇒ 표준화 대상 중 전자문서 및 행정코드에 관한 사항은 신법과 연관이 있음
  - 표준화를 규정한 개별 법률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 없이 소관 사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식 표준화 등 안전행정부의 협조가 긴요하므로 신법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②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이용(제51조)

- 공유서비스 :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 등 또는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임
-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공유서비스를 지정 변경 취소할 수 있고 우수 정보자원을 발굴 보급할 수 있으며 공유서비스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공유가능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공유서비스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보급비용의 징수 및 보급 확산 시책의 마련 ⇒ 당초 신법에 의하여 얻어진 표준화된 행정자료를 공유서비스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화와는 관련이 없음

□ 신법 시행여건 관련 기타 관련사항

(1) 시행여건 관련 조항

- 방문민원처리 감소대책(제9조) ⇒ 통계작성에서도 현장방문조사방식 감소대책 수립 필요함
- 중복조사 억제(제36조제1항) ⇒ 중복조사 억제는 결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으므로 신법의 입법취지와 부합됨
- 정보자원 통합관리(제54조) : 각 행정기관 등은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자원 현황과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의 정보자원통합기준 수립 및 정보자원 통합 구축 관리 ⇒ 통계작성에서도 신법에 의한 행정자료 수집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안전행정부장관과 협조방안 강구)

(2) 신법에 참고가 될 사항

※ 신법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전자정부법」이 일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전자적 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자정부법」과 다른 내용으로 약간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법에 유사규정 신설을 검토함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제34조) :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이용 공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 확인

○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제56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헌법기관에 대한 특칙)

○ 행정정보 취급 이용 시 금지행위(제35조) : 위반 시 각호별로 형사처벌 규정(제76조)

-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74조 및 제76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도용 금지
-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 중 참고가 될 사항
  - 사전협의(제67조) :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
  - 자료제출 등 협조(제69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자료 제출요청권

### III. 「개인정보 보호법」

#### 1.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분석

##### □ 입법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 □ 장절 편성 및 주요 내용

### (1) 총칙(제1장)

#### ○ 정의(제2조)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일반법)

- 기타(제3조~제5조) :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2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7조 및 제8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9조 및 제10조)
- 안전행정부장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준수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제11조)
- 안전행정부장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준수권 고(제12조)
- 기타(제13조 및 제14조) :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국제협력

(3)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①)
    - i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 iii.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③)
    - iv.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④)
    - v. 긴급상황(⑤)
    - vi.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이익형량(⑥)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변경동의 시에도 같음)
  -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ii.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ii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iv. 동의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 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 최소수집원칙 및 입증책임 전환,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하는 재화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제17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 허용
    -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⑦)
    - ii. 위 ②, ③, ⑤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⑧)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변경동의시에도 같음)
    - 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i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iii.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iv.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v.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위 i ~ v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계약체결 금지(⑨)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제1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위 ①~⑥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위 ⑦, ⑧, 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금지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허용(v~ix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i.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⑩)
  - ii.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⑪)
  - iii. 긴급상황(⑫)
  - iv.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⑬)
  - v.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⑭)
  - vi.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⑮)
  - vii.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⑯)
  - viii.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⑰)
  - ix.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⑱)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⑩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변경동의 시에도 같음)
  - 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ii.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iii.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iv.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v.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목적 외 이용 제공사실 공개 : 공공기관은 위 ⑪~⑮, ⑰, ⑱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목적 외 제공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⑩~⑬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제1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제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및 처리정지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함(기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경우 등에는 예외)

○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관리)

○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 동의사항 구분 및 포괄동의 금지, 동의필요사항과 불필요사항 구분, 마케팅 광고 목적의 경우는 명확하게 인지시킨 후 동의, 재화 서비스 등 제공거부 금지, 아동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매체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동의방법

②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제23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 처리금지(다



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고지사항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제24조)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금지(다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고지사항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공기관 등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의무(안전행정부장관은 대체수단 제공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제25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제26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 안전조치의무(제29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공공기관은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립 변경시 공개의무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안전행정부장관의 작성지침 준수 권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31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파일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통상적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자 등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변경등록
- 등록적용제외 : 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③ 조세범칙행위 조사 사항 기록개인정보파일, ④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안전행정부장관의 등록사항 및 내용 검토 개선권고권 및 등록현황 공개의무

○ 공공기관의 장의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 개인정보 유출통지(제34조)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장)

○ 개인정보의 열람권(제35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 요구/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의 열람 허용 의무 및 연기
- 열람 제한 거절 사유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조세 부과·징수·환급 및 교육기관의 성적평가·입학자선발, 각종채용시험 및 자격심사, 보상금·급부금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조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권을 가짐(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불가하며 고지의무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의무 및 결과 통지의무 및 증거제출요구권
- 개인정보를 삭제 시 복구 재생방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7조)

－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의무 및 거절사유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정지 요구 거절 사유 고지의무

－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의무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8조) :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의 요구 시 문서 등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대리인·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고 수수료·우송료를 청구할 있음. 또한, 열람 등 요구절차 방법 마련해 공개하고 불복절차 마련 안내도록 함

○ 손해배상책임(제39조) : 입증책임 전환 및 성실 주의 감독 시 감경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6장)

○ 설치 구성(제40조)

○ 위원 신분보장(제41조)

○ 위원 제척 기피 회피(제42조)

○ 조정신청 등(제43조)

- 처리기간(제44조)
- 자료 요청 등(제45조)
- 조정 전 합의 권고(제46조)
- 분쟁의 조정(제47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8조)
- 집단분쟁조정(제49조)
- 조정절차 등(제50조)
  
- (7) 개인정보 단체소송(제7장)
  - 단체소송 대상 등(제51조)
  - 전속관할(제52조)
  - 소송대리인 선임(제53조)
  - 소송허가신청(제54조)
  -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 민사소송법 적용 등(제57조)

(8) 보칙(제8장)

- 적용의 일부제외(제58조)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배제
- 금지행위(제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비밀유지 등(제60조) : 영향평가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금지(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62조) :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 안전행정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시정조치 등(제64조), 고발 및 징계권고권(제65조), 결과공표권(제66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제67조)
- 권한의 위임 위탁(제6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9조)

(9) 벌칙 (제9장)

##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 □ 전반적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단체와 개인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개별 국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보호의 침해소지가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용인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국가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통계작성 등을 위한 경우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낮은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 법 제3장부터 제7장 등 거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이 일반법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시한 법률을 보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로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과거 주민등록증 통합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였다가 야당과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것 같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남용을 더욱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전례가 있어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는 그 존립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국회 등에 의한 다양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민등록증의 사례는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음
-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자료를 수집 이용하여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고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관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것과 달리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한 곳으로 취합하여 이용하게 되어 남용의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취지를 따른다고 해도 신법 자체에서 별도의 정보보호대책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배제 방식에 관한 검토

#### (1) 타법의 입법례

##### ① 「전자정부법」의 경우

-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함
- 공동이용정보가 개인정보파일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동이용 승인을 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함(제39조제4항)
- 행정기관 등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지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제42조)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에 대하여 열람사항과 열람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제43조)

⇒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동법과 다른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이용의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② 「주민등록법」

-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제28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산자료 이용자의 범위와 제공되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제30조)

⇒ 이러한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전동의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한 조항과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제도인데 입법적으로 다소 미흡함을 보이고 있으며 오랜 실무 관행상으로 해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이용체제의 공시(제31조) :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 공시의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제32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의 타인 제공시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명 전자문서 등의 방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신용정보 이용자별로 사전동의를 정하고, 사전동의 면제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제37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제38조)
  -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제42조)
  - 손해배상(제43조)
  -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 제한(제33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제한(제34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제35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6조)에 관한 규정을 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이 법의 제명을 명시하였듯이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며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과의 우선적용에 관하여는 해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절차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절을 두었으며 수많은 조문에서 거의 완결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우선적용문제가 해석상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음

구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통	신용정보법 제15조(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의 원칙), 제23조

	신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적용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한 예외사유(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적용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
제 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적용	신용정보법 제33조 적용
제 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0조(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적용	신용정보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적용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 단, 14세 미만의 아동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신용정보법 제16조 적용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9조의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치 적용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7 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 28 조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적용	신용정보법 제19조 적용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적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사항 모두 포함)	신용정보법 제20조 적용(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항목 모두 포함)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적용(단, 업무가 상이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추가수행)	신용정보법 제20조 적용(단, 업무가 상이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추가 수행)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신용정보법 제38조 적용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동의를 받는 방법 철회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그 외의 처리정지 요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신용정보법 제38조 적용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적용	신용정보법 제43조 적용
제49조(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51~57조(침해 중지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59조(금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적용, 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금지의무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60조(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해당 법률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신용정보법 제45조, 제52조 적용
제66조(결과의 공표)	해당 법률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⑤ 기타 법률

○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정한 법령은 17개 부처 38개 법령임

## &lt;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현황 &gt;

연번	소관부처	법령	주요내용
1	안전 행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 및 민간 대상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의 비공개
		주민등록법(제30조 등)	·행정기관 및 행정업무 위탁기관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금지
		전자정부법(제4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주민등록정보의 처리 및 보호
		전자서명법(제24조)	·행정기관 대상 ·개인정보 원칙 명시
		공직자윤리법(제13조 등)	·행정기관 대상 ·공직자재산등록정보의 보호
2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통신사업자 대상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제3조 등)	·통신사업자 등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개인 위치정보의 비밀 보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 대상 ·인터넷주소 사용자 정보의 보호
3	금융 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대상 ·신용정보 제공·이용 및 보호조치
		보험업법(제177조)	·보험사업자 대상 ·개인정보의 누설·제공 금지
		은행법(제21조의1)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 대상 ·정보누설·목적외 이용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금융기관 대상 ·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4	보건 복지부	의료법(제21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환자의 진료내역, 병력 등의 정보보호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검진자료의 이용 및 보호
		장기 등 이식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장기이식관리기관 등 대상 ·장기 이식자 등의 비밀 보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6조)	·의료기관 ·유전정보 등의 보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조직병원 등 대상 ·조직기증자 정보 보호
5	교육부	교육기본법	·교육관련 기관 등 대상 ·학생 정보의 보호
		초·중·고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6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업자 및 통신망관리자 대상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 보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업무 담당 대상 ·출입관리정보의 보호
7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명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 대상 ·소비자의 정보이용 등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방문판매 사업자 대상 ·소비자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8	기획 재정부	관세법(제116조)	·세관공무원 대상 ·관세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세사법(제14조)	·관세사, 직무보조자 대상 ·업무상 비밀 유지
9	산업통상 자원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12조)	·전자상거래 이용자 대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명시
10	외교부	여권법(제18조)	·국가(외교통상부)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11	국토 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대상 ·업무상 비밀준수
		자동차관리법(제69조)	·국가(국토해양부) 대상 ·자동차소유자 사생활 비밀 보호
12	고용 노동부	노동위원회법(제2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 직원 대상 ·업무상 비밀준수

13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국세청, 세무서 등 대상 ·기업 및 개인 등 납세자 정보 보호
14	통계청	통계법(제33조 등)	·중앙, 지방자치단체 대상 ·통계작성 등 위한 개인정보 보호
15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등)	·경찰공무원 대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6	병무청	병역법(제81조 등)	·병역담당 기관 및 공무원 등 대상 ·병역정보의 수집·이용 등
17	감사원	감사원법(제27조)	·감사원 대상 ·감사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 □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장부터 제7장을 적용 배제하여 사실상 전체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통계작성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선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부합하는 사례는 없음
  - (i)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특칙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항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함
    - 「전자정부법」은 특칙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낙 방대하고 정보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통계작성에는 이러한 제약, 특히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나 열람청구권 등을 일일이 고려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특칙이 필요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신법은 통계작성기관은 제외시키고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통계에만 적용하며 수집한 자료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를 유통시킬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도 다수의 특칙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일일이 특칙을 들 경우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이 방식은 채택하기 어려움

(ii) 「주민등록법」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입법례임

(iii) 「신용정보나 정보통신망을 규율하는 법률」

- 다양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항들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무부처와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처럼 신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전면적으로 적용배제하고 행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임

#### IV.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분석

###### □ 입법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

- 행정기관간의 자료 이용에 초점이 있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에 초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과 쌍둥이법이라고 할 수도 있음

#### □ 장절 편성 및 주요 내용

##### (1) 총칙(제1장)

###### ○ 정의(제2조)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 기본원칙(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2)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제2장)

######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제5조 및 제6조)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7조 및 제8조) :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① 기본계획포함사항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시행계획포함사항

-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제9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제10조)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1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 공공데이터이용지원센터(제13조)
-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제14조)
- 민간협력(제15조)
- 국제협력(제16조)

(3)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제3장)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제17조) :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8조)
-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제19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제20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용(제21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촉진을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품질인증 등의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3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제24조)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훈련(제25조) :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국민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함

(4)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등(제4장)

-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제2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제28조)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29조~제34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자의 구제절차를 둠
- 비용부담(제35조)

(5) 보칙(제5장)

- 면책(제36조)
- 자료의 제출요청(제37조)
- 권한의 위탁(제38조)
- 위임규정(제39조)

(6) 벌칙(제6장)

- 과태료(제40조)

##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 개인정보포함 공공데이터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정보를 일반 공공에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까다로운 규제를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신법은 통계청에서만 사용하는 자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의미함

### □ 입법참고사항

- 품질관리, 이용촉진,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신법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법의 내용은 신법에 참고하기 보다는 향후 통계자료를 민간에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통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반영할 경우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봄

## V.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 분석

#### □ 입법목적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형식이 대통령령인데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상은 대통령

훈령적 성격을 가짐

- ※ 그런데 적용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는데(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적용근거가 희박함

## □ 장절 편성 및 주요 내용

### (1) 총칙(제1장)

- 목적(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공문서 :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 전자문서시스템 :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이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

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그 밖에 주로 전산화 관련 용어 정의가 많음

(2)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제2장)

①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제1절 : 제4조~제20조)

- 공문서의 종류, 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의 기안 검토 및 협조 결재 등록 등, 시행문의 작성, 발신 명의, 관인날인 또는 서명, 문서의 발신, 문서의 발신방법 등,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문서의 접수 처리, 문서의 쪽번호 표시,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한 특례
-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제7조)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씀
  -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함
  -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씀
  -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함

- 기타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②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제2절 : 제21조~제25조)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의무,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및 제22조)

-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제23조)

-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분류시스템(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제24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되, 「산업표준화법」 상의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름

-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 표준과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 표준과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제25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지원을 위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함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업무

-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과 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 등의 운영



-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전자문서의 유통 시 발생하는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마련

③ 서식의 제정 및 이용(제3절 : 제26조~제32조)

○ 서식의 제정(제26조) :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함

○ 서식 제정 방법(제27조)

- 법령으로 정할 서식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그 밖의 서식은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제28조)

-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이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됨

-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해야 함
- 기타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서식의 승인 등(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경우 사후통보로 승인에 같음)
-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승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위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서식 승인의 신청(제30조)

-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 신청을 함

○ 서식의 제공(제31조)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제32조)

④ 관인의 관리(제4절 : 제33조~제40조)

(3)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제3장)

① 업무의 협조(제1절 : 제41조~제43조)

○ 기관 간 업무협조(제41조)

- 적용대상기관 :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 적용대상업무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 협조시기 등 :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 전에 협조요청.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추진계획 등 그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함

○ 업무협조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제42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업무의 성질상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협업시스템의 이용 촉진(제43조)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협업시스템 이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협업시스템 이용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융합행정의 촉진(제2절 : 제44조~제46조)

○ 융합행정의 촉진(제44조)

- 융합행정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행정
- 행정기관의 장은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를 발굴·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융합행정 촉진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제45조)
- 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제46조)
  - 융합행정과제 수행 행정기관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융합행정과제의 수행성과 평가·분석 체계적 관리해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융합행정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음

③ 지식행정의 활성화

-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제47조)
  - 지식행정 :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행정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
  - 행정기관의 장은 지식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시행해야 함
    - 지식행정의 목표 및 이용 전략
    -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이용·관리되도록 노력

○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제48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실태의 점검·평가

-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방식 등 전문지식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정책연구의 관리(제4절 : 제49조~제56조)

⑤ 영상회의의 운영(제5절 : 제57조~제59조)

(4) 행정업무의 관리(제4장)

○ 업무 분장, 인수인계, 업무편람 작성 이용, 정책의 실명관리,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제60조~제64조)

(5) 보칙(제5장)

○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감사, 문서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대통령 또는 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국가정보원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제65조~제70조)

## 2. 신법과의 관련 사항

### □ 전반적 검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양대 축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하여는 기관 간 협조와 융합행정, 지식행정 등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국가통계작성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행정부의 총괄 조정 권한 미비와 각 부처 기관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 아직 노력하여야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정부 3.0”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정책결정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되면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신법의 입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별개의 장인 일반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것 중 서식의 제정 및 이용은 행정자료의 표준화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서식 설계 및 승인에 관한 이 규정상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문서 작성 원칙도 표준화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업무관리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통계작성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신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통계작성에 관한 요소를 추가하여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봄

### □ 서식의 제정 이용과 표준화

- 서식은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 및 정보전달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행정정보는 대부분 서식을 통하여 입수됨
- 이 규정에서 서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제26조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식이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담는 가장 유용한 그릇이 됨을 나타냄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현행화 되어야 하는 통계작성의 요구에 부합
- 정형화된 문서 : 기관 내부 차원에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 서식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서식 중 법령으로 제정되는 서식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서식을 통한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표준화가 상당수 달성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하므로 안전행정부를 통한 표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고시 등으로 제정하는 서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도 표준화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서식 승인 과정에서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마련이 요구됨
- 대상 서식 : 신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정자료와 관련된 서식
- 서식설계기준에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필요함
- 서식설계 후 안전행정부에 심사요청을 하기 전에 통계청장에게 서식개정사실과 내용을 통보하게 한 후 통계청장의 의견을 듣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또는 합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방안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후 통계청장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규정된 일정한 행정자료와 관련 있는 서식 중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식을 정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문서작성 원칙 중 「국어기본법」에 의한 어문규범에의 부합, 이해하기 쉽게 작성, 바코드 등 표기 등은 표준화



와도 관련이 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도 표준화 관련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고시도 주로 시스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이고 행정자료의 표준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
- 어느 법령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
  - 신법에 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안전행정부의 고유 업무인 서식 승인에 대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반대가 예상됨
  - 따라서 신법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행정자료와 관련 있는 서식 중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식을 정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함

## VI. 주요 조문 비교 검토

### 1. 신법과 관련 법률의 주요 조문 비교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적용 범위	통계청 및 기타 통계작성 기관	통계작성 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기 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행정자료 표준화	○	×	○ (전산 표준화)	○	×	○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행정자료 이용 우선	○	×	×	×	×	×	×
행정자료 표준화	○	×	○ (전산 표준화)	○	×	○	×
식별번호 부여	○	×	×	×	×	×	×
서식 변경 사전협의	○	×	×	×	×	×	×
행정자료 이용의 고지	○	×	×	×	○ (개인 정보)	×	×
행정자료 품질관리	○	○	×	○	×	×	×
행정자료 제공요청	○	○	○	○	×	×	○
행정자료 제공 범위	○	○	○	○	×	×	○
행정자료 제공 방법	○	○	○	○	×	×	○
목적 외 사용 금지	○	○	×	×	○	×	×
행정자료 제공 중지	○	○	×	○	×	×	×
통계등록부시스템구축	○	○ (통계정보 시스템)	○ (공동이용 시스템)	○ (등록관리 시스템)	×	○ (업무관리 시스템)	×
행정자료 보유·관리	○	×	×	○	×	×	×
정보 보호	○	○	○	×	○	×	×
식별정보의 암호화	○	○	×	×	○	×	×
등록센서스	○	×	×	×	×	×	×

## 2. 적용 범위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적용 범위	통계청 및 통계작성 기관	통계청 및 통계작성 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 신법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법 제3조에서 “통계청장이 행정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중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정의는 서로 상이하며 「통계법」의 적용범위는 통계작성기관임

법률	근거 규정
신법	<b>제1조(목적)</b> 이 법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p>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대상)</b> 이 법은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하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 중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통계법	<p><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p> <p>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p> <p>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p>
전자정부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3. 3.23&gt;</p> <p>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b>행정기관 및 공공기관</b>(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p> <p>2. "<b>행정기관</b>"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p> <p>3. "<b>공공기관</b>"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p>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p>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p>
<p>개인정보 보호법</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b>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b>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b>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b> 등을 말한다.</p> <p>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p> <p>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p>	<p><b>제2조(적용범위)</b>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b>지방자치단체</b>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p> <p>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p> <p>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가기관</p> <p>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p> <p>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p>

	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 3. 행정자료 표준화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표준화	○	×	○ (전산 표준화)	○	×	○	×

- 신법에서의 표준화는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및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연계된 다른 행정자료간의 상호 결합 분석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으로, 통계작성에 필요하여 수집하는 행정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분류체계·식별번호 및 행정자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의 속성, 행정자료의 처리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를 의미함
- 「전자정부법」 상의 표준화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의미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표준은 전자문서의 유통,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서식표준화에 관한 사항임.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표준화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행정자료와는 서로 차이가 있음

- 「전자정부법」 등 여러 법령에서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표준화법」 과의 충돌만을 문제 삼을 뿐(신법이 「산업표준화법」 과 충돌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을 따르도록 규정함), 각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법과 타법과의 충돌 소지는 없을 것임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15조(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b> ①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행정자료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분류체계·식별번호 및 행정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의 속성</li> <li>2. 행정자료의 처리기준</li> <li>3. 행정자료 표준화의 현행화 시기 및 방법</li> <li>4. 그 밖에 행정자료를 기재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li> </ol>
전자정부법	<p><b>제50조(표준화)</b>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b>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li> <li>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li> <li>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p><b>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b>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li> </ol>

	<p>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p> <p>2.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p> <p>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b>제26조(서식의 제정)</b>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p> <p><b>참고 &lt;서식표준화&gt;</b></p> <p><b>제27조(서식 제정 방법)</b>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p> <p>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p> <p>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p> <p>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p> <p>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p> <p><b>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b>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이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p> <p>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



	<p>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 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 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p> <p>⑦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29조(서식의 승인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p> <p>④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b>제41조(기관 간 업무협조)</b> ①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 전에 관계 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li> <li>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li> <li>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li> <li>4.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li> </ol> <p>②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추진계획 등 그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	---

#### 4. 행정자료 품질관리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품질관리	○	○	×	○	×	×	×

- 신법은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행정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통계적 기법 처리 과정에서 결함 등이 발견되면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품질관리의 정의 규정 보완(제1항~제4항) : 안전행정부 최근 시행 공문에 나타난 데이터품질의 정의를 참조함(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 먼저 통계청장이 품질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규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최근 시행 공문에 나타난 개선계획을 고려하여 통계청장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개선계획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음)
  - 이러한 품질기준과 품질관리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기관에게 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에게 자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품질진단 : 품질개선을 위하여 품질진단 실시권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므로 이를 반영함(제5항)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진단은 해당 공공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안전행정부에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둘 경우 중복 문제 등이 생기므로 통계청장의 품질진단은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보유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품질인증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기법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여 통계작성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통계적 기법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과 제2항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⑥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 품질진단 그 밖에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통계법	<p><b>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b>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이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2.18&gt;</p> <p>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p>

	<p>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li> <li>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li> <li>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이용계획</li> <li>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④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p> <p>⑤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12.18&gt;</p> <p><b>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b>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b>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p>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p>	<p><b>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b>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활성화에 관한 법률</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품질인증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5. 행정자료 이용의 고지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이용의 고지	○	×	×	×	○ (개인정보)	×	×

- 신법 제22조제2항은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구를 행정서식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2조(기관간 협조)</b> ① 통계청장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p>

	<p>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구를 행정서식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인정보 보호법</p>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li> <li>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i> <li>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li> <li>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i> </ol> <p>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i> <li>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i> </ol>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li> </ol>

	<p>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b>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b>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b></p> <p><b>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b>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li> <li>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li> <li>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li> </ol>
--	--

	<p>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p> <p>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p> <p>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p>
--	---

## 6. 행정자료 제공요청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8개)
행정자료 제공요청	○	○	○	○	×	×	○

- 신법에서는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행정자료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요청권자가 일반국민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



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신법과는 제공 요청권자가 상이함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10조(행정자료의 제공요청)</b> ① 통계청장은 제9조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심사·승인·협의를 거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p>
통계법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9.4.1, 2012.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09.4.1&gt;</li> <li>2. 삭제 &lt;2009.4.1&gt;</li> <li>3. 삭제 &lt;2009.4.1&gt;</li> <li>4. 삭제 &lt;2009.4.1&gt;</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전자정부법	<p><b>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b>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p>

	<p>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5.17&gt;</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b>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li> <li>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0조(정보공개청구방법)</b>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li> </ol>

	<p>을 말한다)</p> <p>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p> <p>② 제1항의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7. 행정자료 제공범위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제공 범위	○	○	○	○	×	×	○

신법에서는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함

- 행정자료의 제공의 범위·시기·방법 등
- 식별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 행정자료의 갱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

통계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는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고시 등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법 별표에서 열거하여 규정함

- 국방부의 현역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여부

- 신법 제12조제1항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일 현역자료가 국가기밀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만으로 바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공단 등 산하기관의 경우 감독부처와 함께 규정할 경우(각호에서는 부처명을 기재하고 각목에서는 산하기관명을 기재하는 것 등) 실제 업무수행상 책임회피 등이 우려되므로 산하단체명을 기재하도록 함
- 「통계법」 제24조는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부족함
- 「전자정부법」 제38조는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신법과는 차이가 있음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9조(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b>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 제공의 범위·시기·방법 등</li> <li>2. 식별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li> <li>3. 행정자료의 갱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li> </ol>
통계법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9.4.1, 2012.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09.4.1&gt;</li> <li>2. 삭제 &lt;2009.4.1&gt;</li> <li>3. 삭제 &lt;2009.4.1&gt;</li> </ol>

	<p>4. 삭제 &lt;2009.4.1&gt;</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전자정부법	<p><b>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b>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li> <li>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li> <li>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li> </ol> <p>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b>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li> <li>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p>

	<p>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	<p><b>제9조(비공개대상정보)</b>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li> <li>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i> <li>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li> <li>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i> <li>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li> <li>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i> <li>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i> </ul> </li> <li>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li> </ol>

	<p>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lt;전문개정 2013.8.6&gt;</p>
--	--

### 8. 행정자료 제공방법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제공 방법	○	○	○	○	×	×	○

□ 신법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함

- 신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전자정부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용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 「전자정부법」 제39조 이하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정보보유기관의 동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통계작성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 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호법」 제3장부터 제7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달리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됨

- 정부3.0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을 대폭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와 정보보유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골격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신법에서 행정자료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입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상의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의무 및 별도 수집 금지를 규정하였는바, 통계작성 목적의 신법의 취지도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한 서로 모순되는 바는 없음

- 문제는 행정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통계작성 목적의 이용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전자정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봄

- 「전자정부법」 제37조에서는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설립 근거 마련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통계정보를 공동이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된 통계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통계정보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행정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

□ 신법과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 행정정보보유기관, 행정자료 등의 용어 통일 필요성

- 「전자정부법」에서 이미 행정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두 개의 법이 각각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용어 통일을 할 필요



는 없고 혼선이 생길 우려가 없도록 조문을 구성하면 될 것으로 봄

- 「통계법」 과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과 신법과의 관계 분석
  - 「전자정부법」 과의 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은 통계작성의 경우 스스로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 배제하였고 이는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신법의 부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신법에 대해서도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배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개를 거부하도록 하였고 그밖에도 국가안보 등에 관한 공개예외 규정이 있는데 신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달라 상충의 소지는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입법취지나 규율대상에서 차이가 있어 상충의 소지가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개가능정보를 대상으로 소극적인 공개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시도하고 있는바, 여기에 의하여 공유되는 정보도 통계작성에 이용 가능하지만 이를 굳이 신법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봄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11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통계법</p>	<p>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④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통계법 시행령」</p> <p>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li> <li>2. 통계자료의 명칭</li> <li>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li> <li>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li> <li>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li> <li>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전자정부법</p>	<p>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p>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b>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li> <li>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3.29, 2013.3.23&gt;</p>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li> <li>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li> </ol>
--	--

	<p>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p> <p>⑥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li> <li>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li> <li>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li> </ol>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	<p><b>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b>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b>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p>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b>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b>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9. 목적 외 사용 금지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 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목적 외 사용 금지	○	○	×	×	○	×	×

□ 신법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개

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유통 등 정보주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에 관해서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음

- 신법에 제3자 제공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법 제4조제2항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신법에서는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행정자료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7조(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b>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없다.</p> <p><b>제46조(비밀준수)</b>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던 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통계법	<p><b>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b>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b>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b></p>
개인정보 보호법	<p><b>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b>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b>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p> <p><b>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b>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p>

	<p>이하 같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i> </ol>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li> <li>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li> <li>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i> </ol>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b></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i> <li>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	--



	<p>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li> <li>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li> <li>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i> </ol> <p>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ol>
--	---

### 10. 행정자료 제공 중지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 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제공 중지	○	○	×	○	×	×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신법에서는 통계청장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신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제공중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b>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이 제3장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9조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통계법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9.4.1, 2012.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09.4.1&gt;</li> <li>2. 삭제 &lt;2009.4.1&gt;</li> <li>3. 삭제 &lt;2009.4.1&gt;</li> <li>4. 삭제 &lt;2009.4.1&gt;</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p>

	<p>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b>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li> <li>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11. 행정자료 보유·관리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행정자료 보유·관리	○	×	×	○	×	×	×

신법의 행정자료 보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검토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 데이터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의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도록 함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p> <p>②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b>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 12. 정보 보호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정보 보호	○	○	○	×	○	×	×

- 신법은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정해 준수하도록 규정함. 또한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행정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조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입법실무적으로 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과 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으로 규정함이 논리적 구성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통계법」 역시 제24조제3항에서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강력한(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b>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b> 통계청장은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통계법</p>	<p><b>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9.4.1, 2012.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09.4.1&gt;</li> <li>2. 삭제 &lt;2009.4.1&gt;</li> <li>3. 삭제 &lt;2009.4.1&gt;</li> <li>4. 삭제 &lt;2009.4.1&gt;</li> </ol>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b>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b></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전자정부법</p>	<p><b>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b>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b>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b>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b>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b>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b>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b></p>
<p>개인정보 보호법</p>	<p><b>제29조(안전조치의무)</b>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b>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b></p>

## 13. 식별정보의 암호화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식별정보의 암호화	○	○	×	×	○	×	×

□ 신법은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도록 함에 따라 식별번호에 대한 보호 소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식별번호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며, 암호화되지 않은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함

○ 또한, 행정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함

□ 「통계법」에는 개인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암호화된 개체식별정보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해짐)하고 있음

## □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와 거의 유사하므로, 대통령령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해

서 일반적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영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영 제21조).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암호화

-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 또는 외부 공격자(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보안기술을 의미함.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안전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함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 먼저 암호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한다면 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나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이 매우 커짐.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만을 정하고 있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 다음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암호화의 기준에 대해, 전송시의 암호화와 저장시의 암호화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 저장시에는 다시 그 저장 대상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저장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5항)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다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비하여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암호화의 적용시기에 대해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2011년 9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였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7항)
- 마지막으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단순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에도 손쉽게 유출·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도록 하고 있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8항)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b> ①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암호화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통계법</p>	<p><b>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b>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b>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b>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2.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li> <li>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li> </ol> <p>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b> ①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b>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b></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개인정보 보호법	<p><b>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b>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i> </ol>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	--

#### 14.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구분 (조문수)	신법 (52개)	통계법 (42개)	전자정부법 (78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0개)	개인정보 보호법 (75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8개)
통계등록부 시스템구축	○	○ (통계정보 시스템)	○ (공동이용 시스템)	○ (등록관리 시스템)	×	○ (업무관리 시스템)	×

- 신법 제37조에서는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본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표준화된 행정자료 제공의 편의도모 및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한 것이어야 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다만, 이와 같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관리 및 비용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설립에 따른 장·단점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신법 이외에 자료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봄으로써 동법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통계등록부시스템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라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자료 관리 시스템 관련 법령

- 「통계법」 제7조의2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37조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자적 시스템(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비교

- 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등

구분	신법 상의 통계등록부시스템	「통계법」 상의 통계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구축 목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안전한 이용 및 보호	통계의 효율적 작성, 보급 및 이용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

	행정자료	통계자료	행정정보
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문서·대장 및 도면으로서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함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동법 제3조제4호	동법 제2조제6호
이용 기관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통계청장 및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등록부시스템 내에 구축된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 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금융기관
	동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3조제3호	

#### □ 각 시스템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각 시스템은 각각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기는 하나 관계 기관이 작성, 취득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시스템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음
- 또한, 관계 기관이 작성, 취득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내지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스템의 관리대상의 범위가 다르고, 특히 통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행정자료는 「통계법」 상의 통계자료보다 더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법」 상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어려움
-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의 이용기관과 보유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별도로 행정정보를 만들거나 보관하지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는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중복되는 행정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취약한 점이 있음

- 게다가 「전자정부법」 상의 전자문서 및 행정코드 등의 표준화는 신법의 추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표준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표준화된 행정자료 제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어려움

### □ 정리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행정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시스템 설립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면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통계법」 상의 통계정보시스템이나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경우, 그 구축목적은 물론 관리대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위의 양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재구축 내지 재편성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재구축 내지 재편성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재이용은 비용 경감 차원에서는 특별한 실익이 없음
  - 또한 기존의 양 시스템 중 하나를 이용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관리대상이나 이용기관 등의 확대에 당해 시스템 규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규모의 확대는 안전 관리의 부담 요소로 이어져 행정자료의 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즉, 기존의 시스템 이용은 비용 경감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보다 약간의 비용이 경감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 내지 기껏해야 제로섬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검토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행정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p> <p>②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통계법	<p><b>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b>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b>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b>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전자정부법	<p><b>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b>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b>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b> (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p>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b>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b>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b>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b>하여야 한다.</p> <p><b>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b>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b>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이용을 촉진</b>하여야 한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p>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이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p>	<p><b>제42조(업무협조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b>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요청 받은 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

## 제4장

# 입법을 위한 쟁점검토

제1절 개인정보 보호

제2절 표준화

제3절 품질관리

제4절 등록센서스





## 제4장 입법을 위한 쟁점검토

###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I.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문제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사법부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따라서 신법에서는 통계작성에 있어서 행정자료의 이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대폭적인 보완을 하여 행정자료의 소관기관의 자료 제공에 따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2. 신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이하의 적용배제는 유지하되 통계 업무의 특유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참조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조항과의 관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법이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으로써 행정정보의 이용주체의 범위가 민간 통계작성기관까지 확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외에 지원센터 이용 신청 및 승인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I.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p><b>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u></li><li>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li><li>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li><li>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li></ol> <p>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u>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

-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그 밖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같은 권리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의 균형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 및 일정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법률의 일부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는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이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	<p><b>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b>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i> </ol>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p>
----	--

	<p>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시행령	<p><b>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b>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li> <li>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li> <li>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li> <li>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li> </ol> <p><b>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b>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p>

□ 고유식별정보는 원래 공익목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나 그 편리성 때문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음.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고유식별정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법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으며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유식별정보는 민간 분야에서 DB매칭키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고 있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됨

### III.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

#### 1.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신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설정과 관련하여 (1안)과 (2안)으로 나눌 수 있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1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처럼 신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취지에 따라 「통계법」 과 같이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전면 적용배제하고 행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따로 규정하는 방식
- (2안) 「개인정보 보호법」 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특칙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해당 조항과 연계시켜 규정하는 방식
  -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장부터 제7장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전체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통계작성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과 달리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한 곳으로 취합하여 이용하게 되어 남용의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취지를 따른다고 해도 신법 자체에서 별도의 정보보호대책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충처리를 포함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공받는 행정자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봄



## 2. 외국 입법례 검토

구분	내용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li> <li>•국가주권, 국가안보,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위한 경우</li> </ul>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하게 사적이고 가사목적의 활동을 위한 경우</li> <li>•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의 경우</li> <li>•형사법 영역의 국가활동(수사 등)</li> <li>•보도 목적, 문학적·예술적 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li> </ul>
독일 「연방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오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영역에 속하는 경우(제3조제3항)</li> <li>•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침해 방지, 형사상·행정상 집행을 위한 경우(제14조제2항)</li> <li>•계약목적, 정보주체의 중요한 법적 이익,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학문연구, 과학적 연구(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기타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법적 이익 또는 공익보호, 정치·철학·종교 또는 노동조합 목적(제28조)</li> </ul>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도 목적(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li> <li>•저술활동 목적(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li> <li>•학술연구 목적(대학 기타 학술연구 단체, 기관 및 구성원)</li> <li>•종교활동 목적(종교단체)</li> <li>•정치활동 목적(정치단체)</li> </ul>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가정적 목적, 언론·예술·문학적 목적(제4조제2항)</li> <li>•법률 위반조사, 개인의 생명·건강·안전보호, <u>통계·학술조사, 공공이용이 가능하고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7조제2항)</u></li> <li>•법정 변호사 및 사무 변호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부채회수의 목적, 법원의 필요, 법적 권한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제7조제3항)</li> </ul>
영국 「정보보호법」 (제28조~제36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한 사적 목적(개인 자신, 가족, 가사 등)을 위한 경우</li> <li>•국가안보를 위한 경우</li> <li>•범죄 방지·수사·검거 및 조세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li> <li>•다른 법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을 위한 감시기관(공정거래 등)의 규제활동목적</li> <li>•언론·예술·문학적 활동 목적의 경우</li> <li>•<u>연구·역사·통계 목적의 활동인 경우</u></li> <li>•법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인 경우</li> <li>•군대, 법률 소송, 법관 임명 및 훈장 수여 등</li> </ul>
--	--

### 3. 신법상 규정방식 검토

#### □ 「개인정보 보호법」의 배제

##### ○ (1안)의 경우 규정방식

부칙에 규정하는 방식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8조제1항제1호중 “「통계법」”을 “「통계법」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p>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규정하는 방식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p> <p>② ...</p> <p>③ 이 법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p> <p>③' 이 법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③ 또는 ③' 중 선택</p>

##### ○ (2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특칙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항과 연계시키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방대하고 정보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통계작성에는 이러한 제약, 특히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나 열람청구권 등을 일일이 고려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특칙이 필요함

○ (1안)의 부칙에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안)의 신법 부칙에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58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신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배제하면 될 것임

<b>「개인정보 보호법」 의 (우선) 적용 사례</b>
<p><b>형사소송법</b></p> <p>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lt;개정 2011.7.18&gt;</p> <p>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lt;신설 2011.7.18&gt;</p> <p>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lt;신설 2011.7.18.&gt;</p>
<p><b>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b></p> <p>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대학생 본인과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및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li> <li>3. 고등교육기관</li> </ol>

4. 금융회사등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③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비영리 장학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

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

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배제 사례**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



- 는 정보의 제공 등 등기 관련 사무
2.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3. 공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청구인의 특정,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등 공탁 관련 사무
  4. 집행관의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집행절차에서의 노무자·기술자·보관업자 등록,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인 등록, 「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관련 사무
  6.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부여(시험절차 포함), 등록, 징계 관련 사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 및 등기소출입증발급 등 관련 사무
  7. 법관, 비법관 재판연구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집행관의 채용 및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허가 등 인사 관련 사무
  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10.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11.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조사·보호, 강제퇴거,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 법 제65조제3항(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확인 사무
4. 법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 신법 제12조(행정자료의 제공의 거부와 중지)

- 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이 제3장에 따른 보안 및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9조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근거 법률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근거법률인 「통계법」을 참고로 신법 제12조의 법률문구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요건 등을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한 신법에서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제공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이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39조를 참조하여 규정하면 됨
- 행정자료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된 정보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잠정적인 제공 거부를 규정함. 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문(제12조제2항)은 보안 및 정보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계법」 제24조제4항과 같이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함

□ 신법 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관련

**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①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신법상 “식별번호”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고유식별번호 보다 넓은 개념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번호
  -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 타 법률에서는 “고유식별”과 관련하여 조문의 제명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두 가지로 한정됨
- 조문의 제명에서 고유식별을 사용하는 315개의 법령의 검토 결과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소수의 부령 및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감사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신법 제15조와 같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참고할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타 법률 검토	
국유재산법 시행령	<p>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u>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 신청 관련 사무</li> <li>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li> <li>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li> <li>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li> <li>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li> <li>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li> <li>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li> <li>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li> <li>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li> </ol>

	<p>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p> <p><b>국유재산법</b></p> <p>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lt;개정 2011.3.30&gt;</p> <p>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p> <p>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lt;개정 2010.6.4&gt;</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0.6.4&gt;</p>
<p>고용보험법 시행령</p>	<p>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2.7.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6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li> </ol>



	<p>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p> <p>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p> <p>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p> <p>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p> <p>.....</p> <p><b>고용보험법</b></p> <p>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공직자윤리법 시행령</p>	<p>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li> <li>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li> <li>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li> </ol> <p><b>공직자윤리법 시행령</b></p> <p>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2.31&gt;</p> <p>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기업체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p>

	<p>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 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	<p>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u>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li> <li>2. 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li> <li>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li> <li>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li> </ol> <p><b>도시가스사업법</b></p> <p>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li> <li>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li> <li>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li> </ol>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lt;개정 2010.3.31&gt;</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감사원 사무처리규칙</p>	<p>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u>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제</u></p>

	<p>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p> <p><b>감사원법</b></p> <p>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li>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li> <li>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li> </ol> <p>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p>
--	--

	<p>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b></p>	<p>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p> <p><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b></p> <p>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li> <li>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li> <li>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li> <li>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p>
<p><b>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b></p>	<p>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li> </ul>
	<p><b>공익신고자 보호법</b></p> <p><b>제8조(공익신고의 방법)</b>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li> <li>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li> <li>3. 공익침해행위 내용</li> <li>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li> </u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b>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 신법 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

**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 ①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화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근거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영 제21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

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 암호화 추진 일정 등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

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10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와 거의 유사하므로, 대통령령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해서 일반적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영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영 제21조).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신법 제26조에서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도록 함에 따른 식별번호 보호 소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식별번호의 암호화와 관련하여 암호화 과정의 절차와 기법을 대통령령에 규정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변조·훼손되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상당히 곤란함. 따라서 개인정보는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제2절 표준화

### I. 현황 및 문제점

#### 1. 행정자료 입수 현황 및 문제점

##### □ 행정자료 입수 현황

- 가구·주거형태의 변화 및 사생활보호인식 강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현장조사가 점차 어려워지며,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할 실익이 높음
- 통계청은 2013년 5월 말 현재 128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작성에 이용하고 있음

\* 이용현황 : 신규통계작성(4종), 기존 조사통계 항목 대체(21종), 기존통계 검증 및 보완(11종)

##### □ 행정자료 입수 문제점

- 행정자료가 통계작성에 이용할 실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 행정자료의 부실

- 항목누락, 행정자료내 혹은 행정자료간 항목 불일치 등 행정자료 자체가 부실하여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정비하여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단위 : 천원)

인구주택총조사	2011년	2012년
행정자료간 비매치분 수동연계 인력 비용	729,433	88,675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사이의 분류 및 개념의 불일치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사이에 개념의 차이가 있거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입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

(단위 : 천원)

인구주택총조사	2012년	2013년
행정자료와 총조사자료간 비매치분 수동 연계 인력 비용	621,384	377,091

\* 행정자료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현장조사 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음

- 행정자료 입수 및 공동 이용의 곤란
  -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자체를 입수하거나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2.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 □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현황

#### ① 시간의 표시

- 연월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직장가입자	기준년월	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기준년월	6
국세청	법인세자료 공사원가명세서	신고.과세기간(년월)	6

국토해양부	공동코드관리	기준년월	6
대한상공회의소	재무정보	결산년월	6

## ○ 연월일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항목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직장가입자	생년월일	8
한국신용평가	종목개요	배당기준월일자	8
국민연금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적용일자	8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폐업일자	8
대법원	법인등기자료	회사성립연월일	10
국세청	부가가치세자료-사업장단위	등록일자	14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	신청일자	12

## ○ 일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료	자료적재일시	16
국세청	법인사업자당해폐업	자료적재일시	14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자단위 가동	자료적재일시	14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자단위 당해	자료적재일시	14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서자료	자료적재일시	16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자료	자료적재일시	16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료	자료적재일시	16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	자료적재일시	14
한국고용원	고용보험자료 상실자	자료적재일시	14
한국고용원	고용보험자료 피보험자	자료적재일시	14

## 2 각종 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10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사업자등록번호	1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10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0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	사업자등록번호	10

### ○ 주민등록번호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30
국세청	법인사업자당해폐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30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자단위 가동	주민등록번호(대표자)	13
한국신용평가정보	인물개요	주민등록번호	13

### ○ 법인등록번호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민연금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13
국세청	법인사업자당해폐업	법인등록번호	13
국세청	법인세자료 표준대차대조표(일반)	법인등록번호	13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법인)	법인등록번호	13
국세청	전국사업체조사	법인등록번호	1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13
국토해양부	임대사업자등록대장	법인등록번호	20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법인등록번호	13
<b>대법원</b>	<b>법인등기자료</b>	<b>법인등록번호</b>	<b>14</b>

## ○ 보안식별번호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직장가입자	보안식별번호	22
국민연금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보안식별번호	22
국민연금	국민연금자료 사업장가입자	보안식별번호	22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서자료	보안식별번호	22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자료	보안식별번호	22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료	보안식별번호	22
<b>산업통상자원부</b>	<b>공장등록자료</b>	<b>보안식별번호</b>	<b>10</b>
국토해양부	임대사업자 대표자	보안식별번호	2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 사업장	보안식별번호	22

## ③ 각종 코드

## ○ 행정구역분류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사업장	행정구역분류코드	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행정구역분류코드	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 사업장	행정구역분류코드	7

## ○ 산업분류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사업장	산업분류코드	1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산업분류코드	1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 사업장	산업분류코드	10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업종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사업장	업종코드	6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업종코드	7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업종코드	7

○ 업체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한국신용평가	재무제표	업체코드	6
한국신용평가	감사법인	업체코드	6
한국신용평가	개발비	업체코드	6

○ 국가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한국고용원	고용보험자료 상실자	국가코드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사업장가입자	국가코드	10

○ 각종 주소 코드

- 도로명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도로명코드	12
국세청	법인사업자당해폐업	사업장-도로명코드	12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	공장대표주소-도로명코드	12

## - 시군구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토해양부	공통법정동 관리	시군구코드	5
국토해양부	임대사업자 대표자	시군구코드	5
국토해양부	임대사업자 물건지	시군구코드	5

## - 법정동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법정동코드	10
국세청	법인사업자당해폐업	본점_안전행정부 법정동코드	10
<b>국토해양부</b>	<b>공통법정동 관리</b>	<b>법정동코드</b>	<b>5</b>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	공장대표주소_법정동코드	10

## - 읍면동코드

관할기관	행정자료명	데이터명	길이
국세청	개인사업자당해폐업	읍면동일련번호	2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개인)	읍면동일련번호	2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법인)	읍면동일련번호	2

## □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문제점

- 연월일, 일시 등 동일한 성격의 항목이나 행정자료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예시)

일반적으로 연월일은 8자리로 표시하나

대법원 법원등기자료의 “회사성립연월일”은 10자리로,  
국세청 부가가치세자료의 “등록일자”는 14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자료의 “신청일자”는 12자리로 표시함

- 한 관련부처의 행정자료들 중 같은 항목임에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예시)  
동일한 “자료적재일시” 항목이  
국세청 행정자료 중  
법인사업자당해폐업 등에서는 14자리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료 등에서는 16자리로 표시됨

-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고유한 체계로 부여되는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예시)  
법원에서 부여하는 13자리인 법인등록번호를  
국토해양부의 임대사업자등록대장은 20자리로,  
대법원의 법인등기자료는 14자리로 표시함

-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각 부처별로 각각 다른 체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예시)  
법정동코드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코드(10자리)와 국토해양부의 코드(5자리)가 있음



### 3. 용어 정의 및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 용어 정의 및 분류 현황

##### ① 사업체 조직 형태

○ 용어의 통계적 정의

통계조사	용어	정의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사업체 여부 판단할 때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 없음)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산업분류	사업체가 수행하는 각종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5자리로 구성)

○ 각 조사별 사업체 조직 형태

통계조사	분류	개념
전국사업체조사	① 개인사업체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② 회사법인	- 「상법」상의 회사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 • 외국회사 :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국내 지사, 지정 등)
		-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p>③ 회 사 이 외 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 종교법인, 학술재단, NGO 등</li> <li>•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제10조</li> <li>• 사회복지법인</li> <li>• 의료법인</li> <li>• 특수법인</li> </ul>
	<p>④ 비법인단체</p>	<p>-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p>
	<p>⑤ 국가·지방 자치단체</p>	<p>- 공법인인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영조물) 등으로서 그 구성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시설 등</p> <p>- 국·공립의 학교와 병원 등 공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특별한 공적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인 공공시설(영조물 등)을 포함</p>
<p>광업제조업조사</p>	<p>① 개 인 사 업 체</p>	<p>-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p>
	<p>② 회 사 법 인</p>	<p>-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p>
	<p>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p>	<p>- 「상법」 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p>
<p>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p>	<p>① 개 인 사 업 체</p>	<p>-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p> <p>- 대리점이나 체인점 등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본사 직영·비직영(체인점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에 따라 「회사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구분될 수 있음에 유의</p>
	<p>② 회 사 법 인</p>	<p>-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함</p> <p>- 외국(미국 등)에 본사(점)가 있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지사(점)를 설치한 외국회사도 회사법인에 해당</p>
	<p>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p>	<p>-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조합 등</p>

	④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등(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 • 법인격의 유무는 법인등기 여부로 판단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용어의 법률적 정의

주요 개념	정 의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상법」 제168조)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상법」 제170조 및 제614조)

② 종사자 분류

○ 각 조사별 종사자 분류

통계조사	분류	개념
전국사업체 조사	①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②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③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으며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p>④ 임시 및 일용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li> <li>•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li> <li>•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li> <li>•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li> </ul>
	<p>⑤ 기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li> </ul>
<p><b>광업제조업 조사</b></p>	<p>① 상용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li> </ul>
	<p>② 임시 및 일 용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li> </ul>
	<p>③ 자영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li> </ul>
	<p>④ 무급가족종 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li> </ul>
	<p>⑤ 기타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사업체에서 지급하는 자(일정한 급여는 없음)</li> </ul>
	<p>⑥ 다른 사업 체로부터 받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일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자</li> </ul>
<p><b>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b></p>	<p>① 상용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 중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이 없으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li> </ul>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⑤ 기타 종사자	- 기본급 등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사업체에서 지급하는 자 • 개인등록사업자라 할지라도 지사, 영업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지사나 영업소 등의 기타종사자 - 기타 그 외 종사자

○ 용어의 법률적 정의

주요 개념	정 의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일용 근로자	- 법에 따라 그 정의가 다름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고용보험법」 제2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③ 건축물 분류

○ 주택(거처)의 분류

통계조사	분류	개념
인구주택 총조사	①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가구)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름 •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에 해당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⑥ 오피스텔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⑩ 기타	

## ○ 용어의 법률적 정의

주요 개념	정 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li> <li>• 단독주택</li> <li>•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i> </ul>
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주택법」 제2조)</li> <li>• 종류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li> </ul>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li> </ul>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li> </ul>
다가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li> <li>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li> <li>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li> </ul>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ul>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으로 쓰는 1개 동(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ul>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으로 쓰는 1개 동(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ul>
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ul>

#### □ 용어 정의 및 구분 문제점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사이에 용어의 정의, 분류 등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이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

(예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와 상이하며 무급가족 종사자 등은 행정자료에는 없으며 조사자료에만 존재함

- 행정자료 사이에 용어의 정의, 분류 등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자료 들을 연계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시)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고 소득세에 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봄

- 통계청 내의 각 조사 사이에 분류기준 등이 일정하지 않음

(예시)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사업체 조직 형태를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5가지로 분류하나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우, 사업체 조직 형태를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3가지로 분류함

### 4.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문제

#### □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기준·분류·용어 등의 불일치

- 행정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정자료 공유가 필요하고, 행정자료 작성 당시부터 행정목적 외에도 통계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료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나 분류, 용어 등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와 행정자료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상당수 발견됨

- 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계자료로 작성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행정자료로 작성되는 국세청의 업종분류가 상이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업종분류)	
85501	입시학원, 보습학원, 기타문리계학원	809005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기타문리계학원, 보습학원
85502	외국어학원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 종사자의 경우에도 통계청의 분류와 국세청의 분류기준이 상이함

통계청 및 국세청의 종사자 기준 현황

통계청	국세청(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근무기간 1년 이상)</li> <li>· 임시 및 일용근로자(근무기간 1년 미만)</li> <li>· 자영업자</li> <li>· 무급가족종사자</li> <li>· 기타종사자(캐디, 때밀이 등 실적급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3개월 이상)</li> <li>· *건설업 종사자는 1년 이상</li> <li>·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li> <li>· *건설업 종사자는 1년 미만</li> </ul>

- 행정구역의 경우에도 통계청의 항목정의와 안전행정부의 항목정의가 상이함

통계청 및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항목정의 현황

통계청	안전행정부(주민등록자료)
· 행정동(행정동코드) *통계조사 및 자료집계 최하 행정구역	· 법정동(법정동코드) *법정 동명칭

## II. 행정자료 표준화 방안

### 1. 통계청 내 항목 표준화 추진

#### □ 공통항목 표준화

- 공통항목 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각 통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따라 공통항목의 종류가 많지 않고 또한 항목을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경제통계와 사회통계로 구분하여 공통적 용어를 추출해 표준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예시)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통계조사의 경우 사업체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조직형태 등 사업체의 현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공통항목으로 하고 있음

#### □ 용어 개념의 표준화

- 통계청 내의 각 조사 사이에 분류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여 각 통계간의 비교가 어렵고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기본 개념을 법률 및 통계청 내의 여러 과가 협의를 통해 재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재설정하고 유지해야 할 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범정부적인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해서는 통계청 내의 용어 개념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코드의 표준화

- 조사항목을 코드 혹은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 그 코드값 및 숫자의 자릿수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 내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내의 통계조사자료 항목을 추출하여 각 항목의 코드값 등을 정리한 후 불일치하는 내용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며 타 부처에서 사용하는 코드값 등을 함께 고려함
-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 사업체, 부동산 등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조사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모집단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청은 산업, 직업, 무역, 질병사인, 목적별 지출에 관한 표준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목적분류, 기타(일반)분류를 가지고 있음

<통계청 통계분류 현황>

구분		종수	분류 내역
표준분류		5종	산업분류, 직업분류, 무역분류, 질병사인분류, 목적별 지출분류
특수목적 분류	산업	10종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환경,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 로봇산업, 저작권산업 분류
	직업	3종	전문기술인적자원, 정보통신기술(ICT)직업, 고용직업 분류
기타(일반)분류		6종	한국상품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이용조사활동, 교육, 종사상 지위, 한국행정구역 분류

- 원활한 범정부적 행정자료 코드의 표준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통계청 내에서도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 2. 범정부적 행정자료 항목 표준화 추진

### □ 용어 개념의 표준화

- 법령상의 개념이 있는 경우 해당 정의를 통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각 부처의 고시, 훈령, 지침 등의 정의를 통일화하여 정부 전체 업무의 통일성을 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용어의 정의는 행정기관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정의를 다른 부처에서도 수용하는 방법이 있음

#### < 참 고 조 문 >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행정DB”라 한다)”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행정DB를 구축·개선(고도화 포함)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표준담당부서”란 이 지침의 제·개정, 적용·점검 등 관리를 수행하는 안전행정부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운영관리자”란 소관 행정DB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하도록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행정DB를 이용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사업담당자”라 함은 행정DB의 구축 및 개선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의 공무원

을 말한다.

8. “행정DB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이 지침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을 저장·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를 말한다.
9. “데이터요소”란 엔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쉽, 테이블, 컬럼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10. “논리적 데이터요소”란 정보시스템에서 동작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되는 데이터요소로서 엔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쉽을 말한다.
11. “물리적 데이터요소”란 정보시스템에 동작이 되도록 논리적 데이터요소를 물리적으로 변환한 것으로 테이블, 컬럼,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2. “엔터티”란 동일한 속성 및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실체 또는 추상적인 것을 말한다.
13. “애트리뷰트”란 엔터티를 구성하는 속성을 말한다.
14. “릴레이션쉽”이란 두 엔터티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15. “테이블”이란 엔터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행과 열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16. “컬럼”이란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항목이름을 말한다.
17. “데이터도메인”이란 애트리뷰트 또는 컬럼의 허용되는 값 영역을 말한다.
18. “데이터베이스”란 일정한 구조에 따라 편성된 테이블의 집합을 말한다.
19. “행정표준용어”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 명사형 어휘를 행정DB 구축·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의하고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사전”이란 행정DB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정의하여 행정표준용어로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DB의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21. “행정표준용어사전”(부록 참조)이란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22.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별도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위치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행정DB품질”이란 이 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행정DB에 적용하는 규칙의 준수 정도 및 구축한 행정DB가 이 지침의 규칙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24. “품질지수”란 행정DB의 품질을 수치화한 결과이다.

- 범정부적 실무진단을 구성하여 기본적 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념을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용어 개념의 표준화는 각 부처 실무진들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함

#### □ 행정자료항목 코드의 표준화

- 1990년 10월부터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를 제정하여 현재 311종의 코드에 대해 표준코드를 제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부처에서는 고유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있음
  - 예를 들어,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는 7자리로 표시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의 법정동코드는 10자리이고 국토해양부의 법정동 코드는 5자리로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제정된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23호, 이하 “지침”이라고 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코드를 통일화할 필요가 있음

#### < 참 고 조 문 >

##### 「전자정부법」 제50조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표준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 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지침에서는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표준코드를 각 소관기관에서 정하고 있음

- 현재 311종의 행정표준코드를 지정하여 코드명, 소관기관, 소관부서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붙임1 참조)

(예시)

번호	코드명	소관기관	소관부서
1-1	중앙행정기관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1-2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1-3	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1-4	입법기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5	사법기관	대법원	정보화심의관
1-6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기획과 정보화담당관
1-7	공공기관(유통관련)	안전행정부	지식제도과
1-8	공공기관(행정정보공유관련)	안전행정부	공유체계구축과
2	법정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3	우편번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4	성별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번호	코드명	소관기관	소관부서
5	혈액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6	외국명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7	국제통화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8	산업분류	통계청	통계기준팀
9	직업분류	통계청	통계기준팀
10	국가자격면허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

- 소관기관이 해당 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관리유형	관리 방법	예시
전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소관기관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li> </ul>	일반
부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드의 성격 상, 부분별 소관기관(부서)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소관기관(부서)를 정할 수 있음</li> </ul>	기관 코드
공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기관(부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li> </ul>	직위 코드
위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기관(부서)가 최하위의 코드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 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 (하위 소관기관의 경우에도 재위임 가능)</li> <li>※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 소관기관은 하위소관기관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li> </ul>	기관 코드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규 정보화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업무 추진 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단,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도록 함
-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표준화를 이루게 되면 각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코드의 유사성, 공동이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업무의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제정을 하도록 함
  -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안전행정부에 표준화를 추진함
  - 필요한 경우 행정코드 제,개정 제안서(「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붙임3)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자료의 전산화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등록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항목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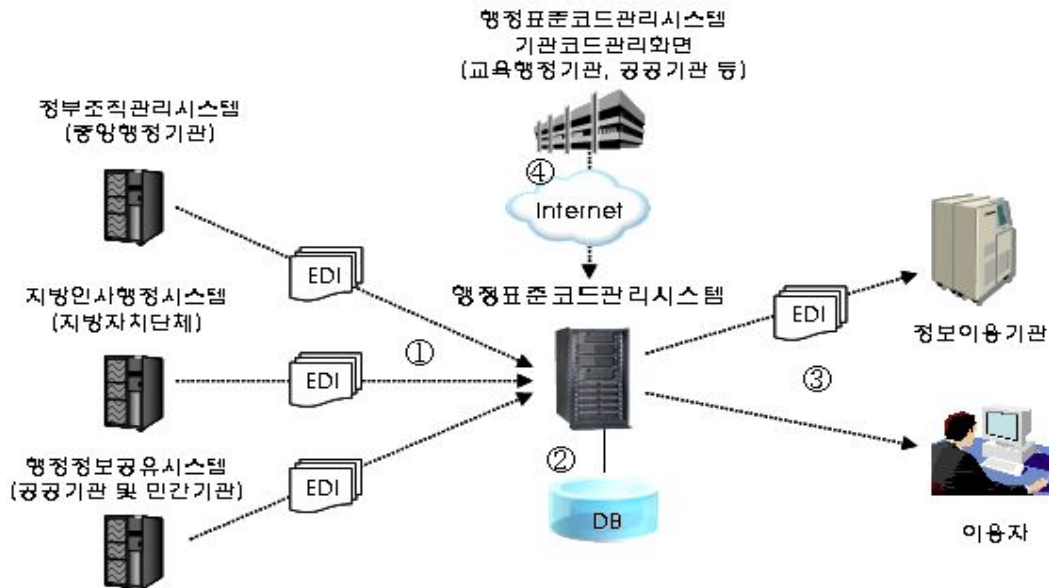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경과>**

- ▷'90. 10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 ▷'90. 10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 ▷'95. 12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제정(47종)
- ▷'00. 10 : 행정표준코드 체계개선(안) 확정·시행
  - 기관코드, 지역코드 등 47종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을 통해 제공
- ▷'04. 5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
- ▷'04. 12 : 행정표준코드확대 (211종)
- ▷'06. 2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표준화 요건 강화
- ▷'06. 12 : 행정표준코드 관리체계 개선 및 신규 행정표준코드 발굴 (24종)
- ▷'07. 8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및 행정표준코드 추가제정(총 232종)
- ▷'08. 3 :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개정(총 251종)
- ▷'08. 7 :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제정(총 276종)

## □ 컨트롤타워 마련

-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해 각 부처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정자료의 입수·이용을 통해 각 부처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행정자료의 생성을 막고 각 기관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모색될 수 있음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코드관리시스템(<http://www.code.go.kr>)에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음
- 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코드를 자동 반영하여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반영하며, 전자문서유통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문서유통담당자가 행정표준코드시스템에 기관코드 생성권한으로 코드를 생성함
- 자동 연계되어 있지 않은 소관기관(부서)의 기관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총괄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출처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 제공된 코드를 행정표준관리시스템의 DB에 반영하고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배포와 파일 다운로드로 코드를 제공함
- 행정표준코드와 다른 코드 간의 매핑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소관기관은 매핑정보의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함
-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와 매핑정보 사이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함

□ 표준화에의 협조의무 등

-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표준코드의 표준화에 적극 협조하고,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붙임11)
- 또한, 행정자료의 표준화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전 부서의 공통 목표임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임

## □ 서식 표준화

- 서식 표준화가 선행되면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으며, 서식 제정 방법 및 서식의 승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 참 고 조 문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법령서식 표준화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승인하는 서식을 통한 표준화를 꾀할 수 있음
- 안전행 정부가 서식의 승인할 때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표준화를 이룸
- 효율적인 서식 표준화를 위해 각 서식의 작성방법을 충실히 마련도록 하고, 기본항목의 작성방법의 통일화가 선행되도록 함
  - 예를 들어, 행정자료 법령서식 중 주소를 적는 경우, 도로명주소를 기입하는 경우와 지번주소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적 처리를 위한 자료연계 키 값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현재 서식 표준화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II. 행정자료 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

#### 1. 통계청 내의 기대효과

##### □ 통계조사 불응률 개선

- 통계조사의 불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sup>3)</sup> 조사대상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거나 통

3)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5년 불응률이 16.50%에서 2012년 20.07%까지 증가했으며, 2013년의 경우 19.92%로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의 불응률 증가는 조사대상자들의 사생활 노출기피 및 조사항목 과다로 인한 응답부담 과다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를 위해 조사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계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자료 이용을 들 수 있음

- 소득, 조세, 연금 및 보험료 등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통계조사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일정부분을 대체할 수 있음
- 행정자료 이용을 통해 일부항목을 조사에서 제외함에 따라 조사대상의 응답부담이 줄어들어 통계조사의 불응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문제 해결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정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준화가 선행적 요건임
- 행정자료의 공유를 위해 행정자료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행정목적과 통계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

□ 예상 비용편익

-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기 표준화를 위한 비용이 들 수 있으나 행정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꾸준히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면 비용편익이 있을 것임
- 현재 행정자료간 비매치분 및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비매치분을 수동연계하기 위한 인건비 등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단위 : 천원)

인구주택총조사	2012년	2013년
행정자료와 총조사자료간 비매치분 수동 연계 인력 비용	621,384	377,091

상가구는 소득 및 기타수입 37개, 소비지출 419개, 조세 등 기타 41개 등 총497개 항목에 이르는 자료를 기입해야 하는 등 조사응답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산업], 2013.11, 350~351면 참조).

(단위 : 천원)

인구주택총조사	2011년	2012년
행정자료간 비매치분 수동연계 인력 비용	729,433	88,675

- 위와 같이 눈에 보이는 항목 외에도 행정자료 분석 및 이용이 용이해져 통계청 전체적인 업무의 감소에 따른 비용편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DB 현행화를 통한 시의적절한 통계 작성

- 현재 일정 주기로 대상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통계는 공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DB를 현행화하고 조사 부담을 줄여 통계작성 주기를 축소할 수 있음
- 표준화된 행정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통계의 작성이 용이해 질 것임

#### □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기존 통계의 질 제고

-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증가됨에 따라 신규 행정통계의 개발이 용이해 질 수 있음
- 특히, 사업조직의 분류, 종사자 유형 등 기본적인 용어에 관해서는 개념과 분류를 명확히 하여 표준화하게 되면 각 조사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 국가적 기대효과

#### □ 국가적 비용편익

- 행정자료 항목의 개념이 통일되고 표준화되어 각 기관이 행정자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 이익임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단기적으로는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 □ 업무 효율성 및 연계성 증대

- 항목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동일한 형식과 개념으로 행정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처 사이의 업무 연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인을 피할 수 있음
- 행정자료 보유기관 사이의 협업 강화를 통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이 핵심인 “정부 3.0 시대”의 성공적 추진을 꾀할 수 있음

<b>참조</b>	<b>용어 표준화 방안</b>
-----------	------------------

#### □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해서는 행정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항목의 분류 또는 코드의 표준화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표준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 종사자, 주택과 같은 기본적 용어가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됨
- 용어의 개념은 분류의 표준화를 위한 전제가 되므로 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행정자료 표준화의 핵심적 부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용어 표준화는 행정자료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코드의 표준화보다 각 행정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됨
- 각 분야의 용어를 수집하고 주요 용어를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해당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행정기관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수집 및 목록화

- 각 분야와 관련된 행정자료, 법률, 정책, 통계 및 학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수집함
  - 관련 행정자료, 법률, 정책, 통계 및 학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용어를 선정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함
- 용어의 현황과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 혼동의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을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함
  - 실무가 및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표준화 대상 용어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각 분야별 용어 선정에 통일을 꾀함<sup>4)</sup>

□ 행정자료별 용어 개념의 비교 및 정리

- 표준화 대상 용어가 선정되면 선정된 각 용어들이 행정자료, 통계, 관련법령, 보고서, 학회지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함

(예시) “주택”의 개념의 사용실태 조사<sup>5)</sup>

정 의	출 처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 제2조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0조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	종합부동산

4) 이 과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본원칙,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국토연구원, 가구·주택·주거 부문 용어정리 및 표준화, 2008.7, 75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세법
주거용으로만 쓰여 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을 말한다.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셋째, 독립된 출입구.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2005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2)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 3)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 이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6 주거실태조사
주택은 토지 위에 불박이로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지역간의 유통매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주택은 이러한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이웃과 관련한 각종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주택문제가 지역성을 반영하며, 주택의 입지가 주택의 가치 및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화인 주거서비스 또한 '이사'라는 매우 높은 비용에서만 소비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재화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게 된다.	국토연구원
경제학적으로 토지를 필수적인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내구자본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일상생활에서의 주택은 '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지칭하는 바, 사전적 의미에서의 주택은 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위협과 사생활침해나 도난과 같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의미한다.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의 터전이며, 사회경제적 재생산과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정개발 연구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구 주택건설촉진법)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건축물 착공 통계조사 시행규칙)	주택산업 연구원

□ 용어 개념의 표준화

-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용어의 개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위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료 및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의를 객관적으로 설정함

-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사용할 용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개념에 대해 여러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원칙들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함<sup>6)</sup>
  - 투명성 : 용어는 그 정의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함
  - 일관성 : 해당 분야 개념체계에 상응하는 용어체계를 유지해야 함
  - 적합성 : 제안된 새 용어는 그 언어 공동체에게 친숙하게 통용되는 것이어야 함
  - 언어적 경제성 : 용어는 가능하면 간략해야 함
  - 파생력 : 파생어가 가능한 생산적인 용어 형성방식을 가능한 한 받아들여야 함
  - 언어학적 정확성 : 해당 언어의 단어 형태론이나 음운규칙에 관련된 규범에 따라야 함
  - 모국어에 대한 선호도 :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외국어보다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함
  - 용어 선택 : 여러 동의어가 있을 경우 한 용어를 우선어 또는 표준어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 □ 표준화된 용어의 이용

- 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명확성과 비교성이 우수한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용어의 표준화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용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용어사전을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

6) 국토연구원, 앞의 책, 19면 이하 참조

적극적 이용을 유도해야 함

### 제3절 품질관리

#### I. 품질관리의 문제

- 행정자료의 현황에 비추어 대폭적인 품질관리가 긴요함
-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법」에서도 품질관리 규정을 대폭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품질관리에서도 관련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료 품질관리

법률	근거 규정
신법	<p><b>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기법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여 통계작성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통계적 기법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과 제2항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⑥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 품질진단 그 밖에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통계법	<p><b>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b>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이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p>

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이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	<p><b>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b>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보유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품질인증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법은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행정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통계적 기법 처리 과정에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이 발견되면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품질관리의 정의 규정 보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행정부 최근 시행공문에 나타난 데이터품질의 정의를 참조함(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 먼저 통계청장이 품질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규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최근 시행공문에 나타난 개선계획을 고려하여 통계청장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개선계획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음)
- 공공기관의 장의 자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통계청장의 기술지원(안 제20조제3

항 및 제4항) : 통계청장의 품질기준과 품질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자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품질진단(안 제20조제5항) : 품질개선을 위하여 품질진단 실시권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므로 이를 반영함

- 안전행정부에서도 개선계획 수립 전에 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진단은 해당 공공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안전행정부가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둘 경우 중복 문제 등이 생기므로 통계청장의 품질진단은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II. 행정자료를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 행정체계 정비 필요

□ 기존 「통계법」은 현장조사방식의 통계행정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각종 총괄 조정권을 규정함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는 별도의 총괄 조정업무 규정 필요함

□ 현재 138종의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작성에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통계법」 제24조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향후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에 관한 법적근거로 매우 취약함

- 현장조사방식의 통계작성은 국민의 응답거부로 통계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절 등록센서스

### I. 등록센서스의 의의 및 필요성

#### 1. 의의

- “등록센서스”란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전통적인 센서스와 달리 개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와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를 일컫음
  - 신법상 “등록센서스”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 2. 필요성

- 최근 외부인 출입통제 주택의 증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사생활보호의식 강화로 인한 응답거부의 발생 등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단 면접조사의 어려움 내지 센서스 결과물의 정확성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응답부담이나 센서스 비용 경감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도 등록 센서스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II. 센서스 관련 국내 법령

### 1.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 제5조의3에서는 기본통계의 작성을 위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실시에 관해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2.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며,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 조사의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총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통계법 시행령」 참조)에 위임하고 있음

### 3. 검토

- 현행 「통계법」에서는 총조사의 실시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와도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센서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II. 등록센서스 관련 해외법령 정리

### 1. 핀란드

개 요	1970년 인구센서스부터 행정자료를 일부 이용하다 1990년 인구센서스는 전적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됨	
관련 법령	핀란드 통계법 제4조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일반 행정업무 수행 중에 구축된 자료와 고용인, 자영업자, 이업 및 재단의 일반적인 활동의 결과로 작성된 자료를 일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2. 덴마크

개 요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건물/거처등록을 1978년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1년에는 세계 최초로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가 실시됨	
관련 법령	덴마크 통계법 제1조제3호	제1조 1.통계의 중심기관으로 덴마크 통계청을 설립하여, 이 기관은 1)지방기관 또는 다른 통계부서와 협력하여, 사회적

		<p>여건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출판한다.</p> <p>2)지방자치체,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을 위하여 통계정보를 수집, 처리, 출판할 수 있다.</p> <p><b>3)일반대중이나 기업을 위하여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자료를 설계하고 이용하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b></p> <p>4)통계적 자문을 통하여 정부의 각종 소위원회나 위원회를 도울 수 있다.</p> <p>5)통계적 분석이나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p> <p>6)국제적 통계협력을 위한 주무기관이 된다.</p>
--	--	--

### 3. 싱가포르

개요	<p>- 싱가포르 센서스법에는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에서 행정자료의 연계, 통합, 통계작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 기관에서 획득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료의 공개 또는 공표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음</p> <p>-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최근의 2000 인구센서스에서 등록부 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인구 커머리지에 관한 개념도 상주 개념으로 변경하였음</p>	
관련 법령	<p>싱가포르 센서스법 제2조(해석)</p>	<p>제2조 (해석)이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p> <p>“센서스 직원”(censusofficer):제4조,제5조,제6조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p> <p><b><u>"주무관청"(competentauthority):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공직자 또는 법정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법률에 의하여 공직자 또는 법정기관이나 그 기관의 공직자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책임이 있는 사람</u></b></p> <p>“주택”(dwelling-housing):싱가포르 영토(선박을 포함)안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 건물, 가건물 또는 돌출물</p>

		<p>"조사표"(schedule): 센서스를 목적으로 하여 요구되는 특정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해진 양식의 조사표</p> <p>"총감독"(Superintendent): 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센서스의 총괄 감독</p>
--	--	--

#### 4. 대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은 2010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센서스법을 두고 있지는 않음</li> <li>- 2010년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실시에 있어서 통계법을 센서스 실시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행정자료의 연계, 결합을 통한 통계표의 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li> <li>- 즉, 대만이 전통적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여 새로운 센서스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대만 통계법 자체를 보면 법적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li> </ul>	
관련 법령	대만 통계법 제10조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	제10조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 중앙 주계부서는 필요한 경우, <u>기본 국세조사와 여타 센서스의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하기 위하여</u> 센서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주계부서는 또한 다른 정부기관과 임시 연락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전 항에서 명시된 통계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되거나 편찬되어서 아니 된다.

#### 5. 이스라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통계법은 통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y 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관리(chief registration 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 신분, 주소 등에 관한 센서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 제18조 (4)항 (c)는 2008년 등록센서스 실시는 물론이고, 인구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통센서스의 정확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조항이라고 판단됨</li> <li>- 특히, 이스라엘 통계법에 보장된 정보제출 명령서는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필요한 통계정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법령</p>	<p>이스라엘 통계법 제6조 센서스</p> <p>(1) 국무총리는 통계청장과 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스라엘 인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센서스를 국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2) "센서스 명령"(censusorder) 은 센서스 실시일자, 조사표에 포함되는 주제 영역, 센서스의 조사대상자, 조사표에 응답해야 할 대상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센서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시달할 수 있다.</p>
	<p>이스라엘 통계법 제17조</p> <p>제17조 (1) 이 시행령에 따른 개인의 답신 전체 또는 일부,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출판할 수 없다.</p> <p>(2) 이 시행령에 따른 수집된 정보나 개인의 답신 또는 질문, 제15조에 언급된 기록, 문서에 대한 응답내용에서 도출된 정보는 해당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p> <p>(3) 고용인 외의 어떤 사람도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개입답신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 (특정 조항의 적용에 대한 제한) (1978년 개정) (1) 제17조의 규정은 국가기관에만 해당되는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이 이미 출판되었거나, 일반대중이나 사정당국에 의한 점검을 목적으로 입수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4) 제17조 (1)-(2)항의 규정이 다음의 답신, 응답, 정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 사전에 서면으로 출판에 동의한 개인, 동업자,</p>

		<p>그러한 개인 또는 모든 동업자들의 답신, 응답, 정보</p> <p>(b) 법인, 이사회 또는 다른 지배단체 또는 지배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출판을 승인하는 결의서를 통과시킨 비법인의 답신이나 응답, 정보</p> <p><b>(c) 제17(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y 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관리(chief registration 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 신분, 주소 등에 관한 센서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b></p>
--	--	---

## 6. 터키

개요	<p>- 터키 통계청은 2011년 등록센서스 실시의 주무기관으로, 터키 통계법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다양한 용어를 직접 정의하고 있음</p> <p>- 가령, 개인자료 (persoanl data), 개체자료(individual data), 직접식별(direct identification), 간접식별(indirect identification)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p>	
관련 법령	<p>터키 통계법 제2조(정의)</p>	<p>제2조 (정의) 본 법의 시행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p>a)~m) 생략</p> <p>n) 자료: 표본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양적 또는 질적 정보 (quantitative or qualitative information)</p> <p>o) <b>개체자료</b>: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통계단위의 징과 함께 정의되는 자료</p> <p>p) <b>직접식별</b>: 이름, 주소, 또는 공식적으로 배정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유번호(identity number)를 이용하여, 통계단위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p> <p>r) <b>간접식별</b>: 직접식별에 포함된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통계단위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p> <p>s) <b>비밀자료(confidential data)</b>: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계단위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개인정</p>

		<p>보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테이블 형태로 배열된 개체자료 또는 자료</p> <p>t) 통계목적의 이용: 통계표 작성이나 통계분석이라는 배타적 목적으로 통계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p> <p>u) 배포: 형태나 이용 도구에 관계없이, 통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출하는 것</p>
--	--	--

### 7. 네덜란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국회는 1991년 센서스법을 폐기하고, 당시 센서스 실시 주무기관인 네덜란드 통계청이 더 이상 전통적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면책권한을 부여함</li> <li>- 네덜란드 통계청은 유럽연합 통계청은 물론 여타 국제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로 하고, 인구등록시스템에 기존 통계조사를 결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 Census)을 개발하였음</li> <li>-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통계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통계청 자체가 통계법 개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자료에 대한 수시 접근이 보장되어 있음</li> </ul>
관련 법령	-

### 8. 벨기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에는 별도의 센서스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센서스에서 인구등록 시스템과 대규모의 사회경제통계 표본조사를 결합한 부분적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였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에는 인구등록시스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 교육자료, 건축/주택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식의 가상센서스를 기획하고 있음</li> <li>- 벨기에 통계법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등록부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통계의 내용이나 빈도를 단순화기 위하여,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였음</li> <li>- 이러한 구상은 2011년 벨기에 통계청이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보장자료, 기업자료, 토지대장, 인구등록대장 등의 정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li> </ul>
<p>관련 법령</p>	<p style="text-align: center;">-</p>

## 9. 폴란드

<p>개 요</p>	<p>폴란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센서스를 실시하며, 전국수준의 공적장부 가령, 행정구역대장이나 사업체 대장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제25조, 제d항과 제j항)</p>	
<p>관련 법령</p>	<p>폴란드 통계법 제25조제1항</p>	<p>(1) 폴란드 통계청장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p> <p>(a) 통계정보 및 분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식통계 통계조사 실시계획 (안)을 작성하여, 통계평의회에 제출한다.</p> <p>(b) 통계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관련 방법론을 결정한다.</p> <p>(c) 통계자료를 수집, 수거, 일반화하며, 자료분석을 실시한다.</p> <p><b>(d) 모든 종류의 센서스를 실시한다.</b></p> <p>(e) 통계자료를 저장한다.</p> <p>(f) 주요범주의 분류기준, 명칭, 그리고 정의를 개발하고, 이들 범주와 해석방식의 일치도를 결정한다.</p> <p>(g) 주요 수치와 지표를 포함한 통계정보를 입수하여 배포한다.</p> <p>(h) 장래인구추계와 경제사회에 대한 예측통계를 작</p>



	<p>성하여 공표한다.</p> <p>(i) 통계조사 실시계획에 구체화된 범위, 일자, 형태로 통계정보를 대통령, 국회, 국가행정기관, 최고관리조정실(NIK, Supreme Chamber of Control), 폴란드 중앙은행, 지방정부 부서 및 여타 정부기관에 제출한다.</p> <p><b>(j) 전국수준의 공적장부 가령, 사업체대장, 행정구역대장을 관리한다.</b></p> <p>(k) 폴란드 정부가 국제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사업을 진행한다.</p> <p>(l) 국가 간 통계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p> <p>(m) 폴란드 정부가 국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출한다.</p> <p>(n) 통계관련 국제조직이나 지역조직 또는 다른 나라의 통계청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p> <p>(o) 통계조사 방법론, 분류기준, 수리 및 전산방법의 통계학 응용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한다.</p> <p>(p) 통계학 지식의 진흥에 기여한다</p>
--	---

## 10. 슬로베니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베니아 통계청은 2010년에 행정자료를 100% 이용하는 센서스를 실시하기 전에, 2002년에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행정자료에 없는 조사항목은 표본조사에 의하여 보완하는 센서스 방법론을 채택하였음</li> <li>- 이를 위하여 2002년 공표한 인구,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센서스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에는, 센서스 실시에 관련된 각종 개념의 정의와 인구, 가구, 주택 분야의 조사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li> <li>- 슬로베니아 2002년 센서스법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행정자료의 이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부, 내무부, 환경/공간계획부와 지방자치 행정청, 법무부, 교육/스포츠부, 노동청, 연금장애보험기구, 건강보험기구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센서스 통계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li> </ul>
	제11조 (행정자료의 이용) 센서스 실시에 필요한

<p>관련 법령</p>	<p>슬로베니아 2002년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p>	<p>사람, 가구, 주택, 건축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기존 공적 기록이나 여타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p> <p><b>제12조 (행정자료 관리자의 책임)</b> (1) 데이터베이스 보수와 보관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정해진 기한 안에,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p> <p><b>제13조 (보건부와 사회보장청의 행정자료)</b> (1) 보건부(Health Ministry),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p> <p>(내무부의 행정자료) (2) 내무부(Interior Ministry)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공적 등록부가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환경, 공간계획부와 지방자치 행정청의 행정자료) (3) 환경, 공간계획부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Ministry)와 지방자치 행정청은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법무부의 행정자료) (4) 법무부(Justice Ministry)는 수감자(收監者)에 관한 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p> <p>(교육·스포츠부의 행정자료) (5) 교육·스포츠부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고등학교 기숙사나 학생 호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외무부의 행정자료) (6) 외무부(Foreign Ministry)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에서 그들과 동거하는 슬로베니아 국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노동청의 행정자료) (7) 슬로베니아 노동청</p>
------------------	--	---

		<p>(Employment Servic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실업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연금장애보험기구의 행정자료) (8) 연금장애보험기구(Institute for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금 및 여타 재정지원 수혜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건강보험기구의 행정자료) (9) 건강보험기구(Health Insurance Institut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	--	--

### 11.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개 요	-	
관련 법령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제4조(자료원)	<p>1. 회원국은 센서스 통계를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a) 전통적 센서스</p> <p>(b) 등록센서스</p> <p>(c) 전통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p> <p>(d)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p> <p>(e) 등록센서스와 전통센서스의 조합</p> <p>(f) 등록센서스, 표본조사, 전통센서스의 조합</p> <p>(g) 순환표본을 이용한 적절한 표본조사(순환센서스)</p>

### 12. 미국

개 요	-	
관련 법령	미국 센서스법 제6조	<p>제6조(다른 연방정부 및 기관의 정보; 다른 정부 및 개인의 자료원에서 수집된 자료):</p> <p>(a) 상무부장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p>

	<p>관련이 있는 정보수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정부 및 기관, 연방정부 사무소, 콜롬비아 주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p> <p>(b) 상무부장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서스 및 통계조사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보고서, 복사물, 개인 또는 기관, 주, 군, 시, 하부기관(동) 등의 기관의 자료를 구매하거나 입수하여야 한다.</p> <p>(c) 상무부장관은 필요로 하는 통계의 품질 및 범위, 시의성, 형식의 일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대신에 6조 (a), (b)호에 언급된 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p>
--	---

### 13. 독일

개 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인구센서스를 1987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를 계획하고 있음
관련 법령	-

### 14. 노르웨이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에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센서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자료를 이용함</li> <li>- 2010년에는 행정 자료만을 이용한 센서스를 계획함</li> </ul>
관련 법령	-

15. 스위스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2010년 12월에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표본조사를 통해 행정자료를 보완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여, 연방통계법과 센서스법을 다년간에 걸쳐서 정비하였음</li> <li>- 스위스 연방 센서스법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자료수집은 가능한 한, 공적 등록부(official register)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적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를 수집 하도록 하고 있음</li> <li>- 센서스법 제4조는 스위스 연방 센서스는 인구대장과 건축물/주택대장 등의 공적등록부와 추출표본에 대한 보완적인 조사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조사방식, 개인식별번호, 품질보장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li> </ul>	
<p>관련 법령</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1조</p>	<p>제1조 (원칙) (1) 스위스의 인구구조와 사회발전에 관한 자료를 연차적으로 또는 그보다 짧은 시점을 주기로 하여 수집한다. (2)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변동 b. 가족, 가구, 주택상태 c. 노동 및 경제활동 d. 건강 및 사회적 변수 e. 교육 및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f. 인구이동 g. 언어, 종교, 문화 h. 교통 및 환경 i. 건물, 주택 및 통근 또는 통학의 장소 (3) 자료 수집은 가능한 한 공적 등록부(official register)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공적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에 의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3) 보통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로 불리며, 스위스 연방정부의 7명으로 구성된 집행기구로서, 이들은 집단적으로 국가원수로 기능한다. 연방평의회 전체는 스위스 연방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각 평의원은 7개의 집행부(환경.운수.에너지.통신, 외교 재무, 경제, 법무.경찰, 국방.시민보호.스포츠,</p>

		<p>내무행정)를 관장하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임무를 순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고 있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4조</p>	<p>제4조 (데이터 제공의 원칙) (1) 연방이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그 자료가 연방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이 법에 지정된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연방 행정자료를 말함)에 대해서는, 연방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수집 (직접조사, 간접조사 또는 관찰과 측량에 의한 조사)을 실시하지 말아야 마땅하다.</p> <p>(2) 연방통계에 필요한 자료가 제3자, 곧 주 자치체, 기초자치체 또는 공법상의 여타 법인 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이 소장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간접조사).</p> <p>(3)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배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인 (natural person)과 법인(juristic person)에 대한 조사는 문항의 수나 종류가 필요한 만큼 최소화(necessary minimum) 하여야 한다.</p> <p>(4)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대상자, 조사기관을 공지하여야 한다.</p> <p>(5)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공법상의 단체, 사무소과 여타 법인은 연방통계청에 보상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5조</p>	<p>제5조 (공적 등록부의 조사) (1) 공적 등록부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 가구통계 및 건축물통계, 주택통계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달방식 또는 자료기억매체(data carrier) 방식으로 전달된 다음의 공적 등록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a. 연방, 주 자치체, 기초자치체의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p> <p>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p> <p>(2) 자료의 전달은 다음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p> <p>a. 2006년 6월 24일의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p> <p>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규정</p>

		<p>(3) 연방, 주자치체, 기초자치체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이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를 관리하는 부서는 표준화된 등록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그 자료를 정해진 마감 일자에 송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일체의 상세사항에 대한 지침의 공표를 위임할 수 있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12조</p>	<p>제12조 (자료관리, 자료보호, 비밀준수 조항) (1) 스위스 연방통계청이 센서스 표준 프로그램의 자료를 관리한다.  (2) 추가적 주문에 의한 자료는 연방통계청과 발주를 한 주 자치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3) 공적 등록부와 표본조사에서 인구센서스의 자료가 작성되면, 그 자료는 익명화 조치를 하고,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er)는 삭제한다.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명부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 인구센서스의 자료는 사적인 아닌 목적, 특히 학술연구, 정책기획,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센서스의 최종결과는 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공표가 가능하다.  (5)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자료보호, 특히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조사대상자의 권리, 자료획득 후 조사표의 폐기방식에 상세한 규정을 공표한다.  (6) 인구센서스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은 형법 제320조(직업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형사 처분 조항)에 의거하여 직업상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다.</p>

## 16. 검토

- 위의 해외 입법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센서스의 실시 및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등록센서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등록센서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통계법 상에 등록센서스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과 센서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

## IV. 등록센서스의 도입 및 법적근거의 마련

### 1. 등록센서스의 법적근거 마련 방식

- 위의 검토를 통하여 등록센서스의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센서스의 법적근거 마련 방식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센서스가 행정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총조사와 차이가 있으나,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총조사라는 측면에서는 「통계법」 상에 등록센서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통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등록센서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통계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음
  - 「통계법」은 본래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현행 「통계법」의 입법체계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5조)
제2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제5조의2 내지 제14조)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제15조 내지 제17조)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제18조 내지 제31조)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제32조 내지 제34조)
제6장 보칙(제35조 내지 제38조)
제7장 벌칙(제39조 내지 제42조)

- 위의 입법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일반법으로서(「통계법」 제5조 참조),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에 관해서는 단 몇 개의 조문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등록센서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행정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요구와 등록센서스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해 볼 때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등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따라서 현행 「통계법」 과 같이 자료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정해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는 등록센서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음
  - 또한, 등록센서스와 관련해서는 여타의 법률에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에, 등록센서스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대한 내용을 법률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통계법」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통계법」 이 갖는 본래의 취지와 체계가 어긋나게 됨
- 이에 따라 등록센서스의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함

## 2. 신법과의 관계

- 신법에서는 등록센서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등록센서스의 실시주기, 조사기준, 방법 등 등록센서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신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자료 이용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 적합한 법률이라고 여겨짐
- 다만, 등록센서스의 도입은 센서스 패러다임의 대변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방대하고 세부적이며, 나아가 각 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거절 등과 같은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볼 때 현재는 등록센서스에 관한 기본적 법률 규정만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등록센서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센서스의 대상, 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함
- 등록센서스의 법적 근거를 신법에 위치시킴으로서 행정자료와 관련된 일정 내용은 신법 내의 다른 규정 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나, 등록센서스의 목적, 구성절차, 담당부서 및 관련 위원회 등과 같은 내용은 후의 입법과제로 남겨 둠

---

## 제5장

# 입법제안 및 해설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안) 및 조문별 설명

---



## 제5장 입법제안 및 해설

### 제1절 서설

#### I. 제명 결정

##### □ 제명 대안

- 행정자료의 통계적 이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통계작성 선진화를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통계작성 선진화법

##### □ 제명 기준

- 제명에는 법률 제정목적과 핵심내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만 제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제정목적은 배제하여도 무방함
- 법안의 핵심내용인 행정자료 이용 국가통계작성을 나타내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 등은 부차적인 사항이므로 제명에 나타내지 않아도 됨

##### □ 제명 이유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현장조사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계제도 개선에 있으므로, 법률안 제명으로 대안보다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잘 표현하고 있음
- 대안 중 “행정자료의 통계적 이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가 이 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부적당함

- 나머지 두 안에서 “선진화”라는 표현은 법 제명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임

#### □ 제명 예시

- 원래는 활용이라는 용어를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의 법률에서 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용이란 용어로 교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03개 법령에 “이용”이란 단어 사용 중

#### □ 해외입법사례

- 독일경제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 법안서명일: 2010년 11월 4일

※ 전문(全文) 인용: “2010년 11월 4일 행정자료사용법 (연방법률관보(BGBl) I 1480 페이지)”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법률제명이 너무 길어 최근 법제처 방침에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음
- “활용”이란 단어 대신 “이용”이란 단어가 타당함
  - 실질적으로 현행 법률에서 “활용”이란 단어를 사용한 법률 제명이 적음 ⇒ 반영

## II. 구성 체계

□ 총 7장 52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됨

□ 장별 구성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통계청장 등의 책무)

제6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

제7조(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제8조(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 ○ 제2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협력

#### － 제1절 행정자료의 제공

제9조(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

제10조(행정자료의 제공요청)

제11조(행정자료의 제공)

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제13조(행정자료의 긴급제공)

제14조(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

#### － 제2절 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조

제15조(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

제16조(표준분류 사용)

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제18조(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19조(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
- 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
- 제21조(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 제22조(기관간 협조)

○ 제3장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

- 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 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
- 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
- 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
- 제27조(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
- 제28조(행정자료의 파기)
- 제29조(비밀보호)
- 제30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
- 제31조(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
- 제3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

○ 제4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 제1절 행정자료의 용도 및 통계적 처리

- 제33조(행정자료의 용도)
- 제34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 제35조(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
- 제36조(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 제2절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
- 제38조(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
- 제39조(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제3절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및 이용

제40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제4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제4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 제4절 등록센서스 실시

제43조(등록센서스의 대상)

제44조(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제4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

○ 제5장 보칙

제46조(비밀준수)

제47조(금지행위)

제48조(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제등록센서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2절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안) 및 조문별 설명

### I. 제1장 총칙

####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정이유

- 모든 법률에 규정되는 것으로 법률제정 필요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목적을 보면 본 법률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통계작성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목적을 작성하였음
- 목적조문에는 법안의 핵심내용을 압축하여 담고 입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됨
  - 입법목적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목적 외에 국민경제발전 등 거시적 목적을 함께 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국가통계작성이라는 매우 실용적 목적의 법률이므로 그러한 거시적 목적은 배제함
  - 법안의 내용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며, 입법목적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통계생산시스템 구축임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응답부담이란 용어가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예상됨
- 그러나 입법목적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이고 행정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이 드러나야 함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란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2.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문서·대장 및 도면으로서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 이용”이란 국가통계 작성에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계등록부”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기준에 맞게 통계적 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
5.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시스템(이하 “통계등록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제37조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행정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 그 밖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통계적 처리”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의 비어있는 항목의 보완·대체, 행정자료의 연계·결합, 행정자료의 집계·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료처리 행위를 말한다.
8. “등록센서스”란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식별번호”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 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번호
  - 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10. “대체번호”란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후 통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11. “행정자료 표준화”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및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연계된 다른 행정자료간의 상호 결합 분석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관리”란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통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총괄적인 설명

- 같은 용어가 다른 법령에서의 용례(개념 및 적용범위 등)와 서로 다를 경우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그리고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용어정의를 하였음
- 통계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사항은 「통계법」에서 정의하고, 이 법 정의 규정에서는 이 법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만 정의하며 그 밖의 통계 관련 정의는 「통계법」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통계법」에서도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바,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이 법에서는 “행정자료 보유 공공기관”(예시) 등으로 하여 「통계법」과는 다르게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

#### □ 제정이유

- 법률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

## □ 제정내용

- 국가통계, 행정자료, 공공기관,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시스템, 행정자료 이용, 통계등록부,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통계적 처리, 등록센서스, 대체번호, 행정자료 표준화, 품질관리, 식별번호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정의 규정의 일부 내용은 「통계법」 과 중복되고 그 정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법」 의 관련조항을 준치할 별도의 필요성 때문에 준치하지만 이 법률에서는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여 내용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통계법」 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다만, 「통계법」 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며 굳이 준치한다면 「통계법」 의 해당 용어도 이 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통계”란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 제정이유

- 법률 제명에서 “국가통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통계에 대한 정의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국가통계의 대상을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한정함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 국가승인통계 현황('13. 10. 1. 기준)

- (작성기관별) 전체 916종의 승인통계 중 통계청은 58종(6.3%), 통계청 외 중앙행정기관이 284종(31%), 지자체 411종(44.9%)의 통계 작성
- (작성방법별) 조사통계 402종(43.8%), 보고통계 443종(48.4%), 가공통계 71종(7.8%)임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 기관, 종)

	작성기관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기관수	통계수	지정	일반	조사 통계	보고 통계	가공 통계
계	387	<b>916</b>	94	822	<b>402</b>	443	71
통계청	1	58	41	17	<b>43</b>	2	13
통계청 외 중앙행정기관	40	284	17	267	<b>133</b>	138	13
지방자치단체	261	411	17	394	126	259	26
기타 통계작성 지정기관	85	163	19	144	100	44	19

2.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문서·대장 및 도면으로서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정이유

- 본 법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통계자료와 구분이 필요함
- ※ 법률에 헌법기관 행정자료까지 정의한 것은 신법이 유일
-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개념에 다소 오해 소지가 있어 그 유형의 배열순서를 바꿈
- 「통계법」 상의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행정자료는 통계자료

의 전단계 자료에 해당하고 「통계법」 상 통계자료의 제공 등 그 취급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행정자료에서 통계자료는 제외함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통계법」 제3조제7호의 “행정자료” 용어 정의와 중복되므로 표현을 통일하고 「통계법」 제24조 삭제 여부 등에 따라 용어 정의 규정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검토하자는 주장 ⇒ 위 총괄적인 설명 참조
- “행정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통계법」 과 이 법률이 유일한 바,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 등과는 개념 혼선이 있어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주장이 있지만 「통계법」 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각 법률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용어를 달리 할 수 있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3. "행정자료 이용"이란 국가통계 작성에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를 기존 통계조사항목의 대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전에는 행정자료 활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법률에서 보다 많이 나오는 이용이란 용어로 대체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에는 신규통계 작성 외에 기존 통계의 조사항목 대체, 검증 보완, 총조사 등 신법에서 구상하는 통계등록부시스템과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구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함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당초에는 행정자료 이용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 "행정자료 이용"이란 새로운 통계의 작성, 기존 통계조사 항목의 대체와 검증·보완, 총조사, 통계등록부시스템 및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등에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행정자료 이용의 세부내용으로 열거된 항목들이 서로 대등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안과 같이 수정함. 즉 총조사와 통계등록부시스템,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은 다른 내용들과 중복 또는 불균형의 문제 발생 ⇒ 총조사와 등록부시스템, 모집단 등은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명시한 것으로 중복 또는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논란 소지 제거를 위하여 수정

※ 동어반복적 정의규정이라는 지적 소지가 있음

4. “통계등록부”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기준에 맞게 통계적 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

#### □ 제정이유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민감한 행정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제한된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필요
-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 중에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 외에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이용승인을 얻은 기관의 소속 직원들도 포함시킴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아래 설명 참조

5.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시스템(이하 “통계등록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제37조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 □ 통계등록부 및 통계등록부시스템

-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안문제 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었고 그에 따라 행정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는데 신법에서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활성화하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갖춘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청 소속 직원들과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보안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가운데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모색하려는 것임

- 「통계법」에도 이미 통계정보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법의 통계등록부시스템은 민감한 행정자료로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방된 통계정보시스템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장치가 대폭 보강된 시스템임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이란 행정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 그 밖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정이유

- 「통계법」 상의 공공기관의 포괄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
- 공공기관은 행정자료를 생산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통계청 등 통계작성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인바, 「통계법」 상의 공공기관의 범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정자료를 보유한 법원행정처 등 헌법기관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시

켜 규정하도록 함. 헌법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한 법률도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다른 헌법기관도 열거하였는데 법원행정처 외의 기관들은 제외시켜도 큰 지장은 없지만 헌법기관 중 법원만 명시하기가 어려워 열거한 것임

- 위 안 중 사목에서는 대규모 기숙사시설을 가진 기업 등 행정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상정할 수 있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범위가 「통계법」 과 신법 간에 차이가 있어 「통계법」 에서 공공기관의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 이 법에서 해야 할 것임
- 법원행정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 소속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자료요청을 하려면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행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연혁적 이유에서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기관 간 업무협조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본질을 오해한 피상적 주장에 불과

7. “통계적 처리”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의 비어있는 항목의 보완·대체, 행정자료의 연계·결합, 행정자료의 집계·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료처리 행위를 말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자료 등 여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서로 연계하는 통계적 처리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용어 정의 요구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통계작성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할 위한 조사표 설계 연구가 필요
- 통계적 처리와 행정자료 이용과의 용어 구분이 어렵고 일부 조항은 행정자료 이용이란 개념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지적 ⇒ 기술적 내용은 추후 검토 필요/위에서 본 것과 같은 통계적 처리의 개념설정 필요에 비추어 구분은 확실하다고 봄

8. “등록센서스”란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정이유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에는 총조사가 정의되어 있는데 행정자료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통계법」 상의 총조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 정의로서 행정자료 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행정자료와 통계등록부시스템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조사(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약 20%)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나타낸 것임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식별번호”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 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번호
- 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 제정이유

- 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고유식별정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점이 있지만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식별번호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의 경우에는 동법의 대부분을 적용 배제하여 주고 있음
- 그러나 통계작성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중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 표준화를 통해 식별번호 부여를 요구할 경우 예산 소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많음 ⇒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안 추진 필요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10. “대체번호”란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후 통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작성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식별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함
- 대체번호도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그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의 연계 제한함

11. “행정자료 표준화”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및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연계된 다른 행정자료간의 상호 결합 분석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는 각 기관에서 자신의 고유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생산·수집·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이용·처리함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이나 조사방식 등에서 용어, 정의, 분류, 식별번호 등 통계적 기준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음
  -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이나 행정자료 기반 총조사 등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항목간의 일반화가 필요
  - 이러한 점을 미리 감안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행정자료를 생산·수집·관리할 때 통계작성에 보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 아래 통일성을 확보
  - 다른 행정분야에서도 이미 분야별로 광범위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확보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여 신법에서 규정하게 된 것임
- ※ 「기상관측표준화법」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 법률임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므로 부처 협의에서 난관이 예상됨
  - 입법과정에서 선언적인 표준화 규정을 하고 시간을 두고 표준화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
- 「전자정부법」에도 표준화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법상의 표준화와는 상충될 여지가 없으며, 기타 개별 법률에서의 표준화 또한 개별 법률상에 한정된 것으로서 신법상의 표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표준화에 관한 정의 규정이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었다는 점 ⇒ 통계작성에 필요한 표준화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행정자료 이용 촉진에 필수적 요소이고 「통계법」상 표준분류 및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 주소의 사용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

□ 관련 국내 입법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 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1.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2.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관련 외국 입법례

- “표준화” 관련 해외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대만 통계법	제11조(통계작성의 표준화)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언급된 특수목적의 통계를 제외하고는, 통계의 주제나 단위, 통계의 형식, 통계의 수집 및 편찬 방법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스위스 주민등록부와 기타 공식 등록부의 표준화에 대한 연방법	등록부 표준화법/RHA

12. “품질관리”란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 제정이유

- 품질관리도 표준화와 같은 취지로서 상호연계성 등은 표준화와 품질관리 양쪽 모두에 해당되고 최신성·정확성 등은 품질관리에 주로 해당하는 요소
  - 과거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현장조사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행정자료의 이용이 불가피해지고 현장조사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
  -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정확한 통계작성과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품질관리가 필요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표준화는 사전 품질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품질관리와 사후품질관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움 ⇒ 표준화와 품질관리는 이미 기존 법령에서 각각으로 정착된 개념이므로 이 법률안에서도 그러한 구분에 따르는 것이 이해하기 쉬움
- 품질관리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통계청장의 업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 개별법에 규정된 품질관리는 그 법의 입장에서 본 품질관리이고 통계작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므로 이 법에는 통계청장이 총괄적인 지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도 그 지침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통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정이유

- 「통계법」은 통계작성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용어정의에서도 당연히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 □ 시행령

- 신법 제2조제1항제6호사목은 “그 밖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정할 기관이 없음(한전은 공사로서 특수법인, 여러 협회들도 대부분 특수법인임)
-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2조(공공기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0000를 말한다.



- 신법 제2조제9호아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정할 사항이 없음
-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2조(식별번호)** 법 제2조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0000를 말한다.

### 3.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하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 중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계청과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을 명시하여 대상을 확정함
-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통계작성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실적은 미미하였고 통계청의 경우에도 법원 등의 법적 근거 요구가 이어지고 안정적·지속적 행정자료 제공이 확실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신법에서는 통계청의 경우에는 등록센서스 등의 필요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강화하고 누락된 기관들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청장이 구축하고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기관이 그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자료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 기대효과

- 종전에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 관련 조항으로는 통계청 외의 이용성과가 저조하였는데 앞으로는 통계등록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보안문제 등의 부담도 덜면서 통계적 처리를 이용하여 통계작성기관들이 널리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지원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자 제공 등에 해당하게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통계작성을 위하여서는 이미 동법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시켜 놓았으므로 동법과의 충돌은 문제될 수 없음
-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은 행정자료의 재제공에 해당하여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제공제한을 규정한 해당 법률과의 상충이 문제될 수 있지만 통계등록부시스템상의 모집단을 활용하려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은 원래의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 관련 조항의 존치문제
  - 「통계법」 제24조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존치실익은 적고 또한 정책적으로 행정자료제공기관이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업무상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신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불편보다는 오히려 통계청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통계작성기관도 유리하고 공공기관도 통계청만을 상대하면 되므로 편리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

##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계법」을 적용한다.

## □ 제정이유

- 신법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 상의 행정자료 이용상의 한계 내지 제약을 보완·강화하였기에 행정자료 이용에 관하여 신법과 「통계법」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통계법」이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고 신법은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한편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각의 행정자료 이용에 대하여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승인이나 협의 등이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계법」 제24조의 제공의무조항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신법 제10조제2항에서 일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 신법은 기존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는 해당 조항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이 조문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함

## □ 기대효과

- 신법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국가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지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여 신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타법과의 관계

- 타법에 대한 적용배제는 법률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항임
- 실제로는 「통계법」과의 관계에서 신법이 특별법임은 당연하고 집행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으며 다른 행정자료 생산 관리 관련 법률과의 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제10조제2항과 중복이 아닌지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게 되면 본문의 다른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규정함이 일반적임

- 법령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 즉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이 제정법안은 기본법으로서의 「통계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통계법」 과의 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자료 이용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머지 통계관련 일반사항은 「통계법」 에 의하게 되고 이 점에서 「통계법」 이 일반법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음(「통계법」 제24조 등을 존치할 경우 동조와 신법간에도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신법이 우선 적용되어 통계청장의 행정자료 이용은 대부분 신법에 의하게 되고 「통계법」 제24조 등은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정책적으로 「통계법」 상의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관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통계작성 관련사항에 대하여서는 동법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기에 문제될 것이 없고 신법에서는 그와 별도로 스스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과 관련된 논란은 통계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이 법은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일반적 문구로서 과격한 조항이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대로 주민등록법 등 행정자료 제공을 저해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효성이 있는 조항임

#### □ 관련 국내 입법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관련 외국 입법례

○ 외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제의 사례

구분	내용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국가주권, 국가안보,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위한 경우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순수하게 사적이고 가사목적의 활동을 위한 경우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의 경우 ·형사법 영역의 국가활동(수사 등) ·보도 목적, 문학·예술·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
독일 「연방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오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영역에 속하는 경우(제3조제3항) ·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침해 방지, 형사상·행정상 집행을 위한 경우(제14조제2항) ·계약목적, 정보주체의 중요한 법적 이익, 광고·시장조사· 여론조사, 학문 연구, 과학적 연구(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기타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법적 이익 또는 공익보호, 정치·철학·종교 또는 노동조합 목적(제28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보도 목적(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저술활동 목적(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대학 기타 학술연구 단체, 기관 및 구성원) ·종교활동 목적(종교단체) ·정치활동 목적(정치단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개인적·가정적 목적, 언론·예술·문학·목적(제4조제2항) ·법률 위반조사, 개인의 생명·건강·안전보호, <u>통계·학술조사, 공공이용이 가능하고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7조제2항)</u> ·법정 변호사 및 사무 변호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부채회수의 목적, 법원의 필요, 법적 권한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제7조제3항)
영국 「정보보호법」 (제28조~제36조 등)	·순수한 사적 목적(개인 자신, 가족, 가사 등)을 위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범죄 방지·수사·검거 및 조세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다른 법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익을 위한 감시기관(공정거래 등)의 규제활동목적 ·언론·예술·문학·활동 목적의 경우 <u>연구·역사·통계 목적의 활동인 경우</u> ·법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인 경우 ·군대, 법률 소송, 법관 임명 및 훈장 수여 등

## 5. 제5조 통계청장 등의 책무

**제5조(통계청장 등의 책무)** ① 통계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그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과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통계작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장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며 「통계법」 상의 통계청장의 책무와는 구별되도록 규정함

### □ 기대효과

- 통계등록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놓인 통계청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 관련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자료 제공 외에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 상의 통계청장의 책무조항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은 통계행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신법에서는 이에 관한 통계청장의 책무를 강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제6조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

**제6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 ① 행정자료 이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행정자료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분쟁의 조정
7.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민간인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다. 행정자료 이용 및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작성기관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 문제되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인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행정자료 이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정자료 이용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점에 있어 기존의 국가통계위원회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정부의 위원회 증설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따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자료 제공 및 표준화 품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 등 통계작성기관과 행정자료 제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통계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주로 통계작성기관과 관련된 구성으로서 중복설치는 아님
- 현재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데 만약 신법에 의한 별도 위원회 신설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무산된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에 행정자료 이용기관을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거 추가하고 행정자료이용 분과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자료 이용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임

- \* 국가통계위원회는 개최빈도가 높지 않은 반면 신법상의 위원회는 잦은 개최가 예상되고 또한 안건의 성격이나 관련기관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각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임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

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 2. 한국은행총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계청장이 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행령

- 신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별히 규정할 사항이 없음

**제2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이란 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통계청장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⑧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7. 제7조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제7조(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 2.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 3. 행정자료 이용의 구체적 방법과 이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 4.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5.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6.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행정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통계법」에서는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신법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임

#### □ 기대효과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별도로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운영함으로써 이 분야의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기본계획의 수립은 통계청장이 담당하되, 공공기관(제2조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계작성에 이용되는 행정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예컨대 법제처 같은 기관은 사전협의 불필요)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중요사항(군이 법령에서 그 범위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의 변경에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 상의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서로 관련되는 점은 있지만 중복되는 계획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시행계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 ⇨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시행계획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이 업무효율을 기하는데 유리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기본계획 강제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 ⇨ 일반적인 입법례에 벗어나는 것이며 행정계획들은 나름대로의 강제성이 있고 이 법에서만 특별한 강제력을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 없음
-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 확대 주장 ⇨ 행정자료제공기관 전체에 대하여 의견 조희를 하게 될 것이지만 법률에서는 특히 중요한 기관만 명시한 것이며 열거되지 않은 기관들이 불필요한 의견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정보보호계획 등 반영하여 통합규정하자는 주장 ⇨ 그러한 사항도 당연히 기본계획에 포함되며 정보보호계획이나 품질관리·표준화 등에 관한 계획들은 나름대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 해당 위치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별도 조문을 둔 것임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p>「네덜란드 행정자료 이용법」 제16조</p>	<p><b>제16조</b>(1) 통계청장은 다년간 프로그램 계획서와 업무 프로그램 계획서는 매년 11월 1일 이전에 업무 프로그램 계획서 보완사항은 필요한 시점에 통계위원회에 제출해서 채택되어야 한다.</p> <p>(2)위의 계획서가 통계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면 통계청장은 다년간 프로그램 계획서, 업무 프로그램 계획서, 업무 프로그램 계획서 보완사항을 제작하여 이들 문건이 유효한 기간에 대해서 통계청의 감리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 □ 시행령

**제3조(행정자료 이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소관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계청장은 제4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통계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통계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8. 제8조 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제8조(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통계법」에서 통계청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길을 열어 두었고 정부 3.0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을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모집단 구축 및 이용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과 표준화 및 행정자료의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통계청장이 이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기대효과

- 통계청장은 물론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구체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타법과의 관계

- 통계청장의 지침은 신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행정자료 이용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법령들과 조화되도록 발령 운영될 것이므로 서로간에 모순 저촉 등의 사례는 없을 것임

## II. 제2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협력

### 제1절 행정자료의 제공

#### 1. 제9조 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

제9조(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 제공의 범위·시기·방법 등
2. 식별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3. 행정자료의 갱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제공기관이 반드시 제공하도록 열거된 행정자료라고 하더라도 통계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받도록 하여야 하고 제공기관에 따라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 사이에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 별표에 열거된 행정자료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정하여지기 때문에 통계청이 신법을 남용하여 행정자료 제공기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통계까지도 생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3자제공의 문제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행정자료의 업데이트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전협의로 해결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제공은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신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제공기관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용기관의 입장에서도 주기적 지속적인 제공이 확보되어 통계작성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행정자료 제공관련 조항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관련법률 모두의 조화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임

□ 관련 국내 입법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불가리아 통계법」 제20조	제20조(6) 법률에 규정된 기록 및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 기타 중앙정부기관, 불가리아 국립은행 및 기타 기관은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통계기관 및 통계 부처에 국가통계프로그램에 포함된 통계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별 자료 및 통계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2조 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통계프로그램의 합리적 실천이나 여타

<p><b>「슬로베니아 통계법」 제32조</b></p>	<p>목적에 위하여 통계청은 다양한 공무자료나 행정목적 자료기록(예: 행정 기록, 등록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출처로 하는 데이터를 이용한다. 공무 자료와 여타 행정자료 기록에 책임을 지는 단체는 법령에 달리 정해지지 않으면 모두 요구자료를 통계청에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p>
--------------------------------	---

□ 시행령

- 제4조(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의)** ① 법 제9조에 따른 협의는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당사자 외에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끝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조(협의 관련 조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는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0조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제10조(행정자료의 제공요청)** ① 통계청장은 제9조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심사·승인·협의를 거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 □ 제정이유

-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신법은 통계청이 필요로 하는 행정자료의 목록을 열거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자료 제공기관(법원행정처 등 헌법기관은 법무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개진 가능)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하였음
- 「통계법」에서는 모든 행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이 동의하는 자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제공받았고 제공여부는 제공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었음
- 특히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관 행정자료의 제공여부를 제공기관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통계작성기관은 제공기관의 처분만을 바라는 결과가 되었는데 통계청의 경우에는 등록센서스의 주기적 실시 등 안정적 지속적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법률상 제공에 대한 제약을 이 법에서 적용배제를 하도록 한 것임
  - 행정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개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심사·승인·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보므로 개별 법률상의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제약을 일괄 배제하여 별도의 심사·승인·협의 등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 통계작성의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통계법」에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조문이 신설된 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경우에도 적용됨

## □ 기대효과

- 지금까지 「통계법」에 의한 행정자료의 제공이 행정자료 생산에 관한 개별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별표에 열거된 행정자료에 대하여는 지속적 안정적인 자료입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위 조문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생산 관리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 행정자료의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통계작성을 위하여 그러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법률 간의 상충으로 인한 집행상의 문제를 해결하였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신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법상의 조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점을 입법론적으로 명시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조항을 둔 데 대하여 각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 법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 개별법에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법에서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통계법」 제24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고 이는 지속적 안정적 행정자료 제공을 저해하여 통계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임
- 즉 제10조제2항은 신법의 핵심조항이며 부처협의과정에서도 반드시 설득이 필요
- 부처협의를 어려운 자료는 별표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 ⇨ 일단 원안에서는 넣어 두고 협의과정에서 조정할 문제
- 제2항의 간주는 너무 과격하다는 주장 ⇨ 이 법안의 핵심사항이고 간주하지 않으면 입법효과가 없음
- 행정자료가 통계청에 집중되면 지금까지 행정자료 제공기관이 통계작성기관의 지위에서 스스로 작성하던 통계까지 통계청장이 작성하려 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통계청장은 자기 소관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행정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입장에서 제공기관과 통계작성권을 둘러싼 마찰을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그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함

##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전정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p>「네덜란드 통계법」 제33조</p>	<p><b>제33조</b>(1) 통계청장은 통계목적으로, 법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되고 있는 등록부 (register)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p> <p>a. 기관 및 부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정부</li> <li>2. 지방정부</li> <li>3. 기초 자치체</li> <li>4. 수자원 관리기구</li> <li>5. 공동규제법률(Joint Regulation Act)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li> </ol> <p>b. 네덜란드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p> <p>c. 중앙정부 수준의 독립기관</p> <p>(2) 통계청장은 법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가자금이나 법정 요금을 징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법인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회의의 자문을 얻어서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p> <p>(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자료를 얻는 방법이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통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기업, 독립적인 전문직 종사자, 기관, 그리고 국무회의의 명령에 지정된</p>



	법인 등으로부터 국무회의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

#### □ 시행령

**제5조(제공대상 행정자료)** 법 별표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자료”란 별표의 행정자료를 말한다.

### 3. 제11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11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취지를 살려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자료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자료의 양태가 다양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공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 행정자료 제공에 너무 장기간이 걸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공기간을 규제하였으나 제공기관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용함
- 이러한 사항은 제9조의 사전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것이며 제11조는 그러한 사전협의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행정자료 제공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정부부처간 공유 협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통계작성목적의 별도 수집채널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전자정부법」에 따라 제공받는 경우 동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제약은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통계작성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어 여기에서는 적용을 배제하였음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적시에 필요한 통계생산이 가능해지며,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부부처간 공유 협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통계작성목적의 별도 수집채널을 마련할 수 있음

□ 타법과의 관계

- 전자정부법상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행정자료 입수를 추가한 것으로서 타법과의 충돌 소지는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행정자료의 제공은 이미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동 센터를 운영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 고려) 해당 기관의 전산망 등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함(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할 경우 전산망은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시)
- 30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 ⇨ 앞에서 제공여부결정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임

## □ 관련 국내 입법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제40조(심사·승인·협의를 의제),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 시행령

**제6조(행정자료 제공방법)**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시스템과 해당 공공기관 간의 정보시스템으로서 법 제3장에 따른 정보보호조치가 갖추어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2. 통계청이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가 수록된 문서·대장·도면 등을 수신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
3. 행정자료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이동저장장치를 수령하고 그 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

#### 4. 제12조 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이 제3장에 따른 보안 및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9조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 제정이유

- 다음 「통계법」 제24조제2항의 취지를 살려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은 제1항의 반대해석을 명문화한 것임

“ 「통계법」 제24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음의 「통계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제공거부사유를 치유한 경우 그 확인절차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제공재개조치를 명시함

\* 「통계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 기대효과

- 별표에 규정된 행정자료라 하더라도 국가기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신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자료 제공이나 중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자료 제공기관과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계 법률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제공재개요건으로서의 확인조치가 실제 운영상 관련기관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제공재개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운영의 묘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불가리아 통계법」 제21조	제21조(2) 자연인은 인종, 국적, 민족, 종교, 건강 상태, 개인 생활, 소속 정당, 범죄 기록, 철학적 및 정치적 견해에 관한 자료를 통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 시행령

제7조(행정자료 제공거부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 5. 제13조 행정자료의 긴급제공

**제13조(행정자료의 긴급제공)** ① 통계청장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한 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긴급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긴급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 긴급자료요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미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통상적인 행정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제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만 긴급한 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제공절차와 달리 통계작성기관의 입장에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이는 종전에 현장조사방식에서 긴급한 경우 바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임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긴급한 통계작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타법상의 협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이미 의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긴급제공의 경우에도 타법과 충돌될 소지는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상의 요건을 참고로 한 것이지만 통계작성과 추경편성은 서로 달라 요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대두 가능 ⇨ 국가정책 수립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한 정책 수립 시행을 뒷받침할 긴급통계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음
- 다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였지만 제공기관이 제공에 필요한 기간은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용은 다소 의문

6. 제14조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

제14조(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제공은 지속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에게 최소한의 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제공기관 실무자 등의 잘못으로 행정자료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에게 대응수단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제약일 수는 있지만 타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당연한 사항이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 현재의 실태를 감안할 때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 점검과 유사한 문구라는 주장 ⇨ 문구는 유사하더라도 점검대상이 다르므로 문제될 것이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8조(행정자료 제공 점검)** 통계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검요청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청장이 법에 따라 요청한 행정자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불성실 제공이 반복되어 통계작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다.

## 제2절 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조

### 7. 제15조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

**제15조(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 ①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행정자료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분류체계·식별번호 및 행정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의 속성
2. 행정자료의 처리기준
3. 행정자료 표준화의 현행화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행정자료를 기재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 □ 제정이유

- 행정자료는 원래 수집한 기관의 행정목적에 위한 것이므로 통계작성에는 미흡하게 수집될 수 있는바, 표준화를 통하여 행정자료를 통계에 활용하면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통계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 최근 다른 분야의 법령에서도 표준화가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임

□ 기대효과

- 행정자료 표준화는 행정자료의 통계작성에의 이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통계청장이 표준의 제정 및 표준준수의 관리 등 강도 높은 표준화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법과의 관계

-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서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들은 각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돌 소지는 없음
  - 「전자정부법」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도 표준화를 규정한 것과 중복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이들 법령에서는 주로 전산시스템 등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정정보의 표준화도 주로 민원행정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통계작성에 필요한 표준화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중복이 아님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법령서식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고 표준화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부처별 행정목적에 맞게 용어 및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간의 소득 정의 상이 등)
- 제2항의 「산업표준화법」은 행정자료 표준화와 무관하다는 주장 ⇨ 그러나 실제 부처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단서를 넣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 행정자료에 사용하는 용어, 분류체계 등에 대한 표준은 관련 부처 권한 침해 소지가 있고, 행정자료 처리기준과 현행화시기 등에 관한 표준은 관련 부처의 부담 초래하고 도로명 주소에 의한 행정자료 작성은 안전행정부 소관사항이라

는 주장 ⇨ 표준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단 부처협의를 회부하고 의견을 보면서 조정할 사항임. 그러나 다른 부처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표준화가 긴요하고 표준화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 업무에 간섭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정의규정에서 설명한대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 규정만 들 수도 있으나 이 법의 입법목적 중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 관련 외국 입법례

###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

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 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 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

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뉴질랜드 통계법」	<p><b>29. 양식(Forms)</b></p> <p>(1) 통계청장이 본 법률에 의하여 수집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통계를 수집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스케줄을 설계 및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의 모든 스케줄을 위하여 상기 스케줄의 적절한 분배, 작성 및 신고에 필요한 지시 사항과 절차를 정한다.</p> <p>(2) 통계 수집 및 관련 정보에 사용하기 위해 본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스케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상기 스케줄과 관련된 모든 지시 사항이 제시된 통계청 직원이나 상기 스케줄에 제시된 기타 모든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타 모든 사람에 의해 작성된 모든 문서는 통계청장이 통계청 직원이나 스케줄을 작성하는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상기의 스케줄에 있는 모든 지시 사항이 통계청장에 의해 또는 통계청장을 대신하여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p>
「미국 센서스법」	<p><b>제5조(조사표; 수, 형태, 질문의 범위)</b> 상무부 장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서스, 통계조사, 통계를 위한 조사표를 준비하고, 문항, 질문 수, 형태와 통계의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한다.</p>
「스페인 통계법」	<p><b>제5조(1)</b> 중앙정부를 위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료와 작성된 통계의 비교,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개념, 정의, 통계단위, 분류, 명칭, 코드가 마련되어야 한다.</p>
「대만 통계법」	<p><b>제6조(통계업무의 작성)</b> 제5조제1항의 통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p> <p>(1) 통계기관과 하급기관</p> <p>(2) 통계구역(statistical area)</p> <p>(3) 단계별 통계 프로젝트</p>

	<p>(4) 통계의 과목(statistical theme)                  (5) 통계의 단위(unit of statistics)                  (6) 통계의 형식(format of statistics)                  (7) 통계의 수집 및 편찬 방법                  (8) 자료공개의 정도(degree of data disclosure)                  (9) 통계보고서의 출판범위                  (10) 통계계획에 구체화되어야 할 다른 항목</p> <p><b>제11조(통계작성의 표준화)</b> 제3조제2항, 제3항, 제5항에 언급된 특수목적의 통계를 제외하고는 통계의 주제나 단위, 통계의 형식, 통계의 수집 및 편찬방법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대상이나 단위, 통계의 형태, 통계의 수집 및 편찬방법이 상황에 따라 특수통계의 경우에 표준화되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당 통계기관의 통계직원은 중앙 주계부서가 전항에서 언급된 특수목적의 통계가 원래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에도 채택될 수 있다면, 중앙 주계부서는 통계의 주제나 단위, 통계의 형식, 통계의 수집 및 편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p>	<p><b>제5조 (공적 등록부의 조사)</b> (1) 공적 등록부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 가구통계 및 건축물통계, 주택통계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달방식 또는 자료기억매체(data carrier) 방식으로 전달된 다음의 공적 등록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a. 연방, 주 자치단체(canton), 기초자치단체(communitiy)의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harmonized official personsregister)                  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housing and building registers)</p> <p>(2) 자료의 전달은 다음 법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p> <p>a. 2006년 6월 24일의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                  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규정</p> <p>(3) 연방, 주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이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를 관리하는 부서는 표준화된 등록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그 자료를 정해진 마감 일자에 송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일체의 상세사항에 대한 지침의 공표를 위임할 수 있다.</p>



## 8. 제16조 표준분류 사용

**제16조(표준분류 사용)**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의 작성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표준,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별표의 행정자료와 관련 있는 서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식을 정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통계청장이 마련한 표준화 지침과 이미 「통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분류 및 도로명주소 등을 행정자료 작성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
- 행정자료 표준화는 행정자료의 통계작성에의 이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다른 분야의 법령에서도 표준화가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되,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의 필수적 요소이면서 이미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 행정자료 제공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 행정자료가 서식을 통하여 입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건이 되는 서식을 통한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작성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 표준분류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자료의 작성 단계부터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을 정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관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

## □ 타법과의 관계

- 개별 법령에 있는 서식의 개정은 개별 법령의 소관부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최종 서식 승인권자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별개의 법령에 따른 것이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달리 통계청장은 협의만을 할 뿐이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표준관련 사항은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기록매체 및 재료 규격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9. 제17조 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①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고유식별정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점이 있지만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식별번호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의 경우에는 동법의 대부분을 적용 배제하여 주고 있음-그러나 통계작성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개인정보보호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대체번호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음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자체만으로는 연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계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이나 행정자료의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며, 통계작성 목적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배제 규정에 따라 서로 상충되지는 않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추세에 어긋난다는 주장  
⇒ 통계작성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 □ 관련 국내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독일 센서스준비법」 제8절	<b>제8절(식별코드)</b> (1) 주소, 건축물, 주택의 경우 예외 없이 식별코드가 부여된다. 식별코드는 자치체와 건축물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연방 및 지방 통계청에 의하여 부여된다. 식별코드는 제2절 제3항의 11번 항목인 도로키(street key)를 포함한다. (2) 식별코드는 제7절에 의거한 자료 매칭이나 센서스에서 요구되는 행정 등록부 평가 자료와 보완적 조사를 통합하는데 적용된다.
「스위스 행정자료표준화 법」 제3조,제10조	<b>제3조(정의)</b> e. 식별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상의 한 요소로, 개인 혹은 물건에 대한 명료한 식별을 허용하는 비서술적 불변 번호 <b>제10조(매칭키)</b> 매칭키로는 개체식별번호(object identifier)와 표준화된 핵심항목(harmonized key topic)을 포함한다. 이 매칭키는 개체 자료의 통합과 인구 센서스의 통계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 시행령

**제9조(식별번호 부여)** 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번호를 부여할 행정자료의 범위와 식별번호 부여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10. 제18조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서식 등을 통한 행정자료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통계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식을 개정하거나 서식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정이유

- 통계청장은 강제적 방법으로 서식 표준화 등을 추진할 형편이 아니며 표준화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식으로 표준화를 유도하도록 함
-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이란 통계적 관점에서 해당 서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산화 등의 지원을 말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표준화의 경우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행정자료 제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 업무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표준화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 타법과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조항이 과도하다는 주장 ⇨ 통상적인 표현임

□ 관련 국내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9조 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

**제19조(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 이행여부에 관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와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표준화는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및 진단 등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 기대효과

- 개별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표준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표준화 시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표준화 시책을 위한 통계청장의 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타법과 충돌될 소지는 없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성패는 표준화에 달려 있으나 각 기관에서는 업무 부담이나 종전 방식 고수의지 등으로 표준화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최대한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수행하도록 함

- 제1항과 제2항은 제14조에 통합하자는 주장 및 진단과 점검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주장

⇒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에서는 제공여부에 초점이 있고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그것과 관점이 다르므로 통합 불가함. 자체점검을 자체진단으로 용어를 변경하여도 무방하지만 구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움



##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스위스 행정자료표준화법」 제19조	<p><b>제19조(표준화 마감시한)</b> 1. 연방의회가 표준화 마감시한을 규정하며, 이때 2010년 총조사 요청사항을 고려한다.</p> <p>2. 연방의회는 제 6조 a항, d항 및 총조사 이후 주민등록부의 속성 입력 마감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계청에 세부사항을 규제하는 지시사항 발표를 지시할 수 있다.</p>

## □ 시행령

**제10조(표준화 점검 및 진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이행여부의 점검요청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점검요청을 받고서도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과 표준화에 관한 개선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12. 제20조 행정자료의 품질관리

**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기법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여 통계작성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적 기법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과 제2항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 품질진단 그 밖에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표준화와 아울러 품질관리도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임
- 「통계법」에서도 통계 자체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상세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행정자료 이용에 국한된 사항에 한정된 품질관리에 관하여서만 규정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자료 생산기관에서도 품질관리를 통한 정확한 행정자료를 생산하게 되어 소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품질관리는 통계청과 함께 행정자료 생산기관이 참여하여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타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품질관리개선계획의 기본계획 통합문제 ⇨ 기본계획에도 규정되어 있고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임
- 시의성 속에 최신성이 포함된다는 주장 ⇨ 시의성은 단순한 업데이트 개념이 아니고 상황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서 차이가 있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 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p>「터키 통계법」 제41조</p>	<p><b>제41조(자료품질관리위원회)</b> 자료품질관리위원회는 터키 통계청의 본부나 지역사무소에서 실시한 통계업무나 국가통계프로그램에 포함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업무를 검토/평가하며, 통계업무의 검토/평가 작업은 등록부(register)등 행정자료의 상태에서 자료의 간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자료품질과 국제기준의 이행여부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연구(quality control studies)를 실시한다.</p> <p>자료품질관리위원회는 방법론 부서(Methodology Department)의 책임자, 그리고 주요 업무부서의 책임자 2인, 그리고 통계자문관 1인으로 하여 통계청장이 임명한 부청장 1인을 이사장으로 운영된다. 터키 통계청은 자료품질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로 활동하는 실무집단 (working group)을 설치할 수 있다. 여타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직원도 이 실무집단의 이사로 지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승급절차, 그리고 사회보장 등의 혜택은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한다.</p> <p>위원회의 문서작성 등 지원업무는 방법론 부서의 책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실무절차와 절차는 시행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스위스 통계법」 제14조</p>	<p><b>제41조(품질관리 표본조사)(1)</b>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기본통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추출에 의한 품질관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 □ 시행령

**제11조(행정자료 품질관리)** ①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시켜 통지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을 권고함에 있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 수립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필수적인 세법상의 서식에 있는 업종분류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료 결합 등에 대한 통지) 통계청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크리스트에 의하여야 한다.

13. 제21조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제21조(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행정자료 활용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가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자체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 표준화와 품질관리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서 「통계법」 상에도 관련 규정이 있음

□ 기대효과

- 표준화와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 상의 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이나 충돌 문제는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 시행령

**제12조(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와 통계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서는 통계작성 일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와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관련 법령,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자체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 14. 제22조 기관간 협조

- 제22조(기관간 협조)** ① 통계청장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구를 행정서식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문제를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해소함과 아울러,
- 행정자료의 제공과 표준화/품질관리는 행정기관간의 협조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았으며,
- 행정자료제공으로 인하여 당초 행정자료를 제공한 민원인의 이익제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내 문구를 기재할 수 있게 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유출방지는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 긴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간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 국민들이 행정자료를 통한 통계작성 사실을 알고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지절차를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기대효과

-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공동이용에 따르는 보안문제 등의 부작용을 줄이며 행정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제공한 국민들에게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제2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행정자료 생산에 협조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타법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검토의견

- 행정서식에의 안내문구 기재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하는 바 이는 해당 서식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 부처와 서식승인권력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관련 국내 입법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관 간 협조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p>「폴란드 통계법」 제40조</p>	<p>제40조 (1) 폴란드 통계청장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의 과정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표준분류와 명칭을 준비하고, 표준분류 및 명칭의 일치 정도를 식별하여, 이들을 해석하여야 한다.</p> <p>(2) 제1항에서 언급한 표준분류와 명칭은 각료회의에서 시행규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p> <p>(3) 제2항에 의하여 도입된 표준분류나 명칭은 통계, 행정기록, 문서화,</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회계시스템, 공적 등록부, 공정행정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
「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8조	<p><b>제8조 (추가적 주문)</b> (1) 주 자치체는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구조 표본조사와 주제 표본조사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확대된 주제 표본조사는 새로운 주제영역을 포함할 수는 없다.</p> <p>(2) 연방정부가 추가적 주문이 있는 경우 자격, 관할영역, 범위, 시점, 그리고 비용과 주문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p> <p>(3) 연방정부와 주문당사자인 주 자치체는 추가적 주문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다.</p>
「스페인 통계법」 제5조	<p><b>제5조</b> (1) 중앙정부를 위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료와 작성된 통계의 비교, 통합,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개념, 정의, 통계단위, 분류, 명칭, 코드가 마련되어야 한다.</p> <p>(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부서는 지역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통계자료와 작성결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통계작성수단을 표준화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p>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청에 관한 법」 3-2.	<p><b>3-2. 행정자료처리시스템</b></p> <p>(1) 통계청은 국가기관과 전국적인 자치조직의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을 국가통계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p> <p>(2) 국가기관이나 전국적인 자치조직이 주요한 행정자료처리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미리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통지를 통계청에 보내야 한다.</p> <p>통계청은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자료처리시스템이 통계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p> <p>(3) 국왕은 위 (1), (2)을 실행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p>
「슬로베니아 통계법」 제55조	<p><b>제55조</b> 행정기관 또는 여타 국가단체, 공무수행자, 공직자 또는 국가통계로 그림이 정한 승인된 통계조사 실시기관은 새로운 행정기록을 수립하거나 기존 행정자료기록(기록, 등록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추가하는 경우, 통계청의 사전 의견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4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p>

## ○ 통계자료 이용의 고지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불가리아 통계법」 제22조	제22조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는 적절한 방식으로 통계 조사 대상인 개인들에게 자료의 기밀성과 비밀 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와 의무, 조사의 목적, 범위와 방식을 서면으로 발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13조(기관간 협조)**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 또는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출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유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정보 또는 자료 유출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련문구의 기재요청을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III. 제3장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

## 1. 제23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통계작성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광범위한 적용배제를 받았으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이 본격화될 경우 방대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누출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통계청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운영을 중심으로 물리적 기술적 보안시스템은 물론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취지와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관련 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는 신법에서 특별한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하여 강력히 대처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방대한 행정자료의 보안대책으로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가 있어 관련 법률간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 스스로가 통계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시켜 놓았고 또 통계청 스스로가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것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인 사항들은 통계청의 내규 등 행정규칙으로 규율하여도 충분한 사항임

##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슬로베니아 등록센서스법」 제24조제25조	<p><b>제24조(통계청과 협력기관의 자료보호 절차 관련조치)</b> 특정개인을 다루는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제공하는 슬로베니아 통계청과 여타 협력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보호를 위한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절차와 사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25조(자료보호 절차의 규정)</b> 센서스에 의하여 수집된 특정 개인을 다루는 자료의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p>

□ 시행령

**제14조(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 통계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 및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4조 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

**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준하여 통계청장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통계작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의 포괄적 적용배제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타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는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 처리지침)**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3. 제25조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

**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 통계청장은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이용 통계등록부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관리 및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법과의 관계

- 방대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데 따른 신법상의 특별한 배려로서 타법과의 상충문제는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통계작성기관의 직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행정자료제공기관의 직원은 제외)

□ 시행령

**제16조(정보보호조치 교육)** ① 통계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유출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 4. 제26조 식별번호의 암호화

**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 ①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화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정이유

- 통계작성을 위하여서는 행정자료간의 연계활용을 위한 식별번호의 부여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암호화함을 원칙으로 하여 누설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24조의2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임

□ 기대효과

- 방대한 행정자료의 입수 및 처리와 통계작성에의 이용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개인정보보호 취약요소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배제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취지를 보다 확실히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타법과의 조화적 운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5. 제27조 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

**제27조(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없다.

### □ 제정이유

- 대체번호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통제하려는 것임.

### □ 기대효과

- 대체번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상의 취약요소를 최소화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타법과의 상충은 없음

## 6. 제28조 행정자료의 파기

**제28조(행정자료의 파기)**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계속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문서자료를 가늘게 자르거나 컴퓨터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라 행정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한 후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방대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목적에 국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자료의 보유기간도 최단기간화 할 필요가 있고 파기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파기의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참조)

####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원본을 장기보관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배제에 따른 신법 스스로의 보완조치로서 타법과의 상충문제는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벨기에 통계법」 제17조	제17조(3) 통계목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된 개체자료는 해당 목적에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에는 즉시로 파기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 7. 제29조 비밀보호

제29조(비밀보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훼손·침해·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정이유

- 통계작성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광범위한 적용배제를 받았으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정보누출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임 - 특별한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하여 강력히 대처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정보 누설 및 남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취약요소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형법」을 비롯하여 각 행정자료 생산관련 법률의 처벌조항에 대한 특칙으로서 「형법」 총칙상의 상상적 경합 등의 이론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불가리아 통계법」 제25조	<b>제4조(1)</b> 통계설문 조사를 통해 접수 및 수집된 개별 자료는 통계 비밀을 구성하며, 통계목적외로만 사용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받은 개별 자료는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
「스위스 연방통계법」 제13조	<b>제13조(자료보호 및 직무상의 비밀)(1)</b> 통계를 목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전달된 자료는 연방법이 다른 이용을 명백히 지시하거나 관련자가 그것에 문서상으로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통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스위스 연방 센서스 시행령」 제25조	<b>제25조(직무상 비밀과 비밀준수 의무)(1)</b> 통계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고, 조사 중 획득한 모든 정보와 조사문서 및 자료매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제30조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

**제30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계작성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이유

- 통계작성에 이용되는 행정자료에는 개인정보와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제3자제공 제한의 취지와 같은 규정을 명시-위반시 형사처벌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통계청 외의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면서도 엄격한 통제 아래 아무 부작용 없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자료 이용 촉진과 아울러 제공기관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신법 특유의 보안대책 내지 이용활성화 시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이미 포괄적인 적용배제를 받았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고 그밖의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네덜란드 통계법」 제37조	제37조(2) 제1항에서 언급된 자료는 통계청의 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9. 제31조 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

**제31조(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행정자료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5. 통계청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6. 행정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그 밖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통계청장은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행정자료의 분실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도에 준하는 유출 고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유출사고에 대비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배제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제2항의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 다양한 내용을 일일이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례에 따름

□ 관련 국내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32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

제3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한 행정자료에 대하여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자신이 통계청장에게 제공한 행정자료가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 자료 제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장이 구축한 통계등록부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감시 감독을 보장하여 통계청의 행정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신법 특유의 제도로써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IV. 제4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 제1절 행정자료의 용도 및 통계적 처리

##### 1. 제33조 행정자료의 용도

**제33조(행정자료의 용도)** ①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공한 행정자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2. 국가통계의 작성
3. 제36조에 따른 통계작성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조사대상 또는 항목에 대하여 「통계법」 제26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이용의 정의는 제2조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나 그 범위가 중요하므로 본칙에서 다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행정자료 이용만으로는 통계작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실지조사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함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하면서도 무분별한 이용을 원천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 등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 제34조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제34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통계청장이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통계시스템간 연계처리에 관한 제한조치 규정

### □ 기대효과

- 통계청장이 입수한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행정자료제공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신법 특유의 제도로 타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음

### □ 시행령

**제17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담당한 사람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시행규칙

**제4조(통계적처리기록부)** 영 제17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 3. 제35조 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

**제35조(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방법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시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통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이용기반을 구축하였고 현지조사방식보다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이 세계적 추세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통계청장에게 적극적인 이용의무 및 연구개발의무까지를 규정함

#### □ 기대효과

- 종전의 현장조사방식의 통계작성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과의 관계에서 신법이 특별법이므로 상충될 소지는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전자정부법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불가리아 통계법」 제4조	제4조(4) 국가 또는 유럽 통계 정보의 공식적인 개발 및 산출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통계 기관 및 통계 부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설정하고 유지하는 행정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종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가통계와 통계법 보충 법률(통계법 시행령)」 제4조	1-2 통계청은 정부가 이용할 목적의 자료수집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행정자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 4. 제36조 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제36조(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을 통해서는 해당 통계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장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행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있어 통계등록부시스템 및 모집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실제 통계작성기관의 사정과 통계의 종류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 작성을 의뢰할 경우 통계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타법과의 관계

- 각 개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의무와도 상충될 여지가 없으며 집중형 통계작성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많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p>「독일 연방통계법」 제3조</p>	<p><b>제3조 : 연방통계청의 임무</b>(1) 1.a 지방주통계청과 방법론적 및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여 연방목적의 통계를 작성·개발한다.</p> <p>1.b 연방통계자료의 수집과 처리가 지방별로 동일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p> <p>1.c 지방별로 세분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목적에 위하여 발간·공표한다.</p> <p>2.a 이 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또는 관련 지방주정부가 동의하는 한 연방통계를 수집하고 처리한다.</p> <p>2.b 지방주통계청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연방통계청은 2차 처리 및 특별처리 등을 수행한다.</p> <p>3.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위 연방기관들을 대신해서 통계를 작성한다.</p> <p>4. 타국, EU 및 국제기구의 통계를 작성, 결과보고서를 발간·공표한다.</p> <p>5. 통계를 시의성과 지역적인 관점에서 조정한다.</p> <p>6. 연방 통계작성 추진계획, 법률적 근거 및 행정규칙을 마련한다.</p> <p>7. 국민계정과 연방목적의 종합통계를 편제하며 보고서를 발간·공표한다.</p> <p>8.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연방기관의 특수DB 조정업무에 참여; 연방의 요청에 따라 연방행정이 아닌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p> <p>9. 자료수집 및 처리의 단순화(신속화)와 그 개선을 위하여 행정전산화 및 법률적 처리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p> <p>10. 통계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한 목적의 연구과제</p>



## □ 시행령

- 제18조(행정자료 이용 통계 대행작성)** ① 법 제36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작성의 행행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행하려는 통계의 개요, 대행요청 사유 및 소요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종전의 통계작성 실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20일 이내에 대행작성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2절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 제37조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

- 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
- ②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통계등록부시스템은 행정자료 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입수한 행정자료에 표준화와 품질관리 등과 통계적 처리 등 여러 가지 가공을 가한 후 이를 다른 통계작성기관까지를 망라하여 충분한 보안대책을 갖추면서 이용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제39조의 통계지원센터와 함께 신법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시스템의 중요부분에 해당함

- \* 「통계법」 제24조는 통계작성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자료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료 이용실적이 미미하며 건강보험공단 등 그 밖의 통계작성기관들은 필요할 경우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자료를 요청하여 이용하여 왔음. 신법은 행정자료 이용의 안정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보강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통계청장에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계 제공하는 행정자료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다수의 통계작성기관에게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고 행정자료가 다수의 통계작성기관에 흩어져 이용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소하였는데, 그 대신 정부3.0의 취지를 살리고자 통계청장의 책임 아래 보안장치가 대폭 강화된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등재된 모집단자료를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이용할 길을 열어 주되 통계청장의 감독권이 확실히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정자료 제공기관 및 통계작성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으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은 통계자료로 볼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행정자료로 보아 행정자료 원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에 한하여 그러한 모집단 이용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자료에 대한 원 제공기관의 처분권을 온전히 보전하였기에 국세청 등 행정자료 원 제공기관들에게도 행정자료 이용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제공기관의 보안대책 등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음

□ 기대효과

- 정부 3.0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안전한 통계작성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행정자료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법이 고안한 제도로써 타법과의 상충 소지는 전혀 없음

□ 관련 외국 입법례

관련 법률	법률 내용
「슬로베니아 통계법」	제33조 공무자료 또는 행정자료 기록의 자료를 국가통계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자료와 연계작업을 추진하여 통계청은 독자적인 통계 등록부(statistical register)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시행령

제19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 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계등록부시스템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등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관여한 사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조(통계등록부시스템 운영기록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6. 제38조 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

제38조(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 ①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통계등록부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계등록부시스템의 보호 및 내부시스템 구축
3.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총괄
4.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 관련 업무지원
5. 그 밖에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위한 관련업무

□ 제정이유

○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리책임자 지정 등 보안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상의 통계책임관과는 별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따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기대효과

-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기관 확대와 방대한 수록자료에 따른 보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 상의 관련규정과 차별화가 되어 있어 중복 상충의 소지는 없음

7. 제39조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제39조(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재분류하는 업무
2.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품질 점검·향상에 관한 업무
3.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통계활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행정자료의 가공업무
4.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이유

- 통계지원센터는 행정자료 산업 및 직업분류 코딩, 품질관리, 통계작성기관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업무지원 및 기타 통계청장이 위탁하는 행정자료 이용 기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서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행정자료 제공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기가 아직 어려운 현재 행정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기대효과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려는 신법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특별한 상충 중복 문제 없음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0조(통계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① 통계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임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권을 가진다.

② 지원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을 실시한 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시행규칙

제6조(통계지원센터 출입증표)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3절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및 이용

#### 8. 제40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제40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① 통계청장은 제2장 제1절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등록부시스템 안에 구축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제공기관에서 받은 행정자료와 통계청이 수집·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 안에 모집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계작성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가공 처리하여 모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동의 아래 다른 통계작성기관도 공동 활용할 길을 열어 놓되 개인정보보호와 통계작성 목적간의 조화를 도모함

□ 기대효과

- 행정자료이용 통계작성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보안대책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모집단 자료 이용에 있어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행정자료생산에 관한 개별법상에 보장된 행정자료제공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타법의 명문 규정은 물론 입법취지에도 상충될 여지가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이러한 내용을 실무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신법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시행령으로 돌릴 경우 입법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정 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당 사항을 시행령에도 규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개별법에서는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일반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추세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분위기임(「통계법」 제12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 일반적으로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관행에도 맞지 않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학교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 9. 제41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제4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 포함되었던 행정자료를 제공하였던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을 받은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



성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개요 및 필요성
  2.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
  3. 이용기간
  4.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표
  5. 통계적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통계청장이 입수한 행정자료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통계청 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청 조사자료 활용 현황('13. 10. 1. 기준)
  - ⇒ (현황) 국가승인통계 916종 중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58종을 제외한 858종의 통계가 통계청 외부기관에 의해 작성됨 - 277종의 표본조사 중 통계청 조사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통계는 191종임
  - ⇒ (작성기관별) 중앙행정기관 65종, 지자체 82종, 기타 통계작성기관 44종
  - ⇒ (행정자료 활용여부) 191종의 통계 중 25종의 통계는 통계청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

#### □ 기대효과

- 제40조 설명 참조

□ 타법과의 관계

- 제40조 설명 참조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제40조 설명 참조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먼저 해당 모집단 자료의 구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41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통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승인여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시행규칙

제7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와 같다.

□ 참고1(통계청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작성통계 현황(65종))

작성기관	통계종류(65종)	
	지정통계(10종)	일반통계(55종)
미래창조과학부(5)	정보화통계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민간기업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
안전행정부(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6)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광고산업통계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스포츠산업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2)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7)	에너지총조사,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제조업경기조사,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건복지부(14)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정신질환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의료기기화장품제조유통실태조사,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조사, 아동학대실태조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노후준비실태조사, 전국민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기상재해지역보건응급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환경부(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고용노동부(7)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7)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정책수요조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국토교통부(3)	국가교통조사	주거실태조사, 공간정보산업조사
농촌진흥청(2)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산물소득조사
산림청(3)		임업경영실태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중소기업청(5)	중소기업실태조사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1)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참고2(통계청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작성통계 현황(82종))

작성기관	통계종류(82종)	
	지정통계(0종)	일반통계(82종)
서울특별시(4)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금천구사회조사, 중랑구사회조사,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부산광역시(2)		부산광역시사회조사, 사하구안전도진단조사
대구광역시(1)		대구광역시사회조사
광주광역시(1)		광주광역시사회조사
대전광역시(2)		대전광역시사회조사, 유성구사회조사
울산광역시(2)		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울주군사회조사
경기도(22)		경기도사회조사, 가평군사회조사, 광명시사회조사, 광주시사회조사, 군포시사회조사, 남양주시사회조사, 부천시사회조사, 성남시사회조사, 수원시사회조사, 안산시사회조사, 안성시사회조사, 양평군사회조사, 여주시사회조사, 오산시사회조사, 의왕시사회조사, 의정부시사회조사, 이천시사회조사, 하남시사회조사, 화성시사회조사, 화성시경제지표조사,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용인시경제지표조사
강원도(7)		삼척시사회조사, 영월군사회조사, 원주시사회조사, 인제군사회조사, 정선군사회조사, 춘천시사회조사, 태백시사회조사
충청북도(5)		충청북도사회조사, 단양군사회조사, 옥천군사회조사, 청주시사회조사,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충청남도(3)		충청남도사회조사, 계룡시사회조사, 논산시주요소득농산물조사
전라북도(5)		전라북도사회조사, 군산시사회조사, 익산시사회조사, 전주시사회조사, 군산시서비스업동향조사

전라남도(4)		전라남도사회조사, 순천시사회조사, 여주시사회조사, 장흥군사회조사
경상북도(20)		경상북도사회조사, 경산시사회조사, 경주시사회조사, 고령군사회조사, 구미시사회조사, 군위군사회조사, 김천시사회조사, 문경시사회조사, 상주시사회조사, 성주군사회조사, 안동시사회조사, 영덕군사회조사, 영천시사회조사, 예천군사회조사, 의성군사회조사, 청도군사회조사, 칠곡군사회조사, 포항시사회조사, 포항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산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상남도(3)		경상남도사회조사, 창원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창원시서비스업동향조사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 참고3(통계청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민간통계작성기관 작성통계 현황(44종))

기관 분류	작성기관	통계종류(44종)	
		지정통계(3)	일반통계(41)
금융 기관	중소기업은행(3)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설비투자전망조사
	한국은행(2)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공사/ 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1)	주요기업의살비 투자계획조사	
	국민연금공단(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에너지관리공단(1)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		근로환경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1)		주택금융및보증자리론수요실태조사
	한국환경공단(1)		영농폐기물조사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3)	전국출산력및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2)		기술혁신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
	국토연구원(1)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1)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한국교육개발원(1)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2)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1)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1)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조세연구원(1)		재정패널조사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1)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협회/ 조합	중소기업중앙회(3)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생명보험협회(1)		생명보험성향조사
	한국무역협회(1)		기업물류비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1)		여성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3)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조사,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기타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1)		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한국감정원(1)		월세가격동향조사
	한국고용정보원(2)		청년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1)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10. 제42조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제4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① 통계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은 해당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시키거나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이 끝난 후에는 이용을 통하여 작성된 통계표만을 승인받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이유

-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등의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통계작성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시키고 모집단 자료의 이용도 통계센터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허용하며 외부반출은 작성된 통계표에 한정시키도록 함

□ 기대효과

- 제40조 설명 참조

□ 타법과의 관계

- 제40조 설명 참조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시행령

**제2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4조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절 등록센서스 실시

### 11. 제43조 등록센서스의 대상

**제43조(등록센서스의 대상)** 등록센서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
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



- 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센서스

□ 제정이유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전수조사의 등록센서스 실시 근거 마련
- 행정자료 기반 총조사의 유형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추후 추가되는 등록센서스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근거 마련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하이라이트인 등록센서스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통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상충 소지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등록센서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부각시키는데 유리

\* 일부 등록센서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서 유예기간 부여

□ 관련 외국 입법례

(1) 핀란드

개 요	1970년 인구센서스부터 행정자료를 일부 이용하다 1990년 인구센서스는 전적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됨	
관련 법령	핀란드 통계법 제4조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일반 행정업무 수행 중에 구축된 자료와 고용인, 자영업자, 이업 및 재단의 일반적인 활동의 결과로 작성된 자료를 일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2) 덴마크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행정자료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지방정부, 기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통계정보 수집, 처리) 부여</li> <li>-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건물/거처등록을 1978년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1년에는 세계 최초로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가 실시됨</li> </ul>	
관련 법령	덴마크 통계법 제1조제3호	<p>제1조 1.통계의 중심기관으로 덴마크 통계청을 설립하여, 이 기관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지방기관 또는 다른 통계부서와 협력하여, 사회적 여건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출판한다.</li> <li>2)지방자치체,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을 위하여 통계정보를 수집, 처리, 출판할 수 있다.</li> <li><b>3)일반대중이나 기업을 위하여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자료를 설계하고 이용하여,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b></li> <li>4)통계적 자문을 통하여 정부의 각종 소위원회나 위원회를 도울 수 있다.</li> <li>5)통계적 분석이나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li> <li>6)국제적 통계협력을 위한 주무기관이 된다.</li> </ol>

(3) 싱가포르

개 요	- 싱가포르 센서스법에는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에서 행정자료의 연계, 통합, 통계작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기관에서 획득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료의 공개 또는 공표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음
-----	--

	<p>-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최근의 2000 인구센서스에서 등록부 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인구 커버리지에 관한 개념도 상주 개념으로 변경하였음</p>	
<p>관련 법령</p>	<p>싱가포르 센서스법 제2조(해석)</p>	<p>제2조 (해석)이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센서스 직원”(censusofficer):제4조,제5조,제6조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  <u>“주무관청”(competentauthority):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공직자 또는 법정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법률에 의하여 공직자 또는 법정기관이나 그 기관의 공직자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책임이 있는 사람</u>                  “주택”(dwelling-housing):싱가포르 영토(선박을 포함) 안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 건물, 가건물 또는 돌출물                  “조사표“(schedule):센서스를 목적으로 하여 요구되는 특정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해진 양식의 조사표                  “총감독”(Superintendent):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센서스의 총괄 감독</p>

(4) 대만

<p>개 요</p>	<p>- 대만은 2010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센서스법을 두고 있지는 않음</p> <p>- 2010년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실시에 있어서 통계법을 센서스 실시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행정자료의 연계, 결합을 통한 통계표의 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p> <p>- 즉, 대만이 전통적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여 새로운 센서스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대만 통계법 자체를 보면 법적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p>	
<p>관련 법령</p>	<p>대만 통계법 제10조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p>	<p>제10조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중앙 주계부서는 필요한 경우, <u>기본 국세조사와 여타 센서스의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하기 위하여</u> 센서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주계부서는 또한 다른 정부기관과 임시 연락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전 항에서 명시된 통계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되거나 편찬되어서 아니 된다.</p>

(5) 이스라엘

<p><b>개 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통계법은 통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y 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관리(chief registration 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 신분, 주소 등에 관한 센서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통계법 제18조 (4)항 (c)는 2008년 등록센서스 실시는 물론이고, 인구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통센서스의 정확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조항이라고 판단됨</li> <li>- 특히, 이스라엘 통계법에 보장된 정보제출 명령서는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필요한 통계정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li> </ul>	
<p><b>관련 법령</b></p>	<p>이스라엘 통계법 제6조 센서스</p>	<p>(1) 국무총리는 통계청장과 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스라엘 인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센서스를 국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2) "센서스 명령"(censusorder) 은 센서스 실시일자, 조사표에 포함되는 주제 영역, 센서스의 조사 대상자, 조사표에 응답해야 할 대상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센서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시달할 수 있다.</p>
	<p>이스라엘 통계법 제17조</p>	<p>제17조 (1) 이 시행령에 따른 개인의 답신 전체 또는 일부,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출판할 수 없다.</p> <p>(2) 이 시행령에 따른 수집된 정보나 개인의 답신 또는 질문, 제15조에 언급된 기록, 문서에 대한 응답내용에서도 출된 정보는 해당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p> <p>(3) 고용인 외의 어떤 사람도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개입답신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 (특정 조항의 적용에 대한 제한) (1978년 개정)</p> <p>(1) 제17조의 규정은 국가기관에만 해당되는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이 이미 출판되었거나, 일반대중이나 사정당국에 의한 점검을 목적으로 입수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4) 제17조 (1)-(2)항의 규정이 다음의 답신, 응답, 정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 사전에 서면으로 출판에 동의한 개인, 동업자, 그러한 개인 또는 모든 동업자들의 답신, 응답, 정보</p>

		<p>(b) 법인, 이사회 또는 다른 지배단체 또는 지배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출판을 승인하는 결의서를 통과시킨 비법인의 답신이나 응답, 정보</p> <p><u>(c) 제17(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y 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관(chief registration 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 신분, 주소 등에 관한 센서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u></p>
--	--	---

(6) 터키

개요	<p>- 터키 통계청은 2011년 등록센서스 실시의 주무기관으로, 터키 통계법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다양한 용어를 직접 정의하고 있음</p> <p>- 가령, 개인자료 (persoanl data), 개체자료(individual data), 직접식별 direct identification), 간접식별(indirect identification)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p>	
관련 법령	<p>터키 통계법 제2조(정의)</p>	<p>제2조 (정의) 본 법의 시행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p>a)~m) 생략</p> <p>n) 자료: 표본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양적 또는 질적 정보 (quantitative or qualitative information)</p> <p>o) <b>개체자료</b>: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통계단위의 징과 함께 정의되는 자료</p> <p>p) <b>직접식별</b>: 이름, 주소, 또는 공식적으로 배정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유번호(identity number)를 이용하여, 통계단위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p> <p>r) <b>간접식별</b>: 직접식별에 포함된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통계단위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 s) <b>비밀자료</b>(confidential data):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계단위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테이블 형태로 배열된 개체자료 또는 자료</p> <p>t) 통계목적의 이용: 통계표 작성이나 통계분석이라는 배타적 목적으로 통계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p> <p>u) 배포: 형태나 이용 도구에 관계없이, 통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출하는 것</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7) 네덜란드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국회는 1991년 센서스법을 폐기하고, 당시 센서스 실시 주무기관인 네덜란드 통계청이 더 이상 전통적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면책권한을 부여함</li> <li>- 네덜란드 통계청은 유럽연합 통계청은 물론 여타 국제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로 하고, 인구등록시스템에 기존 통계조사를 결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 Census)을 개발하였음</li> <li>-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통계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통계청 자체가 통계법 개정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자료에 대한 수시 접근이 보장되어 있음</li> </ul>
관련 법령	-

(8) 벨기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는 별도의 센서스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센서스에서는 인구등록 시스템과 대규모의 사회경제통계 표본조사를 결합한 부분적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였음</li> <li>- 2011년에는 인구등록시스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 교육자료, 건축/주택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식의 가상센서스를 기획하고 있음</li> <li>- 벨기에 통계법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등록부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통계의 내용이나 빈도를 단순화기 위하여,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였음</li> <li>- 이러한 구상은 2011년 벨기에 통계청이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보장자료, 기업자료, 토지대장, 인구등록대장 등의 정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li> </ul>
관련 법령	-

(9) 폴란드

개 요	<p>폴란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센서스를 실시하며, 전국수준의 공적장부 가령, 행정구역대장이나 사업체 대장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제25조, 제d항과 제j항)</p>	
관련 법령	<p>폴란드 통계법 제25조제1항</p>	<p>(1) 폴란드 통계청장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통계정보 및 분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식통계</p>

	<p>통계조사 실시계획 (안)을 작성하여, 통계평의회에 제출한다.</p> <p>(b) 통계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관련 방법론을 결정한다.</p> <p>(c) 통계자료를 수집, 수거, 일반화하며, 자료분석을 실시한다.</p> <p><b>(d) 모든 종류의 센서스를 실시한다.</b></p> <p>(e) 통계자료를 저장한다.</p> <p>(f) 주요범주의 분류기준, 명칭, 그리고 정의를 개발하고, 이들 범주와 해석방식의 일치도를 결정한다.</p> <p>(g) 주요 수치와 지표를 포함한 통계정보를 입수하여 배포한다.</p> <p>(h) 장래인구추계와 경제사회에 대한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한다.</p> <p>(i) 통계조사 실시계획에 구체화된 범위, 일자, 형태로 통계정보를 대통령, 국회, 국가행정기관, 최고관리조정실 (NIK, Supreme Chamber of Control), 폴란드 중앙은행, 지방정부 부서 및 여타 정부기관에 제출한다.</p> <p><b>(j) 전국수준의 공적장부 가령, 사업체대장, 행정구역대장을 관리한다.</b></p> <p>(k) 폴란드 정부가 국제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사업을 진행한다.</p> <p>(l) 국가 간 통계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p> <p>(m) 폴란드 정부가 국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출한다.</p> <p>(n) 통계관련 국제조직이나 지역조직 또는 다른 나라의 통계청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p> <p>(o) 통계조사 방법론, 분류기준, 수리 및 전산방법의 통계학 응용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한다.</p> <p>(p) 통계학 지식의 진흥에 기여한다</p>
--	--

(10) 슬로베니아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베니아 통계청은 2010년에 행정자료를 100% 이용하는 센서스를 실시하기 전에, 2002년에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행정자료에 없는 조사항목은 표본조사에 의하여 보완하는 센서스 방법론을 채택하였음</li> <li>- 이를 위하여 2002년 공표한 인구,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센서스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에는, 센서스 실시에 관련된 각종 개념의 정의와 인구, 가구, 주택 분야의 조사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li> </ul>
-----	---

	<p>- 슬로베니아 2002년 센서스법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행정자료의 이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부, 내무부, 환경/공간계획부와 지방자치행정청, 법무부, 교육/스포츠부, 노동청, 연금장애보험기구, 건강보험기구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센서스 통계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p>
<p>관련 법령</p>	<p>슬로베니아 2002년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p> <p><b>제11조 (행정자료의 이용)</b> 센서스 실시에 필요한 사람, 가구, 주택, 건축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기존 공적 기록이나 여타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p> <p><b>제12조 (행정자료 관리자의 책임)</b> (1) 데이터베이스 보수와 보관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정해진 기한 안에,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p> <p><b>제13조 (보건부와 사회보장청의 행정자료)</b> (1) 보건부(Health Ministry),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p> <p>(내무부의 행정자료) (2) 내무부(Interior Ministry)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공적 등록부가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환경, 공간계획부와 지방자치 행정청의 행정자료)</p> <p>(3) 환경, 공간계획부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Ministry)와 지방자치 행정청은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법무부의 행정자료) (4) 법무부(Justice Ministry)는 수감자(收監者)에 관한 자료를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p> <p>(교육·스포츠부의 행정자료) (5) 교육·스포츠부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고등학교 기숙사나 학생 호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외무부의 행정자료) (6) 외무부(Foreign Ministry)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에서 그들과 동거하는 슬로베니아 국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노동청의 행정자료) (7) 슬로베니아 노동청(Employ-</p>



		<p>ment Servic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실업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연금장애보험기구의 행정자료) (8) 연금장애보험기구(Institute for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금 및 여타 재정지원 수혜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건강보험기구의 행정자료) (9) 건강보험기구(Health Insurance Institute)는 슬로베니아 통계청에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	--	---

(11)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b>개 요</b>	-	
<b>관련 법령</b>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제4조(자료원)	<p>1. 회원국은 센서스 통계를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a) 전통적 센서스</p> <p>(b) 등록센서스</p> <p>(c) 전통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p> <p>(d)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p> <p>(e) 등록센서스와 전통센서스의 조합</p> <p>(f) 등록센서스, 표본조사, 전통센서스의 조합</p> <p>(g) 순환표본을 이용한 적절한 표본조사 (순환센서스)</p>

(12) 미국

<b>개 요</b>	-	
<b>관련 법령</b>	미국 센서스법 제6조	<p>제6조(다른 연방정부 및 기관의 정보; 다른 정부 및 개인의 자료원에서 수집된 자료):</p> <p>(a) <u>상무부장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수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정부 및 기관, 연방정부 사무소, 콜롬비아 주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u></p> <p>(b) 상무부장관은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서스 및 통계조사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보고서, 복사물, 개인 또는 기관, 주, 군, 시, 하부기관(동) 등의 기관의 자료를 구매하거나 입수하여야 한다.</p> <p>(c) 상무부장관은 필요로 하는 통계의 품질 및 범위, 시</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의성, 형식의 일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직접조사를 수행하는 대신에 6조 (a), (b)호에 언급된 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

(13) 독일

<b>개 요</b>	통계작성과 관련된 조항이 개별법(300여개)에 포함 - 특정목적의 통계생산(ex. 센서스법, 행정자료이용법, 통계등록법)과 관련된 법과 일반목적 통계생산 관련법(연방통계법)으로 구분	
<b>관련 법령</b>	경제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사용에 관한 법률(2010)	세무관청 및 연방노동중개청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유한 자료를 연방(각 연방주) 통계청에 최신자료 제출
	건축물, 주택 센서스를 포함, 등록부를 토대로 하는 2011 센서스에 관한 법률(2007)	(등록사무소)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 작성을 위한 정보를 지방통계청에 전달 (연방측량청) 지도제작, 측량을 위하여 각 주 측량청 자료를 검토, 보완하여 연방통계청에 최근자료를 전달 (연방노동청) 사회보험 적용대상 노동자, 실업자 등의 정보 전달

(14) 노르웨이

<b>개 요</b>	- 통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통계청에 행정등록부 자료이용에 관한 권한 부여 · 행정등록부를 소유, 관리하는 행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모든 법인, 사인은 정부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요청시 통계청 제공의무 - 2011년에는 IT 기반 인구등록부를 구축하여 행정자료만을 이용한 센서스를 계획함
<b>관련 법령</b>	-

(15) 스위스

<b>개 요</b>	-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2010년 12월에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표본조사를 통해 행정자료를 보완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여, 연방 통계법과 센서스법을 다년간에 걸쳐서 정비하였음  - 스위스 연방 센서스법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자료수집은 가능한 한, 공적 등록부(official register)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적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
------------	---

	<p>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를 수집 하도록 하고 있음</p> <p>- 센서스법 제4조는 스위스 연방 센서스는 인구대장과 건축물/주택대장 등의 공적등록부와 추출표본에 대한 보완적인 조사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조사방식, 개인식별번호, 품질보장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p>
<p>관련 법령</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1조</p> <p>제1조 (원칙) (1) 스위스의 인구구조와 사회발전에 관한 자료를 연차적으로 또는 그보다 짧은 시점을 주기로 하여 수집한다.</p> <p>(2)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변동</li> <li>b. 가족, 가구, 주택상태</li> <li>c. 노동 및 경제활동</li> <li>d. 건강 및 사회적 변수</li> <li>e. 교육 및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li> <li>f. 인구이동</li> <li>g. 언어, 종교, 문화</li> <li>h. 교통 및 환경</li> <li>i. 건물, 주택 및 통근 또는 통학의 장소</li> </ul> <p>(3) 자료 수집은 가능한 한 공적 등록부(official register)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p> <p>(4) 공적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에 의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p> <p>(3) 보통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로 불리며, 스위스 연방정부의 7명으로 구성된 집행기구로서, 이들은 집단적으로 국가원수로 기능한다. 연방평의회 전체는 스위스 연방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각 평의원은 7개의 집행부(환경.운수.에너지.통신, 외교 재무, 경제, 법무.경찰, 국방.시민보호.스포츠, 내무행정)를 관장하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임무를 순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고 있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4조</p> <p>제4조 (데이터 제공의 원칙) (1) 연방이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그 자료가 연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이 법에 지정된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연방 행정 자료를 말함)에 대해서는, 연방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수집 (직접조사, 간접조사 또는 관찰과 측량에 의한 조사)을 실시하지 말아야 마땅하다.</p>

		<p>(2) 연방통계에 필요한 자료가 제3자, 곧 주 자치체, 기초자치체 또는 공법상의 여타 법인 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이 소장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간접조사).</p> <p>(3)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배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인 (natural person)과 법인 (juristic person)에 대한 조사는 문항의 수나 종류가 필요한 만큼 최소화(necessary minimum)하여야 한다.</p> <p>(4)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대상자, 조사기관을 공지하여야 한다.</p> <p>(5)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공법상의 단체, 사무소와 여타 법인은 연방통계청에 보상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5조</p>	<p>제5조 (공적 등록부의 조사) (1) 공적 등록부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 가구통계 및 건축물통계, 주택통계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달방식 또는 자료기억매체 (data carrier) 방식으로 전달된 다음의 공적 등록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연방, 주 자치체, 기초자치체의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li> <li>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li> </ul> <p>(2) 자료의 전달은 다음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2006년 6월 24일의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li> <li>b. 연방정부의 주택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규정</li> </ul> <p>(3) 연방, 주자치체, 기초자치체 표준화된 공적 인구대장이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를 관리하는 부서는 표준화된 등록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그 자료를 정해진 마감 일자에 송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일체의 상세사항에 대한 지침의 공표를 위임할 수 있다.</p>
	<p>스위스 연방센서스법 제12조</p>	<p>제12조 (자료관리, 자료보호, 비밀준수 조항) (1) 스위스 연방통계청이 센서스 표준 프로그램의 자료를 관리한다.</p>

		<p>(2) 추가적 주문에 의한 자료는 연방통계청과 발주를 한 주 자치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p> <p>(3) 공적 등록부와 표본조사에서 인구센서스의 자료가 작성되면, 그 자료는 익명화 조치를 하고,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er)는 삭제한다. 공적 등록부 표준화 관련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소명부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p> <p>(4) 인구센서스의 자료는 사적인 아닌 목적, 특히 학술 연구, 정책기획,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센서스의 최종결과는 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공표가 가능하다.</p> <p>(5)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자료보호, 특히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조사대상자의 권리, 자료획득 후 조사표의 폐기방식에 상세한 규정을 공표한다.</p> <p>(6) 인구센서스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은 형법 제320조(직업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형사 처분 조항)에 의거하여 직업상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다.</p>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법률	거주 및 기타 등록부의 표준화에 관한 연방법(2006)

□ 시행령

- 신법 제43조제6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센서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사항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할 사항이 없음

12. 제44조 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제44조(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① 제43조 각 호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주기·조사기준일·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정이유

- 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일정한 부담을 주고 재정소요도 많으므로 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급적 법령에서 명시하도록 하되 최소한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현재 「통계법」의 하위법령에 나와 있는 총조사 방법에 상응하는 등록센서스의 실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제43조 설명 참조

□ 타법과의 관계

- 제43조 설명 참조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현장조사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통계법」 규정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서 규정함이 타당

□ 관련 국내 입법례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

총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며,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 조사의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23조(등록센서스 주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 : 5년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 : 5년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 : 5년
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 : 3년
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 : 5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사기준연도는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센서스 공지)** 통계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센서스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등록센서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13. 제45조 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

**제4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센서스 관련 행정자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센서스 실시 기준일에 맞추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등록센서스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행정자료 보유 시스템의 변동, 행정자료 관리체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등록센서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이유

- 종전에 각종 행정자료 작성에 있어 허위자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이는 법령상 신고의무자의 신고해태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자료 생산기관으로서도 한계가 있으나 총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제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등록센서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품질관리의 일종이지만 총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 따로 규정)

#### □ 기대효과

- 제43조 설명 참조

#### □ 타법과의 관계

- 제43조 설명 참조

####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일제정비작업을 수행하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 품질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규정이고 실제 일제정비를 자주 실시하여 왔음(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응할 의무도 상당한 부담 초래)

- 제3항은 등록센서스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총칙 통계청장의 책무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 시행령

**제2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 ① 통계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자료제공기관에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V. 제5장 보칙

### 1. 제46조 비밀준수

**제46조(비밀준수)**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던 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관련 보안유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시 형사처벌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형법 등의 비밀 관련 조항에 대한 특칙으로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충 중복의 문제는 없음

#### □ 관련 국내 입법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47조 금지행위

**제47조(금지행위)** 행정자료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행정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제1호에서 제3호 각 호를 위반할 의도가 있거나 시도하는 행위

□ 제정이유

- 이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처벌조항과 중복 소지를 제거하고, 과태료는 이 법의 준수 의무자가 대부분 통계청장임을 감안하여 규정하지 아니함

□ 기대효과

- 신법의 집행과정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형법 등과 충돌 소지 없음

□ 문제점 또는 검토의견

- 다른 조문은 통계청장의 대책마련 의무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만 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은 어색하다는 주장 ⇨ 통계청장의 의무도 필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3. 제48조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

제48조(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직원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통계청장의 행정적 조치수단으로 규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기대효과

- 신법의 집행과정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행정적 조치로써 타법과의 충돌 소지 없음

#### 4.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이유

- 통계작성기관의 범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뇌물죄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신분범으로서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여하는 민간인 신분의 사람들에게 관련업무수행의 윤리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형법의 취지를 보완한 것이고 충돌 소지 없음

## VI. 제6장 벌칙

### 1.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국가통계작성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업무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정이유

- 행정자료 변경은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로 규율될 수도 있지만 행정자료 관련 범죄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

#### □ 타법과의 관계

- 형법의 벌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내용 없음

### 2.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① 제29조, 제30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정이유

- 각 해당 조항 설명 참조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형법의 벌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내용 없음

### 3. 제52조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이유

- 양벌규정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름

□ 기대효과

- 행정자료 이용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

□ 타법과의 관계

- 일반적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서 타법과의 모순 저촉사항 없음

## [별표]

## 필요적 행정자료 제공범위(법 제10조제1항 관련)

번호	행정자료 제출기관	행정자료명
1	외교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거주자 자료
2	외교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 자료
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4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5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수감자 자료
6	국방부	「병역법」에 따른 현역 자료
7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료
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명부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등록 자료
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대장
13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자료
14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15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자료
16	해양수산부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17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허가대장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자현황 신고자료
19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개인종합소득세 자료, 사업소득세 자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	국세청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신고 자료
21	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자료
22	경찰청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원 자료
23	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24	법원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 자료
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료
2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자료
27	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자료
28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
29	보험개발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료 및 보험금 관련 자료
3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보험지급액 자료
31	광역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자료
32	기타	그 밖에 행정자료 이용 대상이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자료



## 필요적 행정자료 제공범위(시행령 제5조 관련)

번호	행정자료 제출기관	행정자료명
1	법무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른 경비교도대원 자료
2	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의무소방대원 자료
3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료
4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료
5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광산별 화학사용량 자료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의 천연가스매장량 및 가격에 관한 자료
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공사의 광물탐사비용
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근로자명부
9	농림축산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쇠고기 이력제 자료
10	기타	한국전력의 사업체별 전력 판매량
11	기타	각종 협회의 회원사별 통계자료
12	기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자료



---

# 별첨

- [별첨 1]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 [별첨 2]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별첨 3]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별첨 4] 3단 비교표
  - [별첨 5]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별첨 6]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별첨 1]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란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2.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문서·대장 및 도면으로서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 이용”이란 국가통계 작성에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계등록부”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기준에 맞게 통계적 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
5.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시스템(이하 “통계등록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제37조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행정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마.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 그 밖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통계적 처리”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의 비어있는 항목의 보완·대체, 행정자료의 연계·결합, 행정자료의 집계·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료처리 행위를 말한다.
8. “등록센서스”란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식별번호”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 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번호
  - 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10. “대체번호”란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후 통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11. “행정자료 표준화”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및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연계된 다른 행정자료간의 상호 결합 분석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관리”란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통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하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 중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계법」을 적용한다.

**제5조(통계청장 등의 책무)** ① 통계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그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과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통계작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 ① 행정자료 이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행정자료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분쟁의 조정
7.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민간인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1.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다. 행정자료 이용 및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행정자료 이용의 구체적 방법과 이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4.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협력

### 제1절 행정자료의 제공

**제9조(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 제공의 범위·시기·방법 등
2. 식별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3. 행정자료의 갱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

**제10조(행정자료의 제공요청)** ① 통계청장은 제9조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심사·승인·협의를 거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이 제3장에 따른 보안 및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9조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정자료의 긴급제공)** ① 통계청장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한 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긴급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긴급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 긴급자료요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미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조

**제15조(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 ①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

에 대하여 행정자료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분류체계·식별번호 및 행정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의 속성
2. 행정자료의 처리기준
3. 행정자료 표준화의 현행화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행정자료를 기재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표준분류 사용)**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의 작성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표준,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별표의 행정자료와 관련 있는 서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식을 정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①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서식 등을 통한 행정자료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통계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식을 개정하거나 서식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 이행여부에 관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와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기법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여 통계작성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적 기법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과 제2항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 품질진단 그 밖에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행정자료 활용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가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자체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관간 협조)** ① 통계청장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구를 행정서식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

**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 통계청장은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 ①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화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조(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없다.

**제28조(행정자료의 파기)**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계속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문서자료를 가늘게 자르거나 컴퓨터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라 행정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한 후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보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훼손·침해·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계작성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행정자료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5. 통계청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6. 행정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그 밖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한 행정자료에 대하여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 제1절 행정자료의 용도 및 통계적 처리

**제33조(행정자료의 용도)** ①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공한 행정자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2. 국가통계의 작성
3. 제36조에 따른 통계작성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조사대상 또는 항목에 대하여 「통계법」 제26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방법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시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통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을 통해서는 해당 통계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장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  
②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 ①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통계등록부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계등록부시스템의 보호 및 내부시스템 구축
3.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총괄
4.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 관련 업무지원
5. 그 밖에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위한 관련업무

**제39조(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재분류하는 업무
2.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품질 점검·향상에 관한 업무
3.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통계활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행정자료의 가공업무
4.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절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및 이용

- 제40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① 통계청장은 제2장 제1절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등록부시스템 안에 구축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 포함되었던 행정자료를 제공하였던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을 받은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개요 및 필요성
2.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
3. 이용기간
4.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표
5. 통계적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① 통계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은 해당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시키거나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이 끝난 후에는 이용을 통하여 작성된 통계표만을 승인받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등록센서스 실시

**제43조(등록센서스의 대상)** 등록센서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
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
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센서스

**제44조(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① 제43조 각 호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주기·조사기준일·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센서스 관련 행정자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센서스 실시 기준일에 맞추

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등록센서스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행정자료 보유 시스템의 변동, 행정자료 관리체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등록센서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46조(비밀준수)**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던 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금지행위)** 행정자료를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행정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제1호에서 제3호 각 호를 위반할 의도가 있거나 시도하는 행위

**제48조(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직원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국가통계작성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업무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① 제29조, 제30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등록센서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3호의 경제등록센서스 및 같은 조 제5호의 농림어업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을 “통계 개발·개선 계획, 관련 행정자료의 통계적 이용 가능성 등”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 「통계법」 ”을 “ 「통계법」 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필요적 행정자료 제공범위(법 제9조 등 관련)

번호	행정자료 제출기관	행정자료명
1	외교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에 따른 재외공관거주자 자료
2	외교부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 자료
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4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출입국 자료
5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도소수감자 자료
6	국방부	「병역법」 에 따른 현역 자료
7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료
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에 따른 축산업등록명부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원부
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등록 자료
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대장
13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자료
14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15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자료
16	해양수산부	「어선법」 에 따른 어선원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허가대장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자현황 신고자료
19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개인종합소득세 자료, 사업소득세 자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20	국세청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신고 자료
21	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자료
22	경찰청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원 자료
23	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24	법원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 자료
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료
2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자료
27	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자료
28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
29	보험개발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료 및 보험금 관련 자료
3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보험지급액 자료
31	광역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자료
32	기타	그 밖에 행정자료 이용 대상이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자료

[별첨 2]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이란 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통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행정자료 이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소관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계청장은 제4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통계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통계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의)** ① 법 제9조에 따른 협의는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당사자 외에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끝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대상 행정자료)** 법 별표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자료”란 별표의 행정자료를 말한다.

**제6조(행정자료 제공방법)**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시스템과 해당 공공기관 간의 정보시스템으로서 법 제3장에 따른 정보보호조치가 갖추어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 2. 통계청이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가 수록된 문서·대장·도면 등을 수신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
- 3. 행정자료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이동저장장치를 수령하고 그 자료를 통계등록부시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

**제7조(행정자료 제공거부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행정자료 제공 점검)** 통계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검요청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청장이 법에 따라 요청한 행정자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불성실 제공이 반복되어 통계작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식별번호 부여)** 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번호를 부여할 행정자료의 범위와 식별번호 부여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요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표준화 점검 및 진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이행여부의 점검요청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점검요청을 받고서도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과 표준화에 관한 개선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자료 품질관리)** ①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시켜 통지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을 권고함에 있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 수립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필수적인 세법상의 서식에 있는 업종분류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와 통계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서는 통계작성 일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와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관련 법령,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자체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기관간 협조)**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 또는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출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유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정보 또는 자료 유출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련문구의 기재요청을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 통계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 및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개인정보 처리지침)**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조치 교육)** ① 통계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유출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담당한 사람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자료 이용 통계 대행작성)** ① 법 제36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작성의 대행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행하려는 통계의 개요, 대행요청 사유 및 소요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종전의 통계작성 실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20일 이내에 대행작성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 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계등록부시스템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등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관련한 사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① 통계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② 지원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을 실시한 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먼저 해당 모집단 자료의 구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41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통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승인여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4조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센서스 주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 : 5년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 : 5년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 : 5년
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 : 3년
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 : 5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사기준연도는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센서스 공지)** 통계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센서스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등록센서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 ① 통계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자료제공기관에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부칙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필요적 행정자료 제공범위(시행령 제5조 관련)**

번호	행정자료 제출기관	행정자료명
1	법무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른 경비교도대원 자료
2	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의무소방대원 자료
3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료
4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료
5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광산별 화학사용량 자료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의 천연가스매장량 및 가격에 관한 자료
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공사의 광물탐사비용
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근로자명부
9	농림축산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쇠고기 이력제 자료
10	기타	한국전력의 사업체별 전력 판매량
11	기타	각종 협회의 회원사별 통계자료
12	기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자료

[별첨 3]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관련 조정)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는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행정자료 결함 등에 대한 통지) 통계청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크리스트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적처리기록부) 영 제17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통계등록부시스템 운영기록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통계지원센터 출입증표)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3단 비교표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b>제1장 총칙</b>		
<b>제1조(목적)</b> 이 법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정의)</b>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란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통계를 말한다.</p> <p>2.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문서·대장 및 도면으로서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p> <p>3. “행정자료 이용”이란 국가통계 작성에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4. “통계등록부”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기준에 맞게 통계적 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p> <p>5.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시스템(이하 “통계등록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제37조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6. “공공기관”이란 행정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p> <p>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마.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p> <p>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p> <p>사. 그 밖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자료를 다수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7. “통계적 처리”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의 비어있는 항목의 보완·대체, 행정자료의 연계·결합, 행정자료의 집계·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료처리 행위를 말한다.</p> <p>8. “등록센서스”란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9. “식별번호”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p> <p>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p> <p>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p> <p>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p>	<p>* 현재로서는 규정할 기관이 없음(한전은 공사로서 특수법인, 여러 협회들도 대부분 특수법인)</p> <p>*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p> <p><b>제2조(공공기관)</b>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0000를 말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번호</p> <p>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p> <p>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번호</p> <p>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p> <p>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p> <p>10. “대체번호”란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한 후 통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p> <p>11. “행정자료 표준화”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 및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연계된 다른 행정자료간의 상호 결합 분석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일정한 기</p>	<p>* 현재로서는 규정할 사항이 없음</p> <p>*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p> <p><b>제2조(식별번호)</b> 법 제2조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0000를 말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p> <p>12. “품질관리”란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통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3조(적용대상)</b> 이 법은 통계청장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하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 중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① 이 법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의 작성에 관하</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②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계법」을 적용한다.</p>		
<p><b>제5조(통계청장 등의 책무)</b> ① 통계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그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과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통계작성에 협력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6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b> ① 행정자료 이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li> <li>2.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의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li> <li>4. 제42조의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li> <li>5. 행정자료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li> <li>6. 행정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분쟁의 조정</li> </ol>	<p><b>제2조(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이란 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통계청장을 말한다.</p> <p>② 법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자료 이용·표준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7.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민간인 위원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p> <p>가.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p> <p>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p>	<p>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⑧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p> <p>다. 행정자료 이용 및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7조(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p>	<p><b>제3조(행정자료 이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b> ① 통계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 이용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중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li> <li>2.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li> <li>3. 행정자료 이용의 구체적 방법과 이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제공방법</li> <li>4.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ol>	<p>관의 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소관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5.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p> <p>6. 등록센서스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행정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p> <p>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 연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통계청장은 제4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법제7조제5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⑥ 통계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⑦ 통계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8조(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작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b>제2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협력</b>		
<b>제1절 행정자료의 제공</b>		
<p><b>제9조(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 사전협의)</b>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 제공의 범위·시기·방법 등</li> <li>2. 식별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li> <li>3. 행정자료의 갱신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li> </ol>	<p><b>제4조(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의)</b> ① 법 제9조에 따른 협의는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당사자 외에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통계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협이가 끝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p>	<p><b>제2조(협의 관련 조정)</b>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는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10조(행정자료의 제공요청)</b> ① 통계청장은 제9조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자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료 제공에 관한 심사·승인·협의를 거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5조(제공대상 행정자료)</b> 법 별표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자료”란 별표의 행정자료를 말한다.</p>	
<p><b>제11조(행정자료의 제공)</b>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p>	<p><b>제6조(행정자료 제공방법)</b>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p>	<p>、</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시스템과 해당 공공기관 간의 정보시스템으로서 법 제3장에 따른 정보보호조치가 갖추어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li> <li>2. 통계청이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가 수록된 문서·대장·도면 등을 수신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li> <li>3. 행정자료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이동저장장치를 수령하고 그 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li> </ol>	
<p><b>제12조(행정자료 제공의 거부와 중지) ①</b>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p>	<p><b>제7조(행정자료 제공거부 사유)</b>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개인과 기업 등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이 제3장에 따른 보안 및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9조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li>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li>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li> </ol>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4.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p>	
<p><b>제13조(행정자료의 긴급제공)</b> ① 통계청장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한 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긴급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긴급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 긴급자료요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미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b>제14조(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점검)</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p>	<p><b>제8조(행정자료 제공 점검)</b> 통계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검요청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청장이 법에 따라 요청한 행정자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불성실 제공이 반복되어 통계작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절 행정자료 제공 관련 협조</b></p>		
<p><b>제15조(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한 통계청장의 조치 등)</b> ① 통계청장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행정자료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행정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분류체계·식별번호 및 행정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의 속성</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행정자료의 처리기준</p> <p>3. 행정자료 표준화의 현행화 시기 및 방법</p> <p>4. 그 밖에 행정자료를 기재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p>		
<p><b>제16조(표준분류 사용)</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의 작성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표준,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별표의 행정자료와 관련 있는 서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식을 정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7조(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b> ① 통계청</p>	<p><b>제9조(식별번호 부여)</b> ① 통계청장은 법 제</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1항의 행정자료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번호를 부여할 행정자료의 범위와 식별번호 부여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요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p>	
<p><b>제18조(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서식 등을 통한 행정자료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통계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식을 개정하거나 서식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19조(행정자료 표준화에 대한 점검)</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이 법에 따른 행정자료 표준화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표준화 이행여부에 관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요청 및 통보와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표준화 점검 및 진단)</b>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이행여부의 점검요청은 별표의 행정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점검요청을 받고서도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과 표준화에 관한 개선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b>제20조(행정자료의 품질관리)</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기법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여 통계</p>	<p><b>제11조(행정자료 품질관리)</b> ①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시켜 통지할 수 있다.</p>	<p><b>제3조(행정자료 결합 등에 대한 통지)</b> 통계청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크리스트에 의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작성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통계적 기법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행정자료의 결함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자료의 최신성·정확성·시의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과 제2항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자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에게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p>	<p>② 통계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을 권고함에 있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 수립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필수적인 세법상의 서식에 있는 업종분류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⑥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개선계획의 수립, 품질진단 그 밖에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1조(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b>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행정자료 활용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가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자체교</p>	<p><b>제12조(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b>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와 통계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교육에서는 통계작성 일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와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에 관한 관련 법령,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p> <p>③ 통계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자체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2조(기관간 협조)</b> ① 통계청장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구를 행정서식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기관간 협조)</b> ①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 또는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출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유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정보 또는 자료 유출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련문구의 기재요청을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3장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b></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23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계획 수립)</b>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료의 보안 및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14조(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b> 통계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자료 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2. 관리책임자 및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li> <li>3.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li> <li>4. 통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행정자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24조(개인정보 처리지침 마련)</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b>제15조(개인정보 처리지침)</b>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li> <li>3.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li> <li>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li> <li>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i> </ol> <p>②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p>	
<p><b>제2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교육)</b> 통계청장은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p>	<p><b>제16조(정보보호조치 교육)</b> ① 통계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유출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한다.	<p>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p>	
<p><b>제26조(식별번호의 암호화)</b> ①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제2조제1항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암호화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로 환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아니한 식별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b>제27조(대체번호를 이용한 연계의 제한)</b>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대체번호를 이용하여 개별 행정자료를 결합</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시키거나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없다.</p>		
<p><b>제28조(행정자료의 파기)</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계속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없이 파기(문서자료를 가늘게 자르거나 컴퓨터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라 행정자료를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한 후 해당 행정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p>		
<p><b>제29조(비밀보호)</b>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훼손·침해·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30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제3자 이용 등 제한)</b>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계작성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제3자가 이용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31조(행정자료 유출 등의 고지)</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출된 행정자료의 항목</li> <li>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li> <li>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i> <li>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li> <li>5. 통계청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절차</li> <li>6. 행정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그 밖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가 유출된 경우</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3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 등 확인)</b>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한 행정자료에 대하여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4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b></p>		
<p><b>제1절 행정자료의 용도 및 통계적 처리</b></p>		
<p><b>제33조(행정자료의 용도)</b> ①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공한 행정자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li> <li>2. 국가통계의 작성</li> <li>3. 제36조에 따른 통계작성 대행</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li> </ol>	<p>*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할 사항 없음</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조사대상 또는 항목에 대하여 「통계법」 제26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b>제34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b>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처리를 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7조(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b> 행정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4조(통계적처리기록부)</b> 영 제17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p>
<p><b>제35조(행정자료 우선 이용 통계작성 등)</b></p> <p>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방법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시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통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36조(행정자료 이용 통계의 대행작성) ①</b>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을 통해서는 해당 통계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장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대행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8조(행정자료 이용 통계 대행작성) ①</b>                      법 제36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작성의 대행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행하려는 통계의 개요, 대행요청 사유 및 소요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종전의 통계작성 실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20일 이내에 대행작성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p>	
<p><b>제2절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b></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37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p> <p>②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9조(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운영)</b>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 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통계등록부시스템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등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관여한 사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5조(통계등록부시스템 운영기록부)</b>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b>제38조(통계등록부시스템 관리책임관)</b> ① 통계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통계등록부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통계등록부시스템의 보호 및 내부시</li> </ol>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스텝 구축</p> <p>3.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총괄</p> <p>4. 통계등록부시스템의 이용 관련 업무 지원</p> <p>5. 그 밖에 통계등록부시스템을 위한 관련업무</p>		
<p><b>제39조(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b>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재분류하는 업무</p> <p>2.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품질 점검·향상에 관한 업무</p>	<p><b>제20조(통계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b> ① 통계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통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p> <p>② 지원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을 실시한 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p>	<p><b>제6조(통계지원센터 출입증표)</b>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통계활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행정자료의 가공업무</p> <p>4.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업무</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출입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b>제3절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및 이</b></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용		
<p><b>제40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의 구축) ①</b>                      통계청장은 제2장 제1절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통계등록부시스템 안에 구축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b>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 포함되었던 행정자료를 제</p>	<p><b>제21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 ①</b>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먼저 해당 모집단 자료의 구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41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p>	<p><b>제7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 신청서)</b>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와 같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공하였던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을 받은 통계청장 외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이용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개요 및 필요성</li> <li>2.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li> <li>3. 이용기간</li> <li>4.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표</li> <li>5. 통계적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li> <li>6.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요구하는</li> </ol>	<p>사항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통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승인여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사항</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b></p> <p>① 통계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p>	<p><b>제22조(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b></p> <p>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통계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행정자료 이용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p> <p>2. 법 제24조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p> <p>3. 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은 해당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시키거나 연계함으로써 특성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p> <p>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이 끝난 후에는 이용을 통하여 작성된 통계표만을 승인받아 반출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게 할 수 있다.</p> <p>④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 이용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따라야 한다.</p> <p>⑤ 그 밖에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절 등록센서스 실시</b></p>		
<p><b>제43조(등록센서스의 대상)</b> 등록센서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li> <li>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li> <li>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li> </ol>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p> <p>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센서스</p>	<p>* 제6호 위임사항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할 사항이 없음</p>	
<p><b>제44조(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b></p> <p>① 제43조 각 호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주기·조사기준일·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p>	<p><b>제23조(등록센서스 주기)</b>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등록센서스 : 5년</li> <li>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등록센서스 : 5년</li> <li>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등록센서스 : 5년</li> <li>4. 사업체모집단 파악을 위한 전국사업체등록센서스 : 3년</li> <li>5. 농가·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li> </ol>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등록센서스 : 5년</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사기준연도는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p> <p>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센서스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4조(등록센서스 공지)</b> 통계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센서스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등록센서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통계청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p>	
<p><b>제4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의무)</b>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센서스 관련 행정자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센서스 실시 기준일에 맞추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등록센서스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행정자료 보유 시스템의 변동, 행정자료 관리체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그밖에 등록센서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5조(등록센서스에 대한 협조)</b> ① 통계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제공된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자료제공기관에 행정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b>제5장 보칙</b>		
<p><b>제46조(비밀준수)</b>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던 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47조(금지행위)</b> 행정자료를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행위</li> <li>2. 업무상 알게 된 행정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i> <li>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유</li> </ol>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출하는 행위</p> <p>4. 제1호에서 제3호 각 호를 위반할 의도가 있거나 시도하는 행위</p>		
<p><b>제48조(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등)</b> ① 통계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직원이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b>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b>제6장 벌칙</b></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50조(벌칙)</b> 국가통계작성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업무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1조(벌칙)</b> ① 제29조, 제30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47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2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제등록센서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b> 제43조제3호의 경제등록센서스 및 같은 조제5호의 농림어업등록센서스의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계법」</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을 “통계 개발·개선 계획, 관련 행정자료의 통계적 이용 가능성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으로 한다.</p> <p>제24조를 삭제한다.</p> <p>제4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p> <p>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8조제1항제1호중 “ 「통계법」 ”을 “ 「통계법」 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한다.</p>		



[별첨 5]

##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I. 개요

□ 행정자료 이용의 필요성 및 배경

○ 현장조사의 어려움 심화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출입통제 주택 증가 등 가구·주택구조의 변화로 조사원의 응답자 접근성이 약화됨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추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인 가구수(천가구)	1,642	2,224	3,171	4,142
비율(%)	12.7	15.5	20.0	23.9
노령인구(천명)	2,640	3,372	4,365	5,425
비율(%)	5.9	7.3	9.3	11.3
공동주택(천호)	4,525	6,497	8,754	10,426
비율(%)	49.2	59.3	66.2	71.0

-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업의 경영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응답기피 현상이 현장조사를 더욱 어렵게 함

현장조사 환경의 악화	구체적 내용
가구구조의 변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간 방문이 필요한 주간 부재가구 증가 -고령화, 핵가족화 영향으로 고령자 부부가구 및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의 응답능력 취약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b>주택구조의 변화</b>	-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및 고급 주택단지 증가로 조사원의 가구접근이 곤란한 지역 증가 - 단독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은 감소하고 조사대상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증가
<b>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식 강화</b>	- 사생활이 중요시되어 외부인의 가구방문 및 개인·가족의 정보 노출을 거부하는 경향 증대 - 가구방문을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 개발 및 조사된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통계조사 비용 및 응답부담의 증가

-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됨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조사원인건비(원)	28,270	36,750	42,660	46,000

- 통계조사 증가, 조사항목 확대 등으로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이 가중됨
- 특히, 단기 통계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응답부담 감소,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통계수요의 다양화 및 신뢰도 높은 통계의 필요

-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통계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계수요조사결과 (총 요구건수)	96	108	94	113

- 임금근로자 일자리 통계, 기업생멸 행정통계와 같이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국회 및 타 행정부처에서 일자리통계,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귀농인통계, 귀촌인통계, 맞벌이가계동향, 소상공인통계, 고령가구 소득원천통계, 가구소득동향, 소득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 요구가 있었으며 일부 신규 행정통계로 개발함

○ 행정자료 이용 여건 개선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4대 사회보험자료,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가 전산화되고 정비되어 통계에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증가됨
-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 및 통합정보서비스가 가능함
- IT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 기반 조성으로 행정자료를 통계생산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정부 3.0 시대를 맞아 행정자료의 효율적 이용 요구 증대

-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이 핵심인 “정부 3.0 시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자료 보유기관간 공공자료 이용에 관한 협업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구현함

○ 국제적 추세

- 인구총조사 등 대규모 조사에 전통적인 조사방법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 센서스 등 새로운 통계작성방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
- 또한,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응답부담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자료 이용은 세계적인 트렌드임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 유엔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5원칙 : 비용-효율성의 원칙) : “통계자료는 통계조사나 행정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며 이때 통계기관은 통계품질, 시의성, 비용 및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존통계의 조사항목을 대체하는 경우와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편익을 구하고자 함

- 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용 편익을 분석함

- 1유형 : 1년 단위 조사

예)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 2유형 : 행정통계

예) 기업생명통계조사,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귀농인통계

- 3유형 : 다년도 조사

예)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 1유형 비용 편익 분석

-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된 전체 현장조사원 도급비를 기준으로 조사항목별 조사비용을 소요비용으로 구함

- \* 통계청 본청 및 지방청 지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장조사원 도급비를 포함하여 단순히 통계청 내에서의 비용편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비용 편익을 구하고자 하였음

- 응답부담의 경우 현장조사표를 분석하여 조사소요시간을 산정하여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에 따른 비용을 곱해 구함
-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조사원 도급비 및 응답부담을 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함
-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따로 산정하지 않음
- \* 현장조사 소요비용 중 현장조사원 도급비만을 고려하였으므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항목을 대체하는 비용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계산된 편익이 실제의 편익 보다 적지는 않을 것임

○ 2유형 비용 편익 분석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면서 소요된 비용 전액을 소요비용으로 구함
- 조사대상 및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현장조사원 도급비를 추정하여 산출함
- 추정된 현장조사원 도급비 및 응답부담을 더해 행정통계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뺀 차액을 비용편익으로 분석함

○ 3유형 비용 편익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총조사의 경우 5년의 주기에 걸쳐 다년간 이루어짐
-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각각의 조사방법, 성격 및 행정자료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산방법을 도출하여 그 편익을 분석하고자 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4회의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사후조사, 본조사 등 조사가 이루어지며, 2015년 본조사의 경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수항목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대체하고 20% 국민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함

\* 행정자료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목(직업, 출생아서 등)을 조사하는 표본조사는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함

- 경제총조사의 경우 2016년 총 50개 항목 중 13개 항목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대체하고자 함

-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상 절감 효과와 응답부담 감축 효과를 통해 그 비용 편익을 분석하며, 경제총조사의 경우 일부 항목 대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와 응답부담 감축 효과를 비용편익으로 분석함

## II. 구체적 조사별 편익 분석

### □ 전국사업체조사

#### ○ 현장조사

		비고
조사대상	3,600,000개	
조사항목	13개 항목	전국공통9항목 <sup>주1)</sup>
연간조사원수	163,637명	총항목수:3,600,000*9 조사원 1명당 1일에 조사 항목수:22*9
조사원 도급비	7,309,664,790원	163,637*44,670 <sup>주2)</sup>
항목당 조사 인건비	562,281,906원 <sup>주3)</sup>	7,309,664,790/13

주1) 전국공통9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주2)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원인건비 44,670원을 기준으로 함

주3)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봄/소수점 이하 절사함

○ 응답부담

		비고
조사대상	3,600,000개	
조사항목	13개 항목	
조사소요시간	0.2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2,190원	8,763 <sup>주1)</sup> *0.25
총 응답부담	7,884,000,000원	3,600,000*2,190
1항목 당 응답부담	606,461,538원 <sup>주2)</sup>	7,884,000,000/13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주2)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봄/소수점 이하 절사함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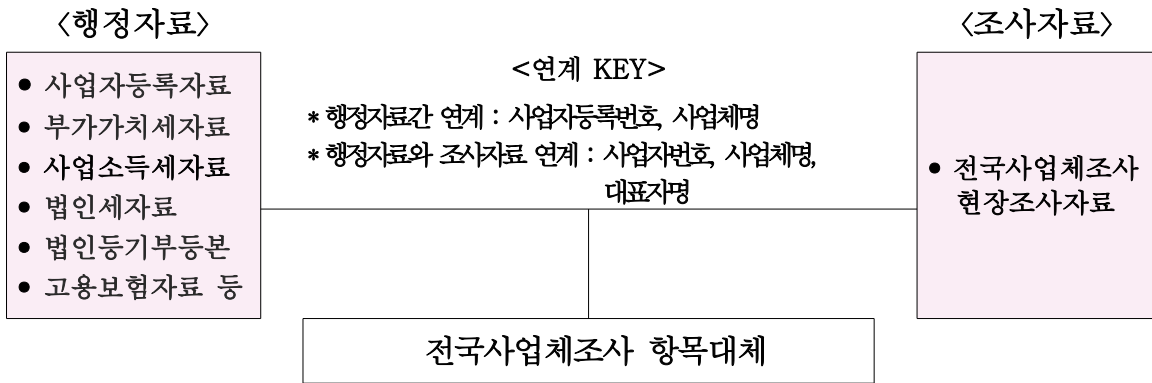
행정자료 이용	현장조사 도급비 감축 (a)	응답부담 감축 (b)	비용 편익 (a+b)
1항목 대체	812,184	606,461	1,418,645
2항목 대체	1,624,369	1,212,922	2,837,291
.....	.....	.....	.....
11항목 대체	8,934,024	6,671,071	15,605,095
12항목 대체	9,746,208	7,277,532	17,023,740
13항목 대체	10,558,392	7,883,993	18,442,385

- 위와 같은 비용 편익은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매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현장조사비용 중 현장조사 도급비만을 산정하였으므로 답례품비용, 임차료 등을 고려하면 비용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위의 내용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항목 대체에 관한 편익 분석이며,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자료, 고용보험자료, 공장등록대장 등 여러 행정자료를 통해 기존 조사통계의 검증 및 보완을 할 수 있음

○ 행정자료 이용 계획 추진



-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항목대체를 추진함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보유기관>

행정자료명	자료보유기관	행정자료명	자료보유기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국토교통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자료	
공장등록대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서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전체 13개 항목 중 사업체명, 소재지, 매출액, 사업종류 등 11~13개 항목 대체를 추진함



- 자본금 항목은 폐지하고 종사자수 항목의 대체여부는 추후 검토함

□ 광업제조업조사

○ 현장조사

		비고
조사대상	65,000개	
조사항목	13개 항목	
연간조사원수	18,120명	
조사원 도급비	809,420,400원	44,670원*580명*30일(지자체) 44,670원*80명*9일(지방청)
항목당 조사 인건비	62,263,107원	809,420,400/13

○ 응답부담

		비고
조사대상	65,000개	
조사항목	13개 항목	
조사소요시간	0.4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3,505원	8,763 <sup>주1)</sup> *0.4
총 응답부담	227,825,000원	3,505*65,000
1항목 당 응답부담	17,525,000원 <sup>주2)</sup>	227,825,000/13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주2)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봄/소수점 이하 절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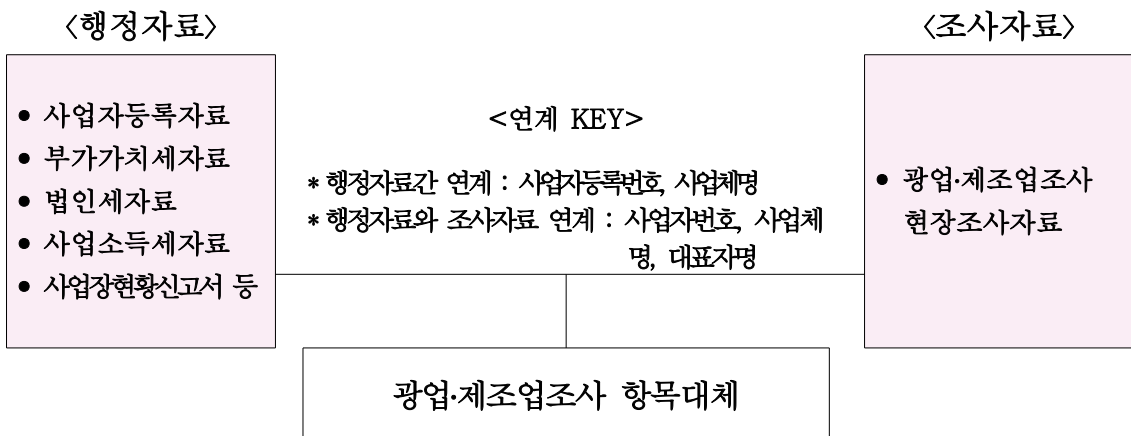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천원)

행정자료 이용	현장조사 도급비 감축 (a)	응답부담 감축 (b)	비용 편익 (a+b)
1항목 대체	62,263	17,525	79,788
2항목 대체	124,526	35,050	159,576
.....	.....	.....	.....
11항목 대체	684,893	192,775	877,668
12항목 대체	747,156	210,300	957,456
13항목 대체	809,419	227,825	1,037,244

- 위와 같은 비용 편익은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매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비용 중 현장조사 도급비만을 산정하였으므로 답례품비용, 임차료 등을 고려하면 비용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위의 내용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항목 대체에 관한 편익 분석이며, 이와 별도로 법인세자료, 사업자등록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여러 행정자료를 통해 기존 조사통계의 검증 및 보완을 할 수 있음

○ 행정자료 이용 계획 추진



-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법인세 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 8종의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항목대체를 추진함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보유기관〉

행정자료 명	자료보유기관	행정자료 명	자료보유기관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부가가치세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세자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소득세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전체 13개 항목 중 단독법인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급여액 6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함

□ 기업생멸통계

○ 현장조사(추정)

		비고
조사대상	3,400,000사업체	
1인당 업무량	20	
연간조사원수	170,000명	3,400,000/20
조사원 도급비	7,593,900,000원	170,000*44,670

○ 응답부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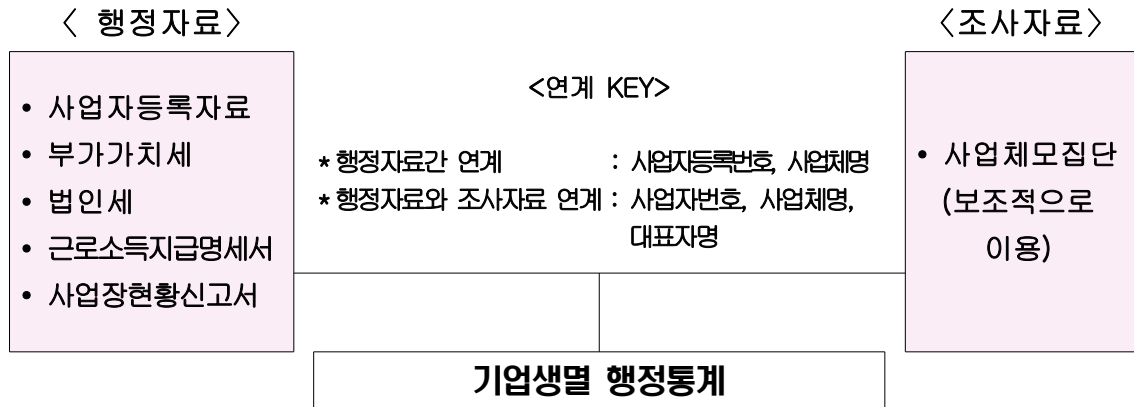
		비고
조사대상	3,400,000사업체	
조사소요시간	0.2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2,190원	8,763 <sup>주1)</sup> *0.25
총 응답부담	7,446,000,000원	3,400,000*2,190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 행정자료 이용하여 기업생명통계 생성



- 기업생명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5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함

- 2012년 12월 27일 신규통계로 개발·공표하였으며 매년 연간통계로 작성·공표할 예정임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생명통계를 생성하는데 소요된 비용

(단위 : 원)

		비고
일반수용비	12,877,000	자문료 보도자료 및 보고서 인쇄
여비	2,059,200	85,800원*3일*4명*2회
사업추진비	1,000,000	25,000원*10명*4회
총액	15,936,200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현장조사		행정자료 이용(c)	비용 편익(a+b-c)
조사원 도급비(a)	응답부담(b)		
7,593,900	7,446,000	15,936	15,023,964

- 기업생멸통계를 행정통계가 아닌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현장조사원 도급비만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 비용 중 조사원 도급비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은 더욱 클 것임
- 이에 반해 기업생멸통계 작성에 산정된 예산은 1,500여만원에 불과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 현장조사(추정)

	비용	비고
조사대상	14,065,000일자리	
연간조사원수	1,758,125명	1인당 1일 업무량 : 8 필요한 조사원수 : 14,065,000/8
조사원 도급비	78,535,443,750원	1,758,125*44,670

○ 응답부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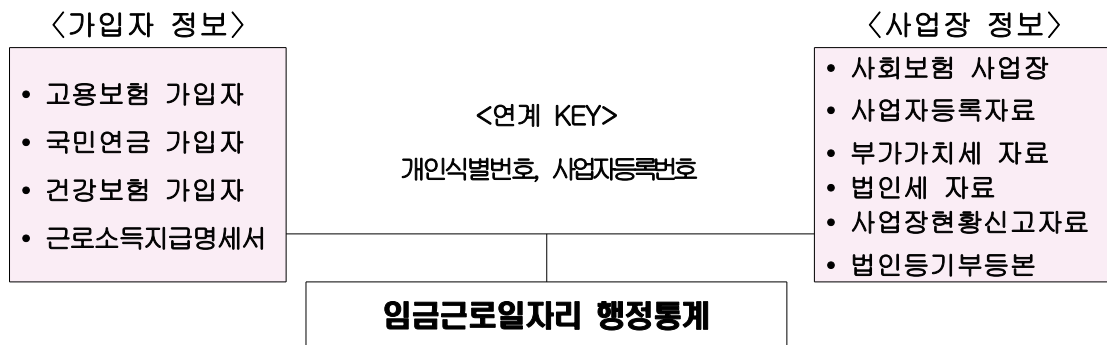
		비고
조사대상	14,065,000일자리	
예상조사소요시간	0.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4,381원	8,763 <sup>주1)</sup> *0.5
응답부담	61,618,765,000원	14,065,000*4,381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 행정자료 이용하여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생성



-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함
- 2012년 6월 29일 신규통계로 개발·공표하였으며 매년 연간통계로 작성·공표할 예정임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를 생성하는데 소요된 비용

	비용	비고
일용임금 (기간제 전산요원 급여)	18,437,000	70,910원*1명*26일*10월
책자(보도자료, 보고서) 인쇄비	1,500,000	3,000원*500부
외부전문가 자문사례비	1,500,000	300,000원*5명*1회
임차료 (자료처리용 pc 임차료)	1,200,000	120,000원*1대*10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업무협의	1,440,000	80,000원*2명*9회

[별첨 5]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간담회	200,000	20,000원*5명*2회
연금지급금	1,844,000	70,910원*1명*(26일*10월)*0.1
<b>총액</b>	<b>26,121,000</b>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현장조사		행정자료 이용(c)	비용 편익(a+b-c)
조사원 도급비(a)	응답부담(b)		
78,535,443	61,618,765	26,121	140,128,087

-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를 행정통계가 아닌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현장조사원 도급비만 7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 비용 중 조사원 도급비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은 더욱 클 것임
- 이에 반해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작성에 산정된 예산은 2,600여만원에 불과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택소유통계

○ 현장조사(추정)

	비용	비고
조사대상	14,144,000가구	
연간조사원수	1,768,000명	1인당 1일 업무량 : 8 필요한 조사원수 : 14,144,000/8
조사원 도급비	78,976,560,000원	1,758,125*44,670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응답부담(추정)

		비고
조사대상	14,144,000가구	
예상조사소요시간	1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2,190원	8,763 <sup>주1)</sup> *0.25
응답부담	30,975,360,000원	14,144,000*2,190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소유통계를 생성하는데 소요된 비용

	비용	비고
일용임금 (기간제 전산요원 급여)	18,437,000	70,910원*1명*26일*10월
책자(보도자료, 보고서) 인쇄비	1,500,000	3,000원*500부
외부전문가 자문사례비	1,500,000	300,000원*5명*1회
임차료 (자료처리용 pc 임차료)	1,200,000	120,000원*1대*10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업무협의	1,920,000	80,000원*3명*8회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간담회	200,000	20,000원*5명*2회
연금지급금	1,844,000	70,910원*1명*(26일*10월)*0.1
<b>총액</b>	<b>26,601,000</b>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현장조사		행정자료 이용(c)	비용 편익(a+b-c)
조사원 도급비(a)	응답부담(b)		
78,976,560	30,975,360	26,601	109,925,319

- 주택소유통계를 행정통계가 아닌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현장조사원 도급비만 7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 비용 중 조사원 도급비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은 더욱 클 것임
- 이에 반해 주택소유통계 작성에 산정된 예산은 2,600여만원에 불과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귀농인통계

○ 현장조사(추정)

	비용	비고
조사대상	690,000가구	
연간조사원수	86,250명	1인당 1일 업무량: 8 필요한 조사원수 : 690,000/8
조사원 도급비	3,852,787,500원	86,250*44,670

○ 응답부담(추정)

		비고
조사대상	690,000가구	
예상조사소요시간	0.2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2,190원	8,763 <sup>千1</sup> *0.25
응답부담	1,511,100,000원	690,000*2,190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 행정자료 이용하여 귀농인통계 생성



- 귀농인의 주소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자료, 신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4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함

- 2012년 12월 7일 신규통계로 개발·공표하였으며 매년 연간통계로 작성·공표할 예정임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귀농인통계를 생성하는데 소요된 비용

	비용	비고
일용임금 (기간제 전산요원 급여)	18,437,000	70,910원*1명*26일*10월
책자(보도자료, 보고서) 인쇄비	1,500,000	3,000원*500부
외부전문가 자문사례비	1,500,000	300,000원*5명*1회
임차료 (자료처리용 pc 임차료)	1,200,000	120,000원*1대*10월

[별첨 5]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업무협의	1,280,000	80,000원*2명*8회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 간담회	150,000	30,000원*5명*1회
연금지급금	1,844,000	70,910원*1명*(26일*10월)*0.1
<b>총액</b>	<b>25,911,000</b>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현장조사		행정자료 이용(c)	비용 편익(a+b-c)
조사원 도급비(a)	응답부담(b)		
3,852,787	1,511,100	25,911	5,337,976

- 귀농인통계를 행정통계가 아닌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현장조사원 도급비만 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 비용 중 조사원 도급비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은 더욱 클 것임
- 이에 반해 귀농인통계 작성에 산정된 예산은 2,500여만원에 불과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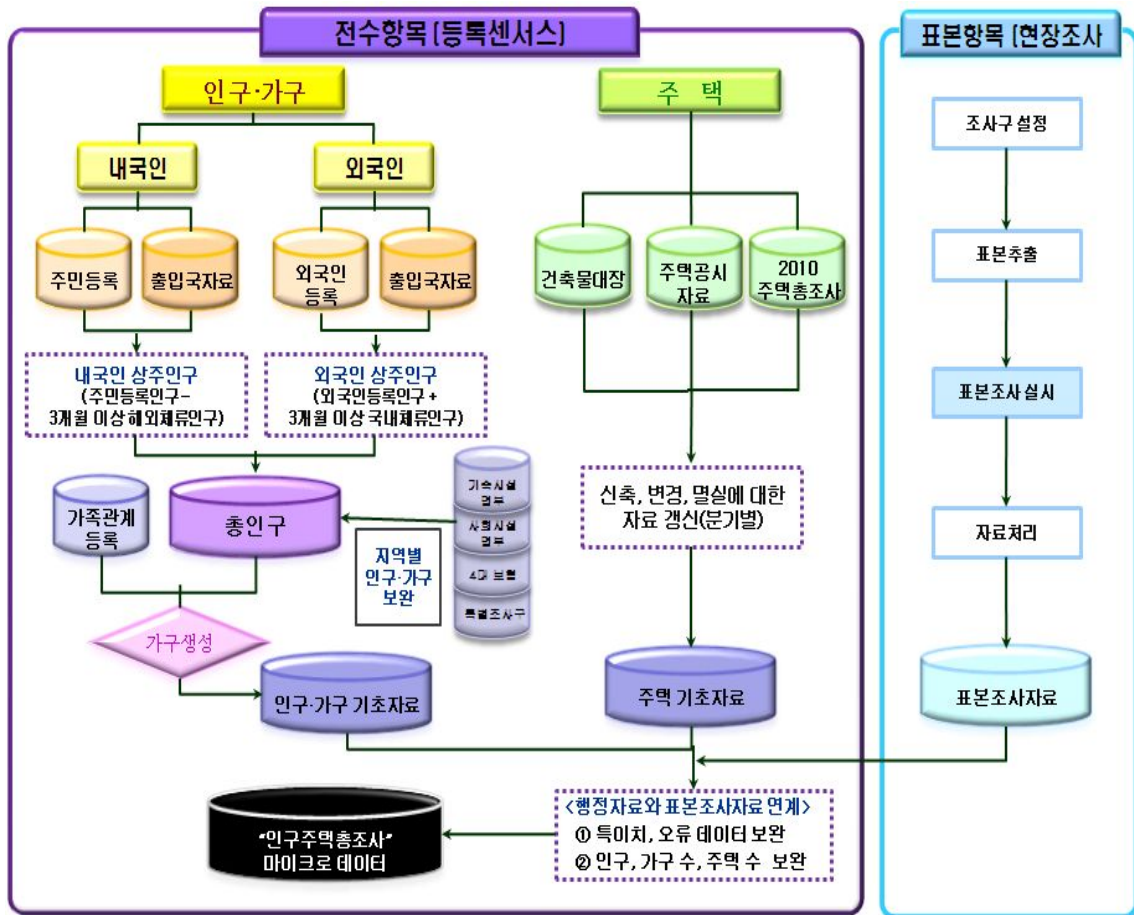
□ 인구주택총조사

○ 행정자료 이용 계획 추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부문(12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항목은 표본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함

\* 12개 항목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 관계, 국적, 입국연월, 본관, 가구구분, 거처종류, 연면적, 건축연도, 대지면적 등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2015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항목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 자료로 대체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20%의 국민만 응답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표본부문은 10% 가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으나, 2015년에는 20% 가구를 조사하여 그 정확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음

○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의 전환

-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4차의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본조사, 사후조사가 이루어지며, 2006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조사주기 전체의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음

2006년	8,817,954,000
2007년	3,430,391,000
2008년	2,914,412,000
2009년	6,167,878,000
2010년	180,820,000,000
<b>총합</b>	<b>202,150,635,000</b>

-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항목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하며 20%의 국민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등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나 그 대상을 축소될 것임
- 그러나 그 대상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그 소요비용의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편익분석은 본조사를 중심으로 산정함
- 본조사의 소요예산은 2010년 1,80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본조사의 소요비용은 인건비 상승, 물품가액의 상승 등을 원인으로 주기별로 약 50%정도 증가추세에 있음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추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추정)
총조사 예산(억원)	539	834	1,290	1,808	2,712
증가율(%)	57.3	54.7	54.7	40.2	50.0
인건비(억원)	510	709	890	1,219	-
비중(%)	86	85	69	67	-

\* 2010년 행정자료 이용 및 인터넷조사 실시 등 조사방법의 변화 모색으로 예산증가율 감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15년 본조사를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으로 할 경우 약 2,7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고 20%의 국민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예산 절감효과는 최소 50%, 약 1,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 전수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대체하더라도 표본조사 대상가구를 10%에서 20%로 늘리게 되므로 예산 절감효과를 50%로 산정함

○ 응답부담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당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대상임
- 2010년 현장조사는 대상자 수 48,580,293명, 가구수 16,156,945가구이며, 조사소요시간은 약15분임
- 이를 통해 응답부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비고
조사대상	16,156,945가구	
예상조사소요시간	0.2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2,190원	8,763 <sup>주1)</sup> *0.25
응답부담	35,383,709,550원	16,156,945*1*2,190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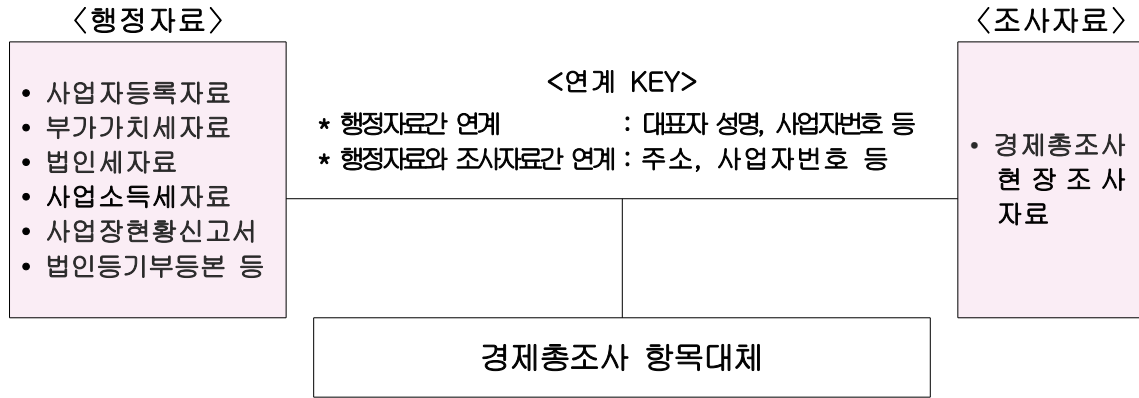
등록센서스 방식 전환 예상예산절감효과(a)	응답부담(b)	비용 편익(a+b)
135,600,000	35,383,709	170,983,709

- 위의 내용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항목 대체에 관한 편익 분석이며,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등 여러 행정자료를 통해 기존 조사통계의 검증 및 보완을 할 수 있음

□ 경제총조사

○ 행정자료 이용 계획 추진

- 대규모 예산 및 인력이 투입되는 경제총조사의 업무효율성, 조사품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자료 이용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행정자료 검토 및 행정자료 이용 연계시스템 구축·이용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음
- \* 5인 미만 소규모사업체 조사방법 개선, 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세, 법인세) 등 행정자료 이용, 행정조직을 이용한 조사, 인터넷 조사 등 비면접조사방식의 도입 및 적용 확대 등으로 조사요원수 감축, 관련 조사용품 제작·인쇄비 등을 절감하고자 함
- 2016년 경제총조사에서는 총50개 항목 중 13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 13개 항목 :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 본지점, 사업의 종류, 사업 실적, 재무제표여부, 매출액 등
- 항목대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연계하고자 함



○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항목 대체

- 경제총조사의 경우 4차의 시험조사, 본조사, 사후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친 조사주기 전체의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음

2007년	257,993,000
2008년	277,441,000
2009년	59,041,000
2010년	3,361,160,000
2011년	52,586,000,000
<b>총합</b>	<b>56,541,635,000</b>

- 경제총조사도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분석은 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함
- 2016년 경제총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세, 법인세)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총50개 항목 중 13개 항목(26%)을 대체하고자 함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항목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장조사 도급비, 조사용품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 경제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40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은 바 있음



(단위 : 천원)

내역	절감 금액
인건비 절감	1,770,000
조사표 인쇄비, 조사용품류 비용 절감	1,250,000
사이버교육 사전이수에 따른 교육일수 감축 등	1,050,000
<b>총 절감효과</b>	<b>4,070,000</b>

○ 현장조사

		비고
조사대상	3,600,000사업체	
조사항목	50개 항목	
연간조사원수	455,696명	조사원 1인당 1일 조사대상 : 7.9대상 3,600,000/7.9
조사원 도급비	20,355,940,320원	455,696*44,670 <sup>주1)</sup>
항목당 조사 인건비	407,118,806원 <sup>주2)</sup>	20,355,940,320/50
13항목 대체에 따른 현장조사원 도급비 절감효과	5,292,544,478원	407,118,806*13

주1) 2011년 경제총조사 현장조사원 1일 도급비 44,670원을 기준으로 함

주2)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봄/소수점 이하 절사함

- 조사항목 50개 중 13항목을 행정자료 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현장조사원 도급비 절감효과는 약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위 금액은 2011년 현장조사원 도급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16년의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응답부담

- 2011년 경제총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자가소비(T), 외국기관(U)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사업체(약360만개)를 대상으로 함
- 모든 사업체 공통의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특성항목 등을 조사함
- 이를 통해 응답부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비고
조사대상	3,600,000사업체	
조사항목	50항목	
예상조사소요시간	0.5시간	
1조사대상 당 응답부담	4,381원	8,763 <sup>주1)</sup> *0.5
총 응답부담	15,771,600,000원	3,600,000*4,381
항목당 응답부담	315,432,000원	15,771,600,000/50 <sup>주2)</sup>

주1)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원화표시)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인당 국민총소득	금액	비고
연간	25,590,000	
일간	70,109	25,590,000/365
시간당	8,763	70,109/8

주2)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봄/소수점 이하 절사함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단위 : 천원)

13항목 대체에 따른 현장조사원 도급비 절감효과(a)	13항목 응답부담(b)	비용 편익(a+b)
5,292,544	4,100,616	9,393,160

- 위의 내용은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항목 대체에 관한 편익 분석이며,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자료, 고용보험자료, 공장등록대장 등 여러 행정자료를 통해 기존 조사통계의 검증 및 보완을 할 수 있음

### Ⅲ. 검토

□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 분석

- 1유형 : 1년 단위 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천원)

행정자료 이용	현장조사 도급비 감축(a)	응답부담 감축(b)	비용 편익(a+b)
1항목 대체	812,184	606,461	1,418,645
2항목 대체	1,624,369	1,212,922	2,837,291
.....	.....	.....	.....
11항목 대체	8,934,024	6,671,071	15,605,095
12항목 대체	9,746,208	7,277,532	17,023,740
13항목 대체	10,558,392	7,883,993	18,442,385

<광업제조업조사>

(단위: 천원)

행정자료 이용	현장조사 도급비 감축 (a)	응답부담 감축 (b)	비용 편익 (a+b)
1항목 대체	62,263	17,525	79,788
2항목 대체	124,526	35,050	159,576
.....	.....	.....	.....
11항목 대체	684,893	192,775	877,668
12항목 대체	747,156	210,300	957,456
13항목 대체	809,419	227,825	1,037,244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4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13개 항목 중 사업체명, 소재지, 매출액, 사업종류 등 11~13개 항목 대체를 추진함.
-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법인세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 8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13개 항목 중 단독법인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급여액 6개 항목 대체를 추진함
- 위와 같은 행정자료 이용 추진 계획에 따라 항목 대체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음
- 계산된 편익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매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조사비용 중 현장조사 도급비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답례품비용, 임차료 등을 고려하면 비용 편익은 더욱 클 것임

○ 2유형 : 행정통계

(단위 : 천원)

	현장조사		행정자료 이용(c)	비용 편익 (a+b-c)
	조사원 도급비(a)	응답부담(b)		
기업생멸통계	7,593,900	7,446,000	15,936	15,023,964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78,535,443	61,618,765	26,121	140,128,087
주택소유통계	78,976,560	30,975,360	26,601	109,925,319
귀농인통계	3,852,787	1,511,100	25,911	5,337,976

- 현장조사 비용은 조상대상수 및 1인당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 행정통계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조사방식으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현장조사 도급비 및 조사에 필요한 물품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반해, 행정통계의 작성 비용은 수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행정자료 이용에 의한 비용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비용 편익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정자료 없이 통계를 작성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생멸통계의 경우 소멸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현재까지 생산된 행정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행정통계를 개발할 수 있음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종의 신규 행정통계를 생산할 경우 매년 22억원의 대체절감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통계청 인력 인건비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그 편익은 더욱 클 것임

**\* 신규 행정통계 생산의 절감효과 추정: 인력 54명, 인건비 매년 22억 원**

구 분	신규통계 생산방식에 따른 소요인력 및 예산 비교		
	현장조사로 생산(a)	행정자료로 생산(b)	차 이(a-b)
소요인력	58명 <sup>주1)</sup>	4명 <sup>주2)</sup>	54명
소요예산 <sup>주3)</sup>	23.3억 원	1.4억 원	21.9억 원

주1) '13.4월 현재, 통계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는 43종, 인력은 2,483명(본청 215명, 지방청 6급 이하 1,442명, 지방청 무기계약직 826명)으로, 통계 1종당 약 57.8명(공무원 38.6명, 무기직 19.2명) 소요

주2)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할 경우 인력은 평균 4명 소요(공무원 2명, 기간제 2명)

주3) 인건비는 현장조사와 행정통계 공통으로 7급 평균연봉 5천만 원, 기간제 및 무기직 2천만 원 적용

○ 3유형 : 다년도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천원)

등록센서스 방식 전환 예상예산절감효과(a)	응답부담(b)	비용 편익(a+b)
135,600,000	35,383,709	170,983,709

<경제총조사>

(단위: 천원)

13항목 대체에 따른 현장조사원 도급비 절감효과(a)	13항목에 대한 응답부담(b)	비용 편익(a+b)
5,292,544	4,100,616	9,393,160

- 총조사의 경우 5년 주기의 조사이므로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에 한계가 있으며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5년간 변동  
을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가치가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그 조사주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높음
-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출입통제 주택 증가 등의 이유로 통계조사 비용이 높  
아짐에 따라 총조사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행정자료를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국 규모의 행정자료가 전산화됨에 따라 통계에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증  
가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 및 통합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등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좋아지고 있는 여건임
-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고 20%  
의 국민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절감효과는 약 1,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항목에 대한 현장조사가 행정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감축되는 응답부담은 약354억원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총조사의 경우, 행정자료 이용을 통해 총50개 항목 중 13개 항목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절감되는 현장조사원 도급비는 약53억원이며, 그에 따른 응답부담이 약41억원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총조사에서 13항목 대체에 따른 절감비용을 현장조사원 도급비만을 산정하였으므로 조사표 인쇄비, 조사용품 구입비 등 실제로 절감되는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결론 및 기대효과

○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통계에 관한 다양한 요구 충족

-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신규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고용정책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통계, 동반성장정책의 기반이 되는 영리법인기업체통계 및 부동산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택소유통계 등 7종의 핵심통계를 신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음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5년 주기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항목을 그 주기를 축소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국민과 사업체 등 조사대상의 응답부담 경감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항목을 대체하거나 기존의 현장조사방식을 대체하여 국민과 사업체 등 조사대상의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2015년 전수항목을 현장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20%의 국민만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2015년 이후 조사항목 13개 중 11~13개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체의 응답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자 함

○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통계시스템 구축

- 모든 유형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옴
- 특히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행정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그 예산 절감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예산 절감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선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효율의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함

○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 구현에 기여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이용기관 사이, 각 부처 간 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는 국가의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행정자료에 기반해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정책·국민 맞춤형 통계생산의 확대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 만족도 및 국가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음



## < 정리 및 추가 검토 사항 >

(단위 : 억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함)

###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유형	5년 단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자료 활용방법	등록센서스(전수조사 대체)																		
적용산식	<p>• 등록센서스방법 전환에 따른 예산 감축 효과(a)                      - 매 주기(5년)마다 50% 정도의 예산증가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예산 추정 : 2,712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lt;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추이&gt;</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th> <th>1995년</th> <th>2000년</th> <th>2005년</th> <th>2010년</th> <th>2015년(추정)</th> </tr> </thead> <tbody> <tr> <td>총조사 예산(억원)</td> <td>539</td> <td>834</td> <td>1,290</td> <td>1,808</td> <td>2,712</td> </tr> <tr> <td>증가율(%)</td> <td>57.3</td> <td>54.7</td> <td>54.7</td> <td>40.2</td> <td>50.0</td> </tr> </tbody> </table> <p>- 전수조사항목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방식 도입, 표본조사 대상을 10%에서 20%로 증가 : 1,628억원 예상절감 예상</p> <p>• 전수조사항목에 대한 총 응답부담(b)                      - 16,156,945(조사대상)*0.2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28,316,661,807원</p> <p>∴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전수조사 대체에 따른 비용편익 :                      a+b= 170,995,827,258원(1,911억)</p>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추정)	총조사 예산(억원)	539	834	1,290	1,808	2,712	증가율(%)	57.3	54.7	54.7	40.2	50.0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추정)														
총조사 예산(억원)	539	834	1,290	1,808	2,712														
증가율(%)	57.3	54.7	54.7	40.2	50.0														
절약비용(억원)	1,911																		
비고	<p>*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소요예산 절감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따름</p> <p>* 전수조사는 2015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20%에 대해 현장조사할 예정으로 2010년 조사대상의 80%에 대해 응답부담을 구함</p>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경제총조사

조사유형	5년 단위조사 - 경제총조사
행정자료 활용방법	등록센서스(항목대체)
적용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원 도급비 감축(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00,000(조사대상)/8.3(조사원1명 1일조사량)=433,735명 (연간조사원수)</li> <li>- 433,735명*44,670원(2011년 경제총조사 인건비)=19,374,942,450원(조사원 총도급비)</li> <li>- 19,374,942,450원/20항목=968,747,122원(항목당 조사 인건비)</li> </ul> </li> <li>• 응답부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00,000(조사대상)*0.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15,773,400,000원(총응답부담)</li> <li>- 15,773,400,000원/50항목=315,468,000원(항목당 응답부담)</li> </ul> </li> </ul> <p>∴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13항목 대체하는 경우 비용편익 : (a+b)*13= 9,393,628,478원(94억)</p>
절약비용(억원)	94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항목 12개 및 업종별 항목 1~8개로 최대 20개 항목을 기준으로 편익을 분석함</li> <li>* 사업체기본조사부분(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하고자 함</li> <li>* 행정자료 활용하여 조사업무를 줄이고, 조사대상 확대 및 항목 세분화를 하고자 함</li> </ul>

○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유형	연간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행정자료 활용방법	항목대체
적용산식	• 현장조사원 도급비 감축(a)

	<p>- 3,600,000(조사대상)/22(조사원1명 1일조사량)=163,637명(연간조사원수)</p> <p>- 163,637명*44,670원(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원 인건비)=7,309,664,790원(조사원 총도급비)</p> <p>- 7,309,664,790원/13항목=562,281,906원(항목당 조사 인건비)</p> <p>• <b>응답부담(b)</b></p> <p>- 3,600,000(조사대상)*0.2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7,884,000,000원(총응답부담)</p> <p>- 7,884,000,000원/13항목=606,461,538원(항목당 응답부담)</p> <p>∴ <b>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13항목 대체하는 경우 비용편익 :</b>  <math>(a+b)*13 = 15,193,664,790\text{원}(152\text{억})</math></p> <p>[참고]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11항목 대체하는 경우 비용편익 :  <math>(a+b)*11 = 12,856,177,884\text{원}(129\text{억})</math>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12항목 대체하는 경우 비용편익 :  <math>(a+b)*12 = 14,024,921,328\text{원}(140\text{억})</math></p>
<b>절약비용(억원)</b>	152
<b>비고</b>	<p>*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기본조사부분(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 등)의 11~13개 항목 대체 추진 중임</p> <p>* 13개 항목을 대체하더라도 지자체 자율항목 등은 대체가 어려우므로 전국사업체조사를 행정자료로 완전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현장조사는 불가피함</p> <p>* 경제총조사 실시년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미실시됨</p>

○ 광업제조업조사

<b>조사유형</b>	연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b>행정자료 활용방법</b>	항목대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적용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원 도급비 감축(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80명*30일(지자체)+80명*9일(지방청)=18,120명(연간조사원 수)</li> <li>- 18,120명*44,670원(2012년 광업제조업조사원 인건비)=809,420,400원(조사원 총도급비)</li> <li>- 809,420,400원/56항목=14,453,935원(항목당 조사 인건비)</li> </ul> </li> <li>• 응답부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000(조사대상)*0.4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227,838,000원(총응답부담)</li> <li>- 227,838,000원/56항목=4,068,535원(항목당 응답부담)</li> </ul> </li> </ul> <p>∴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6항목 대체하는 경우 비용편익 : (a+b)*6= 111,134,820원(1억)</p>
절약비용(억원)	1
비고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체56항목 중 6개 항목 대체 추진 중임

○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조사유형	새로운 통계작성 -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행정자료 활용방법	행정통계생성
적용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원 도급비 추정(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65,000(조사대상)/8(조사원1명 1일조사량)=1,758,125명(연간조사원수)</li> <li>- 1,758,125명*44,670원(2012년 현장조사원 인건비)=78,535,443,750원(조사원 총도급비)</li> </ul> </li> <li>• 응답부담 추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65,000(조사대상)*0.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61,625,797,500원(총응답부담)</li> </ul> </li> <li>• 행정자료작성 소요비용(c)</li> </ul>

	<p>- 18,437,000(일용임금)+1,500,000(책자인쇄비)+1,200,000(임차료)+1,440,000(자문업무협약)+200,000(자문간담회)+1,844,000(연금지급금)=26,121,000원</p> <p>∴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비용편익 :  <math>a+b-c=140,135,120,250</math>원(1,401억)</p>
절약비용(억원)	1,401
비고	*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은 2012년 세입세출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기업생멸통계

조사유형	새로운 통계작성 - 기업생멸통계
행정자료 활용방법	행정통계생성
적용산식	<p>• 현장조사원 도급비 추정(a)</p> <p>- 3,400,000(조사대상)/20(조사원1명 1일조사량)=170,000명(연간조사원수)</p> <p>- 170,000명*44,670원(2012년 현장조사원 인건비)=7,593,900,000원(조사원 총도급비)</p> <p>• 응답부담 추정(b)</p> <p>- 3,400,000(조사대상)*0.2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7,448,550,000원(총응답부담)</p> <p>•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c)</p> <p>- 12,877,000(일반수용비)+2,059,200(여비)+1,000,000(사업추진비)=15,936,200원</p> <p>∴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비용편익 :  <math>a+b-c=15,026,513,800</math>원(150억)</p>
절약비용(억원)	150
비고	*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은 2012년 세입세출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주택소유통계

조사유형	새로운 통계작성 - 주택소유통계
행정자료 활용방법	행정통계생성
적용산식	1,099
절약비용(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원 도급비 추정(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44,000(조사대상)/8(조사원1명 1일조사량)=1,768,000명 (연간조사원수)</li> <li>- 1,768,000명*44,670원(2012년 현장조사원 인건비)=78,976,560,000원(조사원 총도급비)</li> </ul> </li> <li>• 응답부담 추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44,000(조사대상)*0.2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30,985,968,000원(총응답부담)</li> </ul> </li> <li>•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37,000(일용임금)+1,500,000(책자인쇄비)+1,200,000(임차료)+1,500,000(자문사례비)+1,920,000(업무협의)+200,000(자문간담회)+1,844,000(연금지급금)=26,601,000원</li> </ul> </li> </ul> <p>∴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비용편익 :  <math>a+b-c=109,935,927,000</math>원(1,099억)</p>
비고	*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은 2012년 세입세출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귀농인통계

조사유형	새로운 통계작성 - 귀농인통계
행정자료 활용방법	행정통계생성
적용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원 도급비 추정(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0,000(조사대상)/8(조사원1명 1일조사량)=86,250명(연간조사원수)</li> </ul> </li> </ul>

	<p>- 86,250명*44,670원(2012년 현장조사원 인건비)=3,852,787,500원(조사원 총도급비)</p> <p>• <b>응답부담 추정(b)</b>          -690,000(조사대상)*0.25시간(조사소요시간)*8,763원(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시급)=1,511,617,500원(총응답부담)</p> <p>• <b>행정자료작성 소요비용(c)</b>          -18,437,000(일용임금)+1,500,000(책자인쇄비)+1,200,000(임차료)+1,500,000(자문사례비)+1,280,000(업무협약)+150,000(자문간담회)+1,844,000(연금지급금)=25,911,000원</p> <p>∴ <b>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비용편익 :</b>  <math>a+b-c=5,338,494,000</math>원(53억)</p>
<p><b>절약비용(억원)</b></p>	<p>53</p>
<p><b>비고</b></p>	<p>* 행정통계작성 소요비용은 2012년 세입세출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함</p>

[별첨 6]

##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제정수반요인

##### 가.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서식 등을 통한 행정자료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서식을 개정하거나 서식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나.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안 제21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행정자료 이용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안 제37조)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한다.



## 라.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안 제39조)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2.6%를 적용하고 2017년 및 2018년은 2016년 2.6%로 가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종합편」, 2012.10).

##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체계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표1]과 같이 2014년 287억 13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1597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7,617	8,181	8,394	8,612	8,835	41,639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안 제21조)	1,607	1,652	1,696	1,740	1,786	8,481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안 제37조)	16,811	17,282	17,731	18,192	18,665	88,681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안 제39조)	2,678	4,182	4,421	4,676	4,947	20,904
<b>합계</b>	<b>28,713</b>	<b>31,297</b>	<b>32,242</b>	<b>33,220</b>	<b>34,233</b>	<b>159,705</b>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

#### 가.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제정안 제18조에서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서식 등을 통한 행정자료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표준화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하거나 서식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료 표준화에 관한 비용편익과 관련되고, 기존의 통계청의 업무로 기존 예산편성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참고 표1] 통계청 국가통계인식 제고(계속) 운영비: 2009~2013년<sup>7)</sup>

(단위: 백만원)

구분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계
운영비(㉠)	844	898	624	624	591	3,581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참고 표2] 통계청 범정부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계속) 운영비: 2011~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09예산	2010	2011	2012	2013	계
운영비(㉡)	-	-	(5,000)	6,231	6,559	17,790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11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예산에서 수행

[표2] 행정자료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	868	892	915	939	963	4,577
㉡	6,749	7,289	7,479	7,673	7,872	37,062
합 계	7,617	8,181	8,394	8,612	8,835	41,639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 나.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안 제21조)

제정안 제21조에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행정자료 이용의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관련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대상자의 범위로 ① 통계기획사무 ② 통계조사사무 ③ 통계처리사무 ④ 통계분석사무 ⑤ 통계품질관리사무 ⑥ 통계분류사무 ⑦ 통계보급사무 ⑧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

7) 통계청, 2013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3.1, 37면 참조.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며, 교육의 내용으로 ①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② 「통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③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④ 「통계법」 제30조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⑤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통계청의 통계전문교육지원 및 통계교육수입대체경비의 2013년도 예산 현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을 가정하여 추계한다.

[참고표3] 통계청 통계교육지원 운영비: 2009~2013년<sup>8)</sup>

(단위: 백만원)

구분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계
통계전문교육 지원(㉠)	1,370	1,421	1,349	1,214	1,192	6,546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참고표4] 통계청 통계교육원수입대체경비 운영비: 2009~2013년<sup>9)</sup>

(단위: 백만원)

구분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계
통계교육원수입 대체경비(㉡)	242	242	383	400	380	1,647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표3]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	1,227	1,261	1,294	1,328	1,363	6,473
㉡	380	391	402	412	423	2,008
합 계	1,607	1,652	1,696	1,740	1,786	8,481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8) 통계청, 앞의 책, 13면 참조.

9) 통계청, 앞의 책, 15면 참조.

### 다.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안 제37조)

제정안 제37조에서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 표준화와 자료정비를 완료한 후 통계등록부시스템에 등재하여 보유·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작성에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계등록부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청이 소유하고 있는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자료 기반 통계작성에 필요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기존 통계청의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의 2013년도 예산 현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을 추계하여 준용한다.

[표4] 통계등록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sup>10)</sup>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16,811	17,282	17,731	18,192	18,665	88,681
합 계	16,811	17,282	17,731	18,192	18,665	88,681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 라.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안 제39조)

통계청장은 행정자료 이용촉진을 위하여 통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정안 제39조제2항에 통계지원센터는 ①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재분류하는 업무 ②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품질 점검·향상에 관한 업무 ③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통계이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행정자료의 가공업무 ④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규정한 사항을 통계지원센터의 업무로 보고, 통계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원을 기존 통계청을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구성해보면 아래의 [참고표6]와 같이 최소 5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있지만, 59명의 증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통계청, 앞의 책, 7면 참조.

[참고표5] 통계청 통계센터 운영비: 2009~2013년<sup>11)</sup>

(단위: 백만원)

구분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계
운영비	6,000	8,029	8,954	8,877	8,798	40,658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참고표6] 통계지원센터 업무 및 인력분장

조직	업무	소요 인원(A)	비고
센터장	센터업무총괄	1	
업무지원팀	팀업무총괄	13	
	행정자료 제공 운영실태 평가		
	행정자료 운영실태 개선 컨설팅		
	행정자료 이용현황 조사 및 개선		
	행정자료 제공 및 이용성과 분석		
산업분류팀	기타	15	
	팀업무총괄		
	산업분류기획		
	산업표본관리		
	사업체		
코딩팀	농어업	15	
	기타		
	팀업무총괄		
	질병사인분류		
	행정자료 통합시스템		
품질점검팀	통합관리시스템	15	
	직업분류 자동코딩		
	기타		
	팀업무총괄		
	품질개선관리		
소계	정기통계품질진단	59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기타		

11) 통계청, 앞의 책, 14면 참조.

통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이 소요된다. 첫째, 인건비는 통계청 2013년도 직급 중 5-8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를 적용한다. 인건비는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통계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신규 직원 59인에 대한 총 인건비는 2014년의 경우 16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sup>12)</sup>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96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표7] 통계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직급	인건비 상세산식	계
5-8급	월 급여×12(월)×59(명)	1,674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참고표8] 통계지원센터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인건비	1,674	1,791	1,916	2,050	2,193	9,624

둘째, 경상운영비는 통계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로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 따르면 각종 산업진흥기관정책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60%수준이므로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경상운영비는 2014년의 경우 10억 4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7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표9] 통계지원센터 경상운영비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경상운영비	1,004	1,075	1,150	1,230	1,316	5,775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12) 인건비 상승률 2011년 7.2%, 2012년 7.1%(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 2008, 323면.)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셋째, 행정자료 통계 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세종특별자치시)와 통계청(정부대전청사)의 지방이전과 무관하게 통계지원센터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대전통계센터<sup>13</sup>)가 있음) 2015년부터 통계지원센터를 둘 경우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사무실 공간을 서울에 임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사무공간의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각종 위원회의 직원1인당 사무공간의 규모를 38㎡를 적용하여 계산한다.<sup>14</sup> 사무공간의 소요규모에 직원 수 59인을 곱하면, 통계지원센터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2,242㎡이며, 서울 도심 사무실의 ㎡당 연 임대비는 58만 6,766원<sup>15</sup>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사무실 임대비는 2015년의 경우 13억 1600만 이 되고, 향후 5년간 55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표10] 통계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비 추가소요재정: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임차비	-	1,316	1,355	1,396	1,438	5,505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종합하면 제정안에 따라 통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2014년에 26억 78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09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통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인건비	1,674	1,791	1,916	2,050	2,193	9,624
경상운영비	1,004	1,075	1,150	1,230	1,316	5,775
임차비	-	1,316	1,355	1,396	1,438	5,505
합 계	2,678	4,182	4,421	4,676	4,947	20,904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13)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에 기존 통계청의 조직 중 통계교육원과 통계개발원이 있다.

14)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2, 14면 참조.

15)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다국적 종합 부동산 서비스 업체), 「2011 세계 주요 오피스 시장」, 2012.2.